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1990 창간호 12

나라경제 · 1990년 12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권 제1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라-4859호 · 발행처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 135-619 서울 영동우체국사서함 1947 · 대표전화(02)561-1400 · FAX(02) 561-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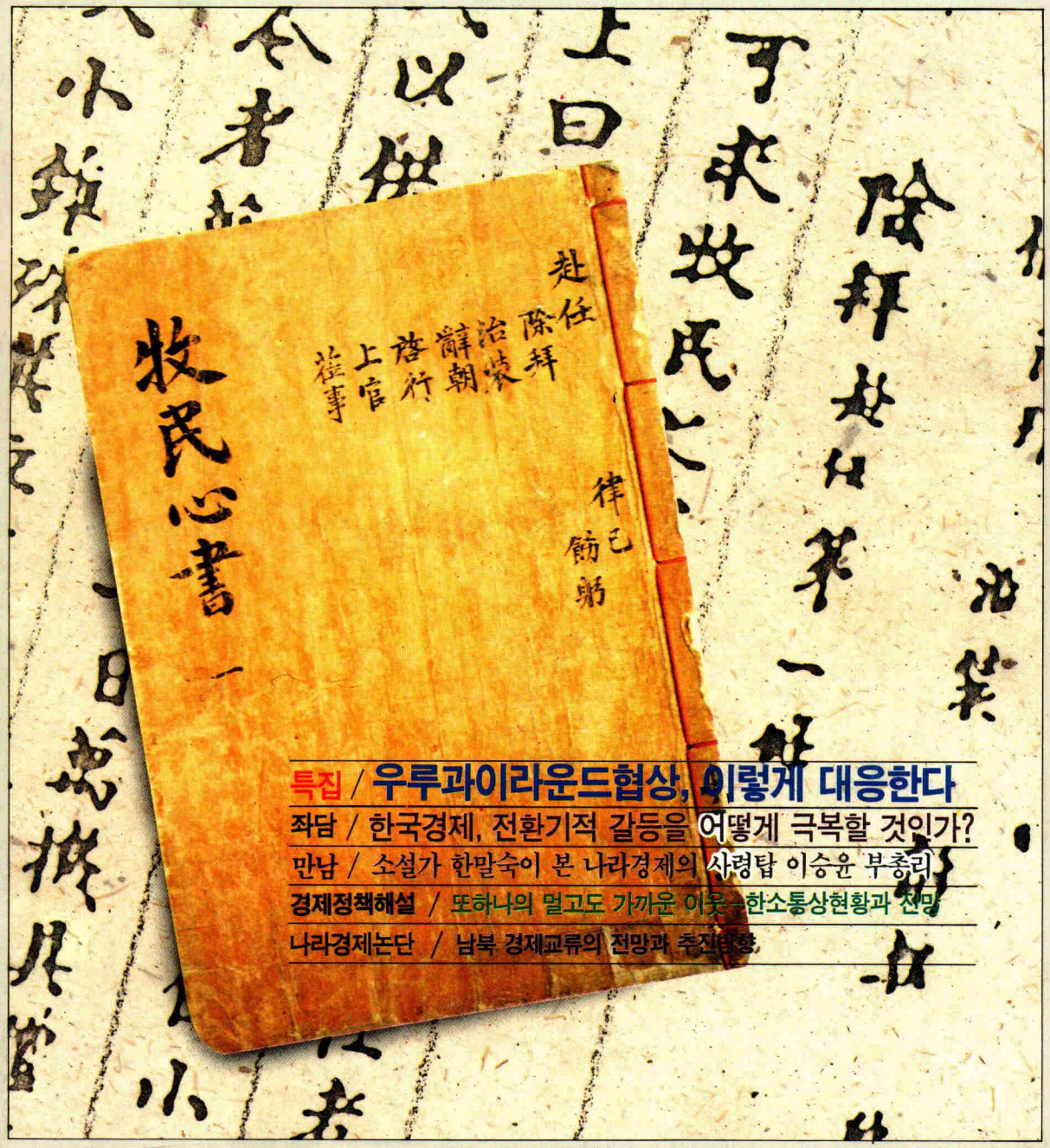

특집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렇게 대응한다

좌담 / 한국경제, 전환기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만남 / 소설가 한말숙이 본 나라경제의 사령탑 이승윤 부총리

경제정책해설 / 또하나의 멀고도 가까운 이웃 — 한소통상현황과 전망

나라경제논단 / 남북 경제교류의 전망과 추진방향

편집 /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는 길

다산 정약용

1762(영조 38)년 서울 근교 소내의 마재에서 태어났다. 그는 16세때부터 31세까지, 목민관으로 지낸 부친을 따라다니며 견문을 넓혔으며, 33세 때에는 자신도 경기도 암행어사, 찰방, 부사 등을 지내면서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를 생생히 목도하고 체험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훗날 500여권에 달하는 저술을 남기게 된다. 정치 · 경제 · 사회 · 과학 · 종교 등 많은 학문을 두루 섭렵했던 다산의 소중한 저술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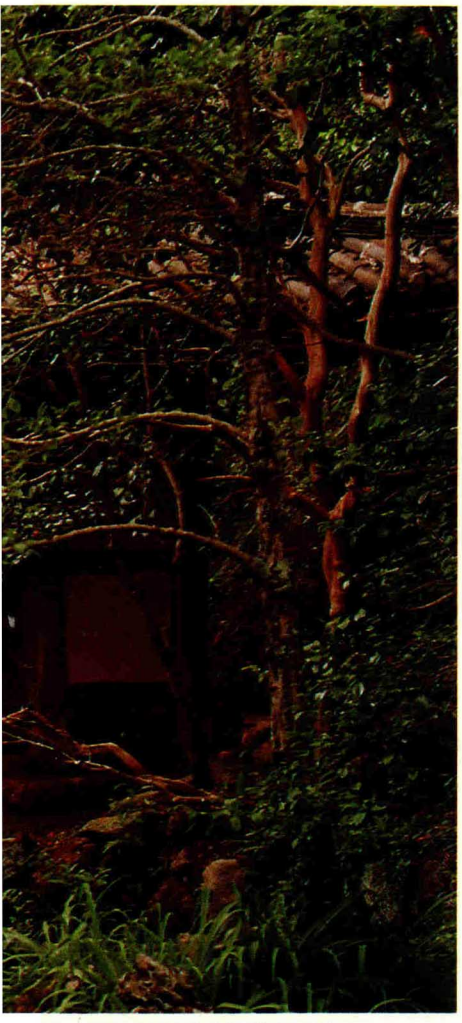

다산초당 : 전남 강진군 소재.
다산이 40세 이후 유배생활 중
많은 저술활동을 했던 곳.

어떤 시대건 행정관리들의 기본과제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다산학의 정점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국민경제의 정비 및 안정이
국민들을 위하는 기본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이 책에서 정약용은
행정관리들이 지켜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시의 관리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爲民政治를 추구한『목민심서』는
행정관리들의 청렴 · 절약 · 검소의 생활신조와
民本位의 봉사정신이야말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국가의 발전을 돕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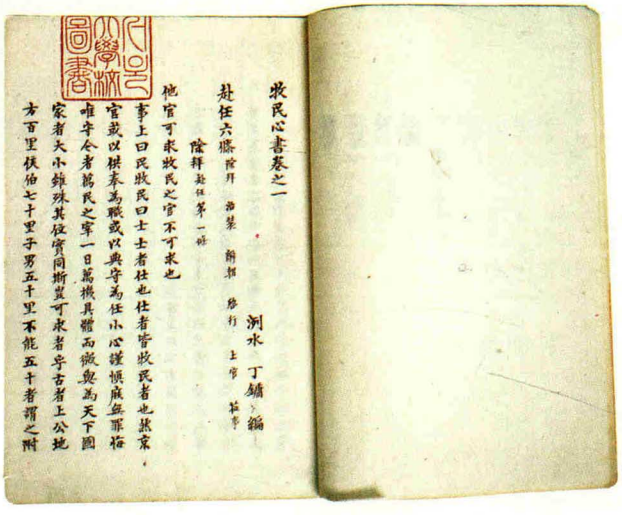

1990.12. 창간호

나라경제

『나라경제』창간에 부쳐 나라경제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되길 — 이승윤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6

『나라경제』를 창간하며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 엄영석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원장 8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정책수립의 실질적 관문 —경제차관회의 — 김왕기 · 중앙경제신문 기자 10

좌 담 한국경제, 전환기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정리 : 편집실 14

특 집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렇게 대응한다

- UR협상의 배경과 전망 — 강병일 · 경제기획원 28
- UR협상과 무역 및 산업정책방향 — 박영국 · 상공부 32
- UR농산물협상과 대응방향 — 김정호 · 농림수산부 36
- UR섬유협상과 대응방향 — 최용진 · 상공부 42
- UR서비스협상의 진전상황과 대응방향 — 김용준 · 경제기획원 45
- UR금융서비스협상과 금융산업개방 — 진영욱 · 재무부 50
- 한·미통신회담 및 UR통신협상 — 구영보 · 체신부 54
- UR지적소유권협상과 대응방향 — 손찬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9

나라경제만평 祝! 나라경제 창간 — 이원복 · 덕성여대 교수 65

경제동향
- 나라안 회복추세 보인 90년경제 — 김병일 · 경제기획원 66
- 나라밖 급변하는 세계경제 — 최인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9

경·제·수·상
- 지구환경보전과 국제교역 — 김형철 · 환경처 72
- 작은 정성으로 큰 도약을 — 김주일 · 경제기획원 73
- 역사의 교훈 — 김경우 · 재무부 74
- 작은 것은 아름다워라 — 서주석 · 동력자원부 75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 백남근 · 교통부 76
- 식품위생행정을 수행하면서 — 김용문 · 보건사회부 77
- 各其處所 — 김상남 · 노동부 78

만 남 소설가 한말숙이 본 이승윤 부총리 '엘리어트'를 즐겨 읽던 나라경제의 사령탑 80

발행인 엄영석(국민경제제도연구원 원장) **편집인** 김주일(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장) **편집위원** 경제기획원 장석준 / 재무부 강권석 / 농림수산부 김정호 / 상공부 안세영 / 동력자원부 부태환 / 건설부 이태열 / 보건사회부 정건작 / 노동부 손경호 / 교통부 김세호 / 체신부 이재선 / 과학기술처 최석식 / 환경처 심재곤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오인식
편집발간실장 김인철 **기자** 최병규 · 이기덕 · 김보선 **편집디자인** 해미기획 **인쇄인** 오유배

컬 러 화 보 / 명산순례 · 설악산 겨울설악 84

경/제/정/책/해/설

통화와 물가 권오규 · 경제기획원 88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 박종흠 · 교통부 92
내년도 세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박진규 · 재무부 96
맑은 물 지켜내기—팔당 · 대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신동원 · 환경처 100
최근의 농지가격 하락은 새로운 농지제도 때문인가 안종운 · 농림수산부 104
또 하나의 멀고도 가까운 이웃—한 · 소 통상현황과 전망 정태신 · 상공부 108
지역의료보험료의 올바른 이해 정병조 · 보건사회부 111
통신선진국을 향한 디딤돌—통신사업 구조조정 천조운 · 체신부 114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정책—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최종수 · 건설부 119
민간주도의 인력양성— 사업내 직업훈련 활성화 시책 김용달 · 노동부 122
석유사업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 고정식 · 동력자원부 125
과학기술과 국가발전— 과학기술진흥 정책방향 김대석 · 과학기술처 129

해 외 통 신
EC의 경제 · 통화동맹 추진현황과 전망 이종훈 · 재무부 / 주 EC 대표부 133
일본판 '큰 손(仕手)'사건을 보며 오종남 · 경제기획원 /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파견 134
전환기 경제학이 필요하다 허 선 · 경제기획원 / 독일경제연구소 파견 135

출입기자코너
추곡수매방식, 과연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박현채 · 연합통신 기자 136
환경문제, 각부처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병래 · 동아일보 기자 137

나라경제논단
사회형평추구와 조합주의 정신 양수길 · 한국개발연구원 138
남북 경제교류의 전망과 추진방향 변재진 · 경제기획원 142
환경보전이 경제 ·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심재곤 · 환경처 146

세미나 지상중계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개혁 정리 : 문우식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51

과천글마당
수 필 감 심재달 155
열기 가득한 환한 여름에…… 임금희 156
시 아침노래 이정희 157

경제부처동정 정책일지 / 인사이동 편집실 158
경제부처 발간자료안내 편집실 161

지난 11월 7일 과천청사에서 열렸던 경제차관회의

정책수립의 실질적 관문

'경제차관회의'

김왕기
중앙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국민은행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존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은행의 수신능력은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13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소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득이한 일이긴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일부완화 등이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한 검증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차관회의에 올릴 안건을 놓고 관계부처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과 대부분의 주요정책들이 차관회의에서 참석자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들은 경제차관회의가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1990년 11월 7일 오전 10시.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1동 7층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는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경제차관회의의 한 장면.

진념 재무부차관, 강현욱 동력자원부 차관, 이동훈 상공부제2차관보 등 12개 경제관련부처 차관 및 차관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 20여분간의 토론 끝에 의결된 국민은행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비롯,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노동교육원법 시행령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안,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시행령 중 개정법안 등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지만 동자부가 내놓은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놓고는 참석자간에 약 40여분간에 걸친 격론이 오갔다.

"석유시장 대외개방에 대비,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에 비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강현욱 동자부차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기획원차관·진재무부차관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무조항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 비상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비관세장벽이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차관의 주장.

강차관의 반대설명과 또다른 반박, 토론에 토론이 오간 끝에 결국 동자부 측이 양보,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무조항을 일부 신축적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0시 5분경에 시작된 제20차 경제차관회의가 끝난 것은 점심시간에 즈음한 12시쯤. 약 2시간여 동안의 격론 끝에 6개의 경제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모습을 드러낸 하나하나의 안건들이 경제차관회의에 올려지기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은 이곳에서의 한 두시간만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무부처의 검토작업에서부터 관계부처간 협의 등 새로운 정책이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된다.

때로는 결과적으로 졸속이라는 비난이 따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산고를 겪는 것이다.

20차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은행법의 예를 보자.

지원범위확대를 위한 시도는 과거에도 수차 있었지만 이번 상정을 위해 재무부가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은 지난 5월초.

"작년말 국민은행법이 개정된 이상 더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재무부 이재국 중소금융과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이 시작됐다.

은행측의 요구사항을 제출받은 사무관급에서의 검토에서 출발, 이재국 내의 종합검토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재무부의 공식방침이 결정된 것은 지난 9월.

이때부터 근 한달여동안 다시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가 진행됐고, 정부 내부방침으로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좌)
진념 재무부차관(우)

강현욱 동력자원부차관(좌)
윤성태 보건사회부차관(우)

확정된 것은 지난 10월 26일.

문구수정작업 등을 거쳐 개정안은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실에 '경제차관회의 상정안건'으로 제출됐고, 기획원은 다시 상정의뢰안을 관련부처에 통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1월 7일 제20차 경제차관회의에 올린 것이다.

경제차관회의에서는 불과 20여분간의 토론 끝에 통과됐지만 실제로 이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되기까지는 거의 6개월이 걸린 셈이다.

또 형식절차이긴 하지만 경제차관회의→장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재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총 소요시간은 7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이같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한 사안은 불과 며칠만에 만들어 지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 사전의견조정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상정안건이 모두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는 빈도가 줄긴 했지만 회의석상에서 참석자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보류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가 지난 8월 22일에 열린 제14차 경제차관회의.

'수도권 이공계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기획원·상공부·건설부간에 이견이 맞서는 통에 결국 합의점을 못 찾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약 2주간의 실무협의가 다시 있은 후 결국 9월 5일의 제15차 회의에서 가까스로 '대학원정원을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도중에 청와대에서 중재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나하나의 정책이 이같이 오랜 진통과 토론 끝에 경제차관회의란 관문을 거쳐서 비로소 제모습을 찾는 것이다.

상급기구로 경제장관회의 등이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의 결정은 대부분 다른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차관회의야말로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의 산실'인 셈이다.

이같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경제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제차관회의'가 현재의 모습으로 탄생한 것은 지난 67년 11월. 대통령령에 의해 '경제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요경제시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했다.

구성멤버는 의장인 경제기획원차관을 포함, 재무부·농림수산부·상공부·교통부 등 12개 경제관계부처 차관과 외무·내무부차관, 정무장관보좌관 등 15명. 한은·산은부총재와 농협부회장 등이 참석, 경제현안을 보고하기도 한다.

규정상으로는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열리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안건이 의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표에 의해 안건이 처리된 적은 거의 없다. 토론 후, 때로는 별다른 토론없이 의장의 제청에 의해 의결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위해' 보통 심의안건수가 3~5건 이상인 경우에 열린다. 따라서 한달에 평균 2차례 소집된다고 볼 수 있다.

때로는 주요 정책들이 청와대나 관계장관간의 비공식 모임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차관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 회의의 개최회수가 잦을수록 우리 경제에 현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호황기였던 지난 85~87년간은 연평균 20회 정도가 열린 반면 경제가 어려웠던 80, 81년에는 회의가 각각 56회, 40회에 이른 점이 이를 말해준다.

또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개최회수는 87년 19회에서 88년 22회, 89년 30회로 늘어났다.

신윤식 체신부차관(우)
한수생 환경처차관(좌)

이곳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대부분이 법률문제를 수반한 전문적인 것이라 회의분위기가 딱딱한 편이나 때로는 참석자간에 실무협의 못지 않게 열띤 토론이 오가기도 한다.

특히 주요 결정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정책수립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경제차관회의에서의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회의시간도 길어졌다. 전에는 1시간 정도면 충분했던 것이 최근에는 보통 2시간씩 걸린다. 시간이 모자라 토론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이진설 기획원차관은 "과거에 비해 토론이 무척 활발해졌다. 전에는 자기부처와 관련된 문제에 한해 토론에 참여했으나 요즘은 타부처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의견을 개진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같은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토론이 활발해지다 보니 의견개진이 '지나치게 활발해' 때로는 중구난방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경제차관회의가 정부내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역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되는 현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기 부처의 '이익'을 위해 한 쪽은 막무가내로 물고늘어지는가 하면 다른 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버티는 통에 때로는 참석자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생긴다.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채 경제차관회의에 올려졌다가 경제차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슬며시 자취를 감춘 '상품표시제'가 한 예다.

이러다보니 요즘은 의장의 역할이 무척 바빠졌다.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처의 대표로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적당한 기회에 발언자의 말을 끊어야 하고 회의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배려까지 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차관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시작 전에 보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진설차관의 지적처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지 않은 참석자들이 별다른 준비없이 나와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아 회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뿐 아니라 회의과정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때론 의혹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차관회의는 날이 갈수록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경제차관회의에 올릴 안건을 놓고 관계부처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 대부분의 주요 정책들이 경제차관회의에서 참석자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 등은 경제정책의 탄생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 신중해지고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해지는 모습도 바람직한 변화다.

"경제차관회의 과정을 보다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자"는 제20차 회의의 합의사항도 이같은 변화를 말해준다.

물론 아직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국가 전체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갈수록 활발해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토론과 진통, 또 경제차관회의 분위기의 바람직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 않다는 기대를 걸게 한다. 나라경제

좌 담

한국경제, 전환기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주체의 역할과 자세를 중심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누적되어 온 경제왜곡 현상을 개선하고, 급속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전환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모든 국민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경제주체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지에서는 창간특집으로 11월 14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한국경제 전환기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경제주체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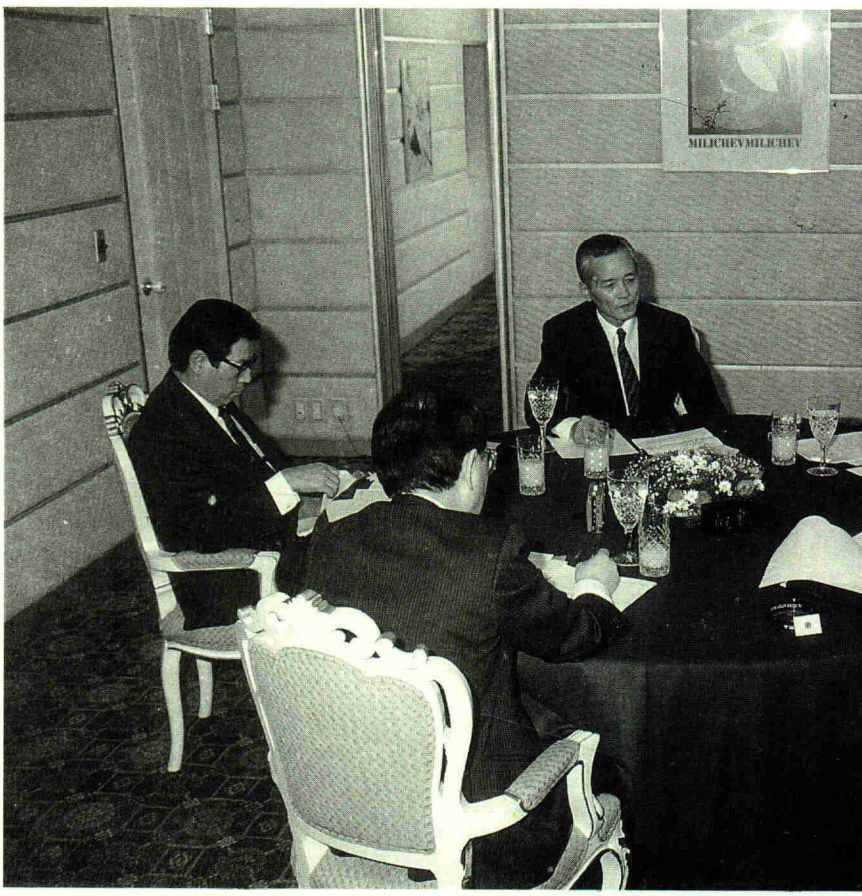

사 회 : 강명규(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참석자 : 강봉균(경제기획원 차관보)
김채겸(쌍용양회 회장)
배무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배병휴(매일경제 편집국장)
〈가나다순〉

사 회 : 오늘 좌담회는 '한국경제, 전환기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가지 갈등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유가상승, 선진국의 성장둔

화, EC통합,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노사관계 등도 작년보다는 안정이 되었지만 임금인상 요구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일본의 엔화 강세가 미치는 압력은 대단히 크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가면에서는 유가와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들이 점점 누적되어 가고 있어서 물가불안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낸 경험으로 보아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을 능히 극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당면한 경제문제의 현안들이 무엇이 있겠는지 각 분야에서 전망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나 해결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문제를 관찰하기 위해서 경제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봉균 : 예,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 ·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동인이랄까 요인이 이제는 변화되는 시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대내적인 요건 중에서 노동력 · 기술 · 토지 등의 요인들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고유가 현상이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도 농업이나 서비스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볼 수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내외 여건 중에서 플러스되는 요인보다는 성장이나 국내물가, 국제수지를 어렵게 하는 불안정한 요인들이 더 많다고 하겠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4년 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형평과 복지요구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는데 각 경제주체들이 국가전체의 이익은 도외시한 채 자기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금년부터 3년동안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인데 이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90년대에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대내외 경제환경

김채겸 : 저는 우선 임금과 물가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임금이 그동안에 생산성의 2배 이상 인상되었는데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지 · 형평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인식도 해야 합니다. 복지부분에 많은 돈을 쓰면 그만큼 생산에 돌아갈 자원배분

이 줄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의식구조 속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런 명백한 경제원리를 떠나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주장을 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정부나 기업가,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매도한다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무기 : 임금과 물가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지난 수십년간 물가가 임금이 오르는 것을 따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89년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임금이 확실하게 많이 올랐어요. 전 산업에서 21%, 제조업에서 25% 상승했습니다. 87년에서 89년 사이에는 제조업에서 비용으로 따지면 약 100% 올랐으니 이건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임금이 물가상승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순항을 하다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선 국민경제 구성원들이 국민경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주장할 것은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사회적인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이 어떤 이익집단이 다소 지나치거나 무책임한 요구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은 이제 과거식으로 다스릴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시켜 나가는 데 자원을 상당부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명 규〉

강봉균 : 우리는 갈등에 관한 문제를, 갈등해소를 위해 불만 소외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어떤 과정과 어떤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느냐 즉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의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문제에 관한 한 그동안 상당한 수준까지 자원이 배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임금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농민들에게는 농가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재정에서 일년에 5천억씩 지출하고 있으며, 집 없는 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불만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이 정치적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잘 흡수되지 않으면 터지게 됩니다. 소련사회 같은 경우도 몇년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민주화하고 개방하려니까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와 더불어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여 갈등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사회에서 갈등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평문제나 복지문제도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무기 : 제 얘기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형평이나 분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갈등에 관한 의식문제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쪽에 우리의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배병휴 : 우리 경제를 전망해 볼 때 금년도에 유보되고 누적된 것이 내년도에 다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유보되었던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지자제가 실시되고 선거가

있을 가능성도 예상되며 국내외 여건이 올해보다도 월등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성장 · 저분배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해나 설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어느 일방이나 어느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주체의 발상이나 행동의 시발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어디에서 가져야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정부가 가져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민간이 자꾸 자유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왜 정부에게만 맡기느냐고 하겠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만약에 민주주의를 남용하고 과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해시키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정부의 역할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내려져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방안이 문제인데,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서 국민들이 준수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식전환이 경제문제 해결의 관건

사 회 :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과거에도 어려운
> 조건들을 이겨낸 경험으로 보아
> 대내외적인 여건을
> 능히 극복할
>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 생각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는
> 것이 사실입니다.
> ”

김채겸 : 경제정책이란 한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부작용과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책의 기대효과가 크다면 그 선택하는 정책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과감하게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끌고가줘야 합니다.

강봉균 : 어떤 정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계층만을 불리하게 하거나 희생시키는 정책은 펴서는 안되고 또 펼 수도 없습니다. 기업가만 잘되고 근로자는 잘못되는 그런 정책은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이 장기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책의 목표이며 그 목적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와 설득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 계층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서로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금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임금을 기업가와 근로자간의 대립과 갈등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의 안정이 근로자의 희생 위에 기업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장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호소하여 온 것입니다.

농산물가격 문제도 농민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지금 5천불 소득이 5년 후에는 1만불로 가야하는데 쌀 생산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며 생산을 늘려간다고 해서 농민의 소득이 5년 후 2배로 올라

>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생각해야 하며, 각 경제주체가 정부의 정책을 따를 때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정부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농민들에게 좀더 미래가 보장되는 쪽에 쓰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설득노력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협력하여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무기 : 강차관보 의견에 동감합니다.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해시키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경제문제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이라도 이해를 시키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체계 확립돼야

배병휴 : 정부에는 우수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정부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을 제시했을 때 국민이 따라 주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직도 옛날식의 성공기법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 독려 등은 이제는 더이상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의 이윤추구동기가 있고 절실한 실질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배가를 원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절규를 포용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쌀을 불태우고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정책, 임금정책, 주택정책, 대학교육 등은 누구나 다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개인의 이윤이라든지 성취욕구가 내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조정하지 못해서 엉거주춤하고 눈치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정부를 원하지 않지만 일을 못하는 정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추곡수매가격도 양쪽의 이해가 대립되었으면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조정을 못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이해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일 못하는 정부입니다.

문제를 빨리 노출시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빨리 정확하게 수렴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봉균 :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되고 또 해결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의 각 주체인 국민들에게 개인 이익은 덮어두고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정부정책에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생각해야 하며, 각 경제주체가 정부의 정책을 따를 때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정부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각 경제주체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부문에 대하여는 정부가 간섭을 해서는 안되고 자율화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도 옛날같이 정부의 관련 부처 공무원이 뛰어다니며 독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의 자율적인 창의에 의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즉 제도를 마련하는 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일이라든지, 공장용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주는 문제라든지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를 한다든지 하는, 민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은 정부가 충실히 해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간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새로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야 할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고리

김채겸 : 내년에는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은 더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남미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임금이 생산성의 배로 올랐고, 특히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도 임금이 상당히 올랐으니까 이제는 모두가 자제해서 더 이상의 생산성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도한 임금인상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물가인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한 정부가 어떤 산업은 지원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조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산업은 고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도금융의 뒷받침이 없이 기업단독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의 자율화 및 민간주도전환에 따른 정부개입의 축소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제도금융의 확대는 모순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여 정부지원을 축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배병휴 : 정부는 법률과 제도와 규칙과 정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종합조정적인 정책 및 세제 등을 마련하고 개별이익에 상충하는 것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고 하면서도 왜 계속 유보시켜 가면서 끌고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가인상 요인이 불가피하면 인상요인을 현실화해 주면서 다른 부문에서 일부를 삭감시켜 나가야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요금, 교통요금 다 묶어놓고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페만사태가 발생해서 유가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나 기타 공산품의 원가가 얼마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등 정부는 산술적인 계산과 설득력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 줘야지, 덮어놓고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노출시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공약수에 속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그 지표를 세웠을 때는 모든 국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강 봉 균〉

배무기 : 금년도 임금타결이 한자리수로 되어 있는데, 이는 89년 또는 그 이전에 단기간에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점과 최근 경제가 상당히 침체국면에 있다는 것, 또 정부가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밖에도 노조의 자제력,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임금이 물가 오르는 것을 따라왔지만 '90년 현상을 보면 '89년의 지나친 임금상승이 물가를 올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결이 한자리수라고 하지만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90년 임금상승률이 전산업에서 대개 15~17% 정도 상승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근로자들만 자제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노동계에서도 스스로 협력하는 태도가 나오도록 정부에서 경제상황을 설명해 주며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불만이나 요구 중의 상당한 부분이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값의 급상승, 일부계층의 과소비 등으로 인한 불만을 개별기업의 임금인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볼 때 무언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보이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봉균 : 먼저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문제인데, 유가를 금년말에 현실화를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한달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내년도의 인플레 요인이 됩니다. 누누이 지적한 것이 공공요금인데 수도요금·전철요금 등은 4~5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기름값과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면 소비자물가, 도매물가가 내년초에 3%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보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요인들을 현실화해서 새로운 가격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물가안정대책을 착실히 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가인데 도입기준가격이 배럴당 25달러로 된다면 국내유가는 평균 32%가 올라가야 되며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국민들 모두가 직접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 국제원유가인상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생긴 것을 국내의 가격체계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임금과 물가와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즉 현재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한자리 이내의 임금인상으로 자제해 주고 앞으로 기업이 살아나서 경영이 호전되면 사후에라도 업적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채 겸〉

한편 김회장께서 정부의 기업지원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공화국 시절에 쓰던 정부주도적 기업지원방식은 더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부는 '인센티브'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은 기업의 창의에 맡겨야 합니다. 또 정부가 육성대상 업종을 골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곤란합니다. 어떤 업종을 육성해야 하는지 정부가 정확히 가려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조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에 있어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조정자로서의 정부기능이 긴요

사 회 :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오늘날 경제추세로 봐서 정부의 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전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문제, 노동계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등 이에 대한 정부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MIT교수들이 「Made in America」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다섯가지 들고 있는데 놀랍게도 '정책부재'가 세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31명이나 되는 교수들이 3년간 연구한 결과 미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정책부재에서 야기되었다는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강차관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봉균 : MIT의 교수들이 지적한 정책은 산업정책을 의미합니다. 미시적인 산업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내년도에 불안하니까 흔히 학자들은 전통적인 '매크로'처방을 냅니다. 그것이 긴축정책인데 인플레가 걱정이 되면 금융이든지 재정이든지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재정을 줄이고 통화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근로자들한테 임금안정을 호소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재정·금융은 총량적인 수요정책이고, 임금의 안정을 통하여 물가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이크로'측면의 비용정책입니다. 금년도 물가상승을 보면 소비자물가의 경우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문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임금인상은 그대로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은 그래도 비용절약적인 생산성 증가가 가능하여 임금상승분의 상당수준을 자체에서 흡수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상승에 의한 인플레를 재정이나 금융의 긴축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총량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생산성 향상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임금이든 고유가든 생산성 증가로 비용 증가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물가안정의 요체라고 보는 시각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계획을 마련해 봤으면 그 방향으로 정부가 밀고 나가야지 제조업이 성장되어야 한다면서, 그 안의 것은 손 안 대겠다 하는 현 정부의 입장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한편 산업정책에 있어서 재정·금융 지원보다는 특정산업에 대해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 중에서 어떤 업종이냐 하는 것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채겸 : 어느 것이 수출주력산업이 돼야 하며, 어느 분야가 성장산업이고 어느 분야가 쇠퇴산업이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어느 쪽이 발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등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업종별로 어떻게 가야한다는 모습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 계획을 마련해 봤으면 그 방향으로 정부가 밀고 나가야지 제조업이 성장되어야 한다면서, 그 안의 것은 손 안 대겠다 하는 현 정부의 입장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강봉균 : 정부로서는 민간업체가 업종별로 '프로덕트 믹스', 기술개발의 방향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비전 등은 스스로 만들도록 권유할 생각입니다.

또 어떤 업종이 장래유망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 투자규모인가 하는 문제도 기업인 스스로가 판단해야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업종만 키워야 하고 어느 부문만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기업가의 창의가 발휘될 때 가장 능률적이 될 수 있는 기업인의 영역입니다.

사 회 : 과거의 낡은 개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중산층을 적극 육성, 지원 성장시킨다는 그런 정책비전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동문제가 최근 2~3년 동안에 극렬화되면서 언론이나 일반인, 학생들의 인식이나 분위기가 이 사회는 마치

> “
> 노사관계발전심의회
>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문제를
>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 노출도 시키고 공청회를 열어
> 의견도 듣고 하면서
>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 노사관계 모형을
>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 생각합니다.
> ”

몇개의 커다란 대기업과 그 뒤에는 정부만이 있을 뿐 나머지는 피착취계층으로 존재한다는 양극화적 인식이 의외로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어떤 조건하에 있으며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실재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 속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비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병휴 :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 한다면 정부의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가 돼야 합니다.

정부가 기본업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여건을 이겨내서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기업인의 역할이지 완전히 만들어진 환경속에서 기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인들이 나빠진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그 곳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악화된 환경속에서 생존기법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데도 기업본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집단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혈연인 개인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근로자문제도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분명히 물가에 영향을 미쳐 자승자박의 결과가 되는데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올라가야 하는 데도 불행히도 우리는 역진현상이 있으니 어느 사용주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로자들이 반성해서 해결해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 지금까지 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는 화살이 기업이나 근로자쪽으로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경제주체가 국민경제적 시각 가져야

김채겸 :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창업자도 있고 2세도 있는데 사실상 밖에서 보는 시각처럼 소유의 집중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인도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비호한다든지 특혜를 준다는 오해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입법예고제도나 정책예고제도를 둬서 공청회를 거치면 앞으로 그런 오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토지문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데도 대기업들이 왜 매각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데 사실상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집행이 안된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또 무슨 로비를 해서 다 도망갔구나'하는 오해를 사는 게 아닌가 싶구요.

배병휴 : 기업인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오히려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금융사정이 어렵다, 여신이 어렵다, 입지가 어렵다, 근로자문제가 어렵다, 기술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정부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근로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목표가 있고 또 성취의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달성되기까지에는 산술적인 시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장이 10년만에 성취한 몫을 나는 2,3년만에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년만에 자동차를 가질 수 있고 집은 언제 가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배무기 : 기왕 노동문제가 나왔으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수준이나 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일탈적인 행동도 많이 나왔고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노조의 책임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경영자가 종업원의 고용과 복지에 책임감을 투철하게 갖고 노조의 협력을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양쪽이 모두 노력한다면 옛날처럼 부지런히 일하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노동계를 보면 노총도 있고 전노협도 있고 이념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노동법 개정 등 다양하고 때로는 과다한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뭔가를 어떻게 하라고 해줄 역할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원로들로 구성된 노사관계발전심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문제를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노출도 시키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도 듣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노사관계 모형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런 측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기업도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 갖춰야

사 회 : 기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업 특히 대기업이 기여한 역할이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서 소유의 개인집중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경제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유의 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비관련 업종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경영다각화라는 명분하의 경제력 집중 문제 역시 기업의 양식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보여지는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채겸 : 소유의 집중문제는 조세

〈배무기〉

이외의 방법으로 억지로 해결하려 들면 사회주의 색채가 가미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랄까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10%미만입니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거기에 문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 전문업종으로 다각화하려고 해도 투자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체내에서 투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또 비능률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전문화하려면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 그곳에만 투자해서 키워나가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신관리 규정에서 투자한도에 걸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 회 : 그런 점은 이해를 하면서도 내수시장을 상대로 비관련 업종까지 다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국제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생길 만큼 전문화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지도층의 노력 필요

강봉균 : 사회자 말씀은 제조업과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분야의 다각화는 좋은데 대기업이 유통산업이나, 금융서비스 등과 같이 연관이 별로 없는 부분까지 다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5년정도 지나서 우리의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가 되는 경제구조에서는 다각화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로 봐서 큰 기업이 역시 우리 산업의 주력분야인 제조업 쪽에 자원을 집중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도 비판하는 소리에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 중에서 체제부정적인 노동운동가의 수나 그 영향력도 앞으로 줄면 줄었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근로자들을 설득할 때의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지도층의

〈배 병 휴〉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사회지도층들이 최저임금심의회라든지 노사발전협의회, 양곡유통위원회 등 여러가지 형태의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여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계층중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특정 계층편에 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도층의 목소리 사이에도 또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익중립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각 계층간의 오해와 불신,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생기는 불평불만 등을 계층중립적인 지도층 인사들이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귀중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 회 :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이랄까 자세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립적이지 못한 사회지도층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토론을 끝맺기 전에 그동안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정부가 시대변천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책신뢰도 제고가 急先務

배병휴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인데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정직한 정부, 깨끗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정직하고 깨끗하더라도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지요.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명한 정부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책내용의 요점과 핵심을 뽑아 정리해서 TV 등에 나와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겠지요. TV에서 안면도 사건이나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설명하는 걸 보았는데 설명이 충분치도 못하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깨끗한 정부고, 정직한 정부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을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합니다. 정부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이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에 국민경제교육기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능이 발전되고 조직화되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의 기능이 발전하는 것만큼 정부의 경제정책의 신뢰도는 높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배무기 : 조금 전에 학계나 중간지식인들의 계층중립성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많이 그랬지만 최근에는 그런 면에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사관계만 해도 근로자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약한 쪽을 편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73%가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고 힘도 막강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노조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지적하게 되었고 노사간의 균형을 취하게 하는 접근도 달라지게 되었지요. 노동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노사

>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명한 정부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결구조에서 탈피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노동조합 간부들이 강성 위원장으로 많이 교체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부나 기업에서 갑자기 어떤 계층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노선을 가는 노동운동은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채겸 : 배국장께서 다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첨언하면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에 더 보태 힘있는 정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지킴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는 법질서와 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정부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을 다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정직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정부조직상 정치논리로부터 가급적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더라도 차관은 직업공무원이어야 하고 그 직업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전환기적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모든 경제주체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며 그런 가운데 각자의 할 바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정리 : 편집실)

UR 협상의 배경과 전망

1986년 9월에 남미 우루과이에서의 각료선언에 의해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1990년 12월 3일~7일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회의에서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기본목표는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및 규율강화, 신분야에 대한 다자간규범 마련을 통해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세계교역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강병일
경제기획원 통상조정3과장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출범 배경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체제내의 8번째 다자간 협상으로서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2차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된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하여 각국은 자국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 관세인하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동 조치들은 타국의 수출기회를 봉쇄하여 국제경제질서를 붕괴시키고 무역전쟁을 유발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병폐를 막기 위해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범세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GATT는 1948년 1월 국제협정으로 출발하여 후에 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 GATT는 출범 당시 단순한 국제협정이었으나 오늘날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 이사회 · 각종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 국제기구로 간주되고 있다. GATT 가입국은 출범 당시 23개국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125개국(정회원국은 99개국)으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가맹국의 교역량은 세계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ATT는 설립 후 국제무역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최하였는데 1~6차 협상까지는 주로 관세인하 중심의 협상이 추진되었다. 제6차 다자간 협상(케네디라운드, '64~'67년)은 선진국의 관세율을 공산품의 경우 가중평균으로 35% 인하하는데 성공하였고, 제7차 협상(동경라운드, '73~'79년)에서는 관세인하와 함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11개의 다자간 협정(MTN Code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을 체결하였다.

신보호무역주의의 만연

'70년대 이후 선진국의 관세수준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자 비관세장벽이 주요 무역규제 수단으로 등장하게

〈표〉 UR협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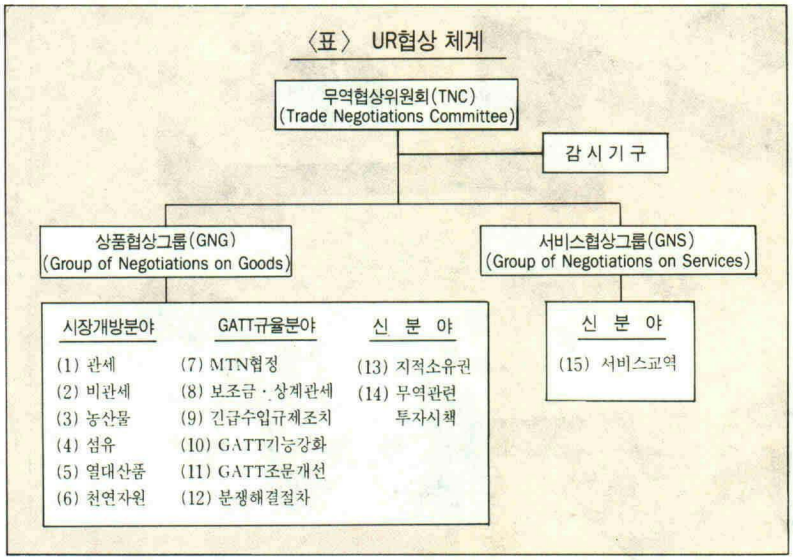

되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누적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상품교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켜 미국의 통상법 301조, 미국과 EC의 반덤핑조치 등 수입개방압력과 수입제한조치 등 다자간 체제보다는 쌍무적 또는 일방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국제교역질서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압력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자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체제가 약화되고 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미국은 동경라운드 종료 직후인 1980년대 초부터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과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와 투자조치 및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분야가 전적으로 선진국의 관심분야라는 점을 들어 이들이 협상의제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 추진논의는 1982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다수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거쳐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의 각료선언에 의해 제8차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내용과 진전상황

1986년 9월에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1990년 12월 3일~7일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회의에서 종료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기본목표는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및 규율강화, 신분야에 대한 다자간규범 마련을 통해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세계교역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이루어지는 체계와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을 보면 협상체계는 〈표 1〉에서 보듯이 상품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무역협상위원회는 이들 양대협상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구가 있어서 GATT에 위배되는 기존조치들을 동결·철폐하겠다는 각료회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GATT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협상으로서 〈표〉에서 보듯이 상품교역에 관한 의제와 서비스교역 등 15개의 협상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품협상그룹은 크게 시장개방분야·GATT규율분야·신분야 등으로 나뉘어 총 14개 협상의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개방분야에서는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뿐 아니라 농산물·섬유·열대산품·천연자원 등에 관한 교역자유화 문제가 협상되고 있고, GATT규율분야에서는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MTN협정,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명료화와 요건 및 기준강화문제, GATT조문 및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GATT기능강화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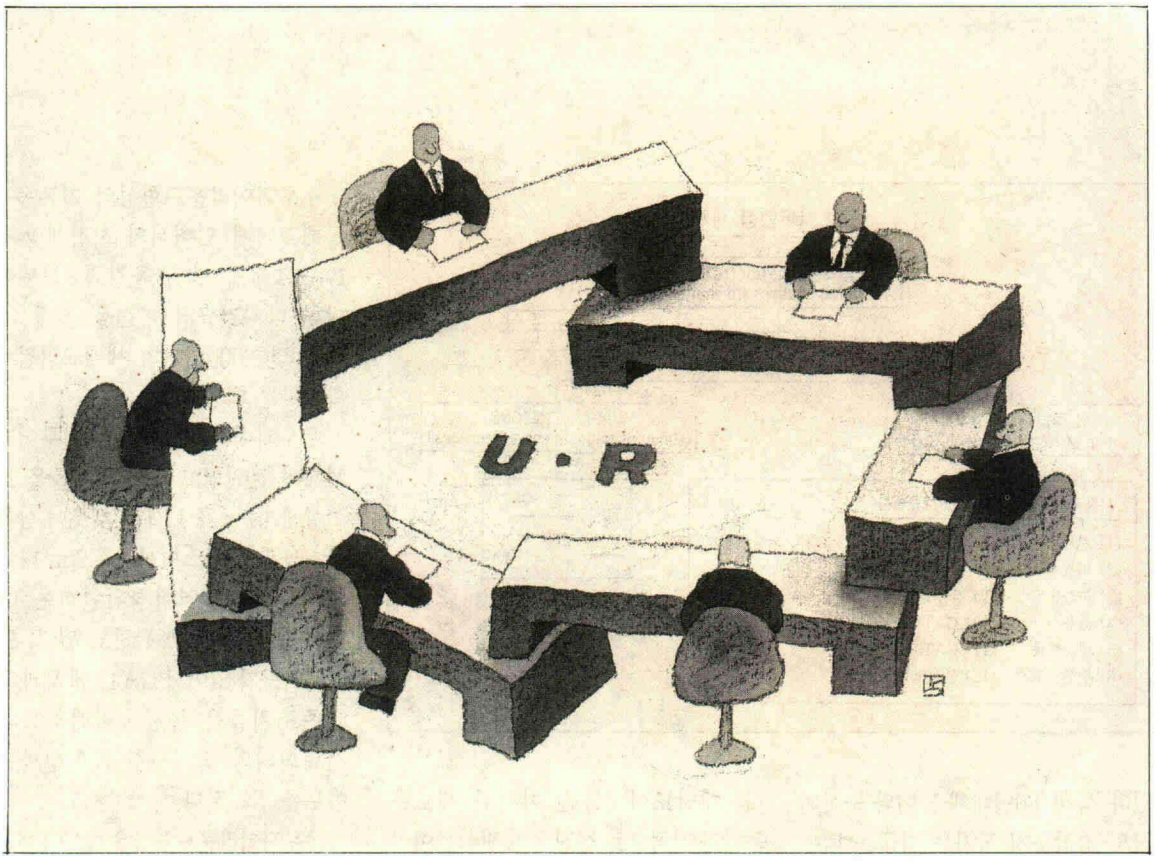

야에서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무역을 왜곡시키는 투자조치문제 등이 협의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교역에 관한 문제는 상품협상그룹과는 별도로 서비스협상그룹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상황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협상의제가 광범위하며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각국의 의견이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여 동안 모든 협상국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여 왔다.

1989년 하반기에는 의제별로 각국이 구체적인 서면제안을 함에 따라 이들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협상위원회에서는 금년 7월까지 15개 세부의제별로 조건부 협상타결안을 마련하여 최종협상안에 대한 윤곽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7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협상위원회에서는 최종합의 윤곽을 도출하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협상진전 상황을 중간점검한 의장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선진국 · 개발도상국 구분없이 자국의 기존입장을 고수하여 거의 모든 협상의제마다 심한 의견차가 있었다.

비록 지난 7월의 무역협상위원회의가 협상진전에 큰 공헌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남은 협상기한의 촉박함,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 쟁점과 기술적 작업의 분량 등에 대해 모든 참가국들이 함께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체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특히 농산물과 섬유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최대 관심분야임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컸다고 하겠다.

그간 선진국은 자국의 관심분야에 협상력을 집중시키는 반면 개발도상국 관심분야에는 소홀하여 협상의 이익이 참가국간에 고루 돌아가지 않을거라는 우려가 많았으며 최근에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의 타결전망이 밝다고는 볼 수 없다. 주요 분야별 협상 진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협상참가국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 협상은 각국이 농업분야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향후 일정한 시점까지 상당한 정도로 감축하고, 농산물교역에 관한 각종 장벽을 계량화할 수 있는 관세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각국별로 감축비율, 관세화조치의 예외품목 등에 대하여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 보조금을 향후 10년간 70~90%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EC는 30%를 주장하고 있어 극심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섬 유〉

다자간 섬유협정(MFA : Multilateral Fiber Agreement) 종료('91년 7월 31일)후부터 섬유교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 즉 GATT로 통합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GATT로의 통합을 위한 잠정기간이나 잠정기간 중에 적용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증가율, 융통성, 단계별 규제철폐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제교역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상은 그동안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추진방식을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 개방할 수 없는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 개방할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개도국 입장이 반영되어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중요한 쟁점을 해소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서비스협정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경간의 노동력 이동의 범위, 기존의 국제협정에 최혜국대우원칙(MFN원칙 :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또한 선진국간에도 심한 의견대립이 있는 실정이다.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협상에서는 미국·EC·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반도체 설계기술 등 각종 지적소유권을 최대한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협상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인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은 동 협상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적소유권 보호의 대상을 위조상품의 교역·저작권 침해 등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 보호기구인 기존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GATT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동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입장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기 때문에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농산물·섬유 등 다른 분야와의 절충 등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정이 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전망

종반부 협상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협상주도국의 정치적 절충과 의견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협상이 시한내에 타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금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세계교역질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종합타결안 작성을 위해 협상참가국 모두가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타결안 작성시기로 예정된 11월 23일전에는 협상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타결될지 예측하기 힘드나 최근에는 시한내의 협상종료보다는 협상결과의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학자 및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협상의 연장도 심각히 고려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협상 진전상황과 협상주도국의 기본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분야의 초기 자유화약속을 위한 양허교환협상과 농산물협상을 위한 양자협상은 내년초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외의 협상에서는 금년 12월초까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R 협상과 무역 및 산업정책방향

새로운 GATT는 농업과 같은 1차산업, 섬유를 포함한 2차산업, 서비스 등 3차산업제품의 교역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자본 ·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문제도 다루게 되며 보조금정책 등 각국의 대내적인 산업정책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국내의 기업이 곧바로 외국의 기업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벌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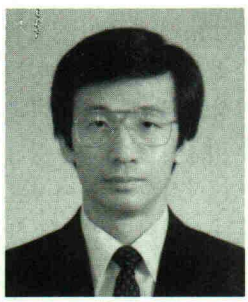

박영국
상공부 국제협력담당관

우루과이라운드는 그 협상시한을 불과 한달남짓 남겨놓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누가 말했듯이 자유무역체제의 재정립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금세기 최후 · 최대의 기회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협상결과는 우리의 무역 ·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타결되는 협상문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협상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과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국제무역질서를 직시하여 우리의 무역 및 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한 것은 현재 우리의 각종 정책이 대체적으로는 UR이 나아가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보완할 분야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중에는 정책수단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많아 세부적으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하에서 UR에 의하여 예상되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UR 이후의 산업 및 무역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UR에 의한 세계교역환경의 변화

첫째, 각종 무역체제 장벽이 제거되거나 낮아진다. 관세수준은 현행보다 1/3 수준이 인하되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평균관세율이 5% 이내로 낮아질 것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들의 관세율도 평균 10% 내외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각종 비관세조치 즉 수량규제 · 기술규격 · 세관절차 · 수입허가절차 등에 의한 수입규제사항들도 점차적으로 철폐된다.

그동안 GATT 밖에서 각국의 수입통제 내지 소수국가간의 관리무역형태로 유지되어 온 농업과 섬유교역이 GATT로 통합되어 자유화된다. 농업은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모두 관세화되어 관세수준을 점차 낮추어 가게 되며 또한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도 감축

시켜 나가게 된다. 그 감축정도와 각국별 이행기간은 최종 협상결과에 좌우되겠지만 앞으로는 농산물의 생산·가격·무역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정부조치도 철폐되어 나가고 오직 사회간접지원 또는 소득정책에 한하여 정부의 관여가 허용된다. 섬유교역도 현행 다자간섬유협정(MFA)에 근거한 나라별 쌍무쿼타제에 의한 교역제한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어(10년 예상) 이제 각국의 완전수출경쟁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외에도 수출자율규제(VER)와 같은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가 철폐되고 면제조항(Waiver)이나 개도국의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수량규제허용조항(GATT 제18조 13항), GATT가입 이전의 국내 법률에 의한 수입규제의 존속(Grandfather Clause) 등도 폐지되거나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역자유화가 진전되게 된다.

둘째로 공정무역체제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금융·조세 등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어 기술개발, 환경보전, 재해보상, 교육 및 보건 등과 같은 간접적·공공기능적 차원의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관여가 제한받게 된다. 즉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인위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금지시키게 되고 그야말로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자유경쟁이 진행된다.

그리고 덤핑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료하고 강화된 규정이 마련된다. 그동안은 선진국이 덤핑행위라는 비도덕적·불공정무역관행의 그물을 남용하여 사실상 자국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덤핑의 정의와 산출내역, 피해의 판정, 피해조사절차 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명료화되고 강화되어 반덤핑조치 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으로는 덤핑판정을 피하기 위해 수입국 내에서 단순조립생산을 하는 우회덤핑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제규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셋째로는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된다. 일방주의·쌍무주의·지역주의 등을 억제하기 위해 GATT의 기능과 체제개편을 통한 다자적인 협의와 감시가 강화된다.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의 신설에 따라 각국의 무역, 산업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 관행 등이 GATT에 보고되어 검토·평가받게 된다. 이와 함께 GATT 규정에 근거한 모든 규제조치는 사전 또는 사후에 즉각적으로 GATT에 통보되고 모든 회원국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어 이제는 다자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에서 공개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GATT 분쟁해결절차도 대폭 강화되며 무역·금융·통화정책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세계경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GATT와 IMF, IBRD 간의 협의와 업무협조가 다각도로 이루어진다.

넷째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다자규범이 정립된다. 날로 그 교역규모가 커지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규범이 새로이 마련되어 각 서비스 분야별 자유화 시기와 유예사항 등에 대한 실질협상이 진행되며 내국민대우, 명료성 증대, 시장진입방법 등 일반규칙에 관한 규범이 마련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의 시행에 대해서도 다자적인 기준이 마련되며 강제실시권과 같이 활용측면도 적절히 반영된다. 아울러 투자자유화에 관해서도 국산부품사용의무·수출의무 등과 같은 제한조건부과가 금지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GATT는 섬유를 제외한 공산품의 대외적인 교역에 관해서만 규율하였으나 UR에 의해 마련되는 새로운 GATT는 농업과 같은 1차산업, 섬유를 포함한 2차산업, 서비스 등 3차산업제품의 교역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문제도 다루게 되며 보조금정책 등 각국의 대내적인 산업정책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국내의 기업이 곧바로 외국의 기업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벌이게 된다.

UR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UR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에 대해서는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완화는 국내산업에는 부담되지만 다른 나라가 낮추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며, 섬유교역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계 곳곳으로
상품을 수출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GATT체제강화에 따른 보다 개선되고 안정된
세계교역환경을 필요로 한다.

자유화되어 현행 쌍무쿼타제가 철폐되면 섬유수출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만큼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면 우리의 수출상품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며,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할 경우 우리가 제소를 당하면 불리하지만 제소할 경우는 유리하다 할 것이다. 서비스시장 개방시 건설·해운과 같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유리하고 통신·금융·전문직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불리하다. 농업도 당장은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분야임에 틀림없지만 이번 UR을 통해 우리 농업정책을 재고하고 장기적·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을 거친다면 우리의 농업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UR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계 곳곳으로 우리 상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나라로서는 GATT체제강화에 따른 보다 개선되고 안정된 세계교역환경을 필요로 한다.

둘째, 가급적 UR을 통해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해서도 다자적인 기본규율과 틀속에서 장기적·점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국제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양자적 압력에 의해 조기개방될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UR에 의해 눈앞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이루어지는 산업구조조정과정이나 민간자율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을 거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 전반의 건실한 발전과 기술개발·품질향상 등을 통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UR협상에서의 단기적 이해타산을 계상하기 보다는 새로운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장기적인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더 생각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UR은 우리에게 진정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UR 이후의 무역 및 산업정책방향

이상에서 기술한 UR에 의한 세계교

UR에 의한 세계교역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감안할 때 UR 이후에 무역 및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둘째로 우리나라의 각종 무역이나 산업관련 제도 · 정책 · 관행 등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선진화시키고 셋째로 민간자율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역환경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감안할 때 UR 이후에 무역 및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이다. 국경이 없어지고 우리 상품과 외국 상품이 국내외에서 동일 조건으로 경쟁하게 됨에 따라 품질 · 가격 · 서비스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선진국의 높은 수준의 기술 · 지식 · 정보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섬유산업구조개선 7개년 계획 등 각 부문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 추진 중에 있으나 이번 UR을 통해서 이들 대책을 UR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전면 재조정하고 보완 ·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도저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산업전환대책을 통해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각종 무역이나 산업관련 제도 · 정책 · 관행 등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수입허가제도, 인가제도, 수량규제, 세관절차, 기술규격 등 현행 특별법상의 각종 제한제도를 점차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한편 이들을 관련 GATT 규정에 맞추어 운영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반덤핑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표준 및 기술규격운영제도 등이 새로이 개정되는 GATT규정과 합치되도록 개편 또는 운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이나 수입허가절차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 관련 규정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매4년마다 GATT로부터 무역정책검토(TPRM)를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무역규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GATT의 감시대상이 되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제도를 종합점검하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UR 이후에는 GATT로의 통고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모든 무역 · 산업관련 정부조치는 GATT로 통보하여 전가입국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제도를 보다 명료화하고 간소화하여 다른 나라로부터의 시비와 비난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정책 · 제도 · 법령 등을 명료화한 상태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 대처를 잘하여 우리의 수출여건개선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역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해 오면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계속 개편해 오고 있는 바, 동 작업을 보다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민간자율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UR에 의해 정부의 보조금지원이 축소되고 인 · 허가 등의 제도가 철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자세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되어야 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자유경쟁체제가 조속히 토착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의 발달된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전세계로부터의 정보수집, 판매시장확보, 생산, 기술개발, 투자활동 등에 매진하여야 하며 경영기법도 선진화하여 나가야 한다. 이제는 바로 세계 제1의 기업과 직접 경쟁하에 놓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응하는 기업, 전문화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UR 농산물 협상과 대응방향

우리나라는 그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수성 때문에 농업을 완전 자유무역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농산물수입국으로서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유지를 위해 농산물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국내보조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게는 수입개방에 따른 충분한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정호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과장

머리말

지난 '86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의 세계통상장관 모임에서 GATT의 8번째 다자간 협상으로서 공식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이제 금년 12월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분야별로 그 윤곽이 제시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15개 협상과제 중의 하나인 농산물협상은 각국간 또는 각그룹간에 농업여건이 크게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어 다른 어느 협상 분야보다도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이며 또한 농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농어민의 생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농산물협상에 있어 협상전략이나 그 대응책 마련에 있어 많은 정책적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아직 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협상결과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야별 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입장과 앞으로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UR농산물협상의 주요 쟁점과 기본입장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설립된 GATT는 그동안 케네디라운드 ('64~'67년), 동경라운드 ('73~'79년) 등 7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자간 협상은 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촛점을 맞추었던 반면에 이번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그동안 GATT체제에서 많은 예외가 인정되어 왔던 농산물과 그리고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지적소유권 분야 등 협상분야가 크게 늘어났으며 각 분야별로 다루고 있는 협상의 내용도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하겠다.

농어민의 생업에
직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농산물협상은
그 협상전략이나 대응책이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사진은 서귀포 바나나 비닐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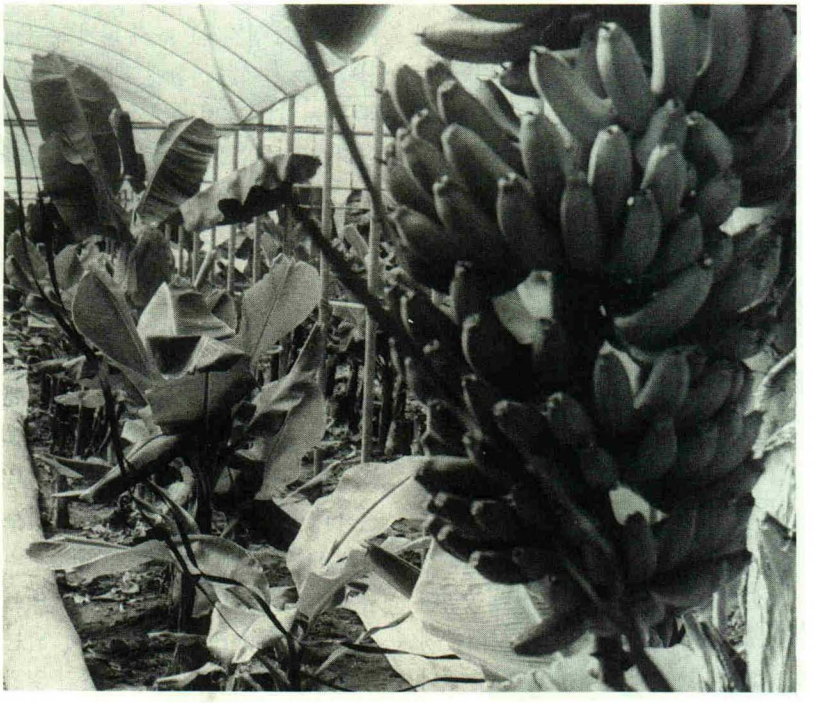

농산물협상의 특징과 내용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과거의 무역협상과 다른 점은 종래에는 무역협상이 주로 수입자유화의 폭과 관세 등 수입장벽을 완화하는 데만 중점을 둔데 비해서 이번 협상에서는 교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의 직 · 간접 보조까지도 감축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농산물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협상의제는 ① 수입수량제한 등 비관세 조치를 철폐하고 관세화하는 문제, ② 농산물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주는 농업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 ③ 농산물 수출보조를 감축하거나 철폐하는 문제, ④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식품위생 및 동 · 식물검역 기준을 국제기준에 합치 운영하는 문제, ⑤ 이상 4가지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식량안보·고용·환경보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 Non-Trade Concerns)의 반영문제, ⑥ 개도국 우대문제 등 6가지로 집약될 수 있겠다. 이러한 협상과제에 대해 각국간에는 현격한 입장 차이로 지난 4년간의 협상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해 왔을 뿐이다.(표1참조)

의장초안은 협상촉진 수단에 불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농산물협상 그룹회의 드쥬의장(De Zeeuw)은 그동안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자기 책임하에 합의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7월 농산물 그룹회의에 제시함으로써 이때부터 협상의 윤곽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드쥬의장 초안의 골자는 먼저 ① 시장개방에 있어 모든 비관세 조치를 제거하여 관세화로 하되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상당치(TE : Tariff Equivalent)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기간을 통해 감축시켜 나가자는 것, ② 국내 보조정책은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되며 허용되는 보조정책도 현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말고 GATT의 감시와 규제의 대상으로 하자는 것, ③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다만 개도국의 경우는 협상결과의 이행에 있어서 특별대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④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은 국별 현황자료(C / L : Country List)와 국별 보조감축 이행계획(O / L : Offer List)을 제출하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쌍무간 또는 이해당사자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협상

〈표 1〉
주요 협상그룹별
기본입장

그 룹 별	기 본 입 장
미국 · 케언즈그룹	농산물교역의 완전 자유화
EC	농업보호 체계 유지(점진적 감축)
한국 · 일본 · 스위스 등	일정수준의 농업보호 유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강조

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장초안은 주로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농산물 그룹회의에서 수입국의 반대로 이것이 협상의 기초로 채택되지 못하고 단지 '협상의 촉진수단'으로만 받아들여 짐으로써 의장초안은 앞으로 협상에서 토의할 논점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겠다.

농업보호수단 확보에 최대 노력

우리나라는 그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무역 체제로의 발전이라는 기본정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수성때문에 농업을 완전 자유무역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농산물수입국으로서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산물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국내보조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게는 수입개방에 따른 충분한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난 10월 29일 농산물 그룹회의에 제안한 O / L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칙적으로 수입제한을 철폐하는 관세화(Tariffication)를 수용하되 NTC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품목과 생산조절대상 품목(GATT 11조 2C 적용품목)은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둘째, 관세화 방법으로는 91년부터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 나가되 관세상당치는 관세화 전환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 감축하며 현행 관세에 의해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쿼타(TQ : Tariff Quota)는 지난 3년간의 평균수입량으로 하되 수입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는 국내소비량의 1%를 부여.

셋째,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는 시장가격지지와 비료 등 특정자재에 대한 보조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도국의 농업과 농어촌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구조조정정책 그리고 식량안보 등 NTC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업유지목적의 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의 경우는 97년부터 10년간 일괄하여 30%를 감축하되 개도국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6년('91~'96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

넷째,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NTC 관련품목으로는 식량안보를 위한 국민필수식량과 농가소득 기여도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쌀 · 쇠고기 · 돼지고기 · 우유 및 유제품 · 고추 · 마늘 · 닭고기 · 참깨 · 보리 · 감귤 · 대두 · 고구마 · 감자 · 양파 · 옥수수 등 15개 품목을 제시.

다섯째, 이러한 우리의 제안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O / L의 수정 또는 철회할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보호수단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중점을 두었다.(표2 참조)

향후 협상의 전망

UR농산물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관세화 범위와 폭, 보조금 감축수준 등 어느 하나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협상타결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120여 협상참여국 중에서 국별 보조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한 나라는 미 · 일 · 케언즈그룹 · 캐나다 등 39개국(11월 8일 현재)만으로서 농산물협상에 가장 강력한 협상그룹의 하나인 EC도 역내 회원국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O / L을 11월초에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미 O / L을 제출한 국가도 품목별 이행계획을 제출치 않고 일반적 감축원칙의 제안 형태로 제시한 상태이며, TE감축폭 · 감축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감축폭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감축원칙에 대한

〈표 2〉 주요국의 감축제안 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NTC필수품목과 생산조절대상품목은 개방에서 제외	모든 수입 제한 품목을 관세화	기초농산물과 생산조절대상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91년부터 7년간 개방. 개방시점에서 10년간 이행	'91년부터 10년간 이행(개도국 15년)	'86년부터 10년간 이행
국내보조 : 30%감축(구조조정 등 예외 인정)	국내보조 : 75% 감축	국내보조 : 30% 감축

국제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축규모의 확대와 함께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사진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牛舍.

현격한 시각차를 좁히는데 촛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시한을 앞둔 현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향후 정치적 절충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와 각국간 입장이 크게 달라 연내 일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 그리고 일반원칙 등은 연내에 합의하고 후속협상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견해 등 여러가지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산물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의 적극적인 기여의지 표명과 함께 협상참여를 통하여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협상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또한 협상진전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지난 '89년에 BOP(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를 졸업한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시장이 현재보다는 개방화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국제화되어 가는 농업환경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단히 지속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UR농산물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요인

우루과이라운드가 국내 농업과 농어촌경제에 미칠 영향은 향후 협상의 타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주로 관세화의 폭 · 관세쿼타(TQ)의 수준 · 보조감축의 정도 · 이행기간 등이 어느 수준에서 타결되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관세화 · 관세쿼타 등에 의해 영향 받아

그동안 수량제한 등 비관세 조치로 수입을 제한했던 것을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을 관세상당치(TE)로 부과하여 관세화할 경우 초기에는 수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입가격이 오히려 국내가격보다 높게되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나 관세상당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쟁력이 극히 낮은 품목은 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관세상당치를 부과하지 않고 관세수준으로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관세쿼타(TQ)는 이미 현재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콩·옥수수 등 사료곡물이나 쇠고기 등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수입이 없었던 품목은 소량씩이나마 수입이 되어 들어올 경우 국내생산 농산물에 다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의해 보호가 인정되는 품목을 제외한 관세화 대상품목은 국내보조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나 보조정책에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NTC보호품목이 우리 제안대로 인정될 경우 쌀·보리 등의 이중가격제나 소·돼지의 가격안정대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수매가격을 크게 올린다거나 수매량을 대폭 늘리는 등은 어렵게 될 것이며 또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크게 괴리되는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지원정책이 당장에 중단되지는 않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 당장에 모든 지원이 중단되거나 농산물 수입이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우리 농업을 위협할 충격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과 함께 실행기간 중에는 국제가격과의 차액이 관세상당치로 부과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품목은 상당히 제한적이 될 것이며 특히 장거리수송이 곤란한 품목이나 국제간의 거래가 어려운 품목의 경우에는 영향정도가 크게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분적이나마 개방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수출 등 적극적 방법으로 국제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UR 후의 농업정책 방향

80년대 후반 이후 진전되기 시작한 우리 농업의 국제화 현상 다시 말해 BOP졸업·우루과이라운드 등 일련의 과정은 농업정책에 있어 새로운 정책변수로 작용됨은 부인 못할 사실로서 향후 농업정책은 이러한 세계경제여건의 자유화 추세에 대응하고 또한 국내의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농어촌지원폭을 늘려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구조조정이 촉진되어야

국제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농지이용이 많이 되는 쌀 등 경종농업은 영농규모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경지정리·배수개선·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영농기계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축산은 전업적 가족축산을 중심으로 한 양축규모의 확대와 함께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집약농업인 원예·화훼류 등은 상품성 제고와 시설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소농여건 하에서는 토지이용형 농업보다는 기술과 시설집약적인 농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농유형별로 전문영농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농업기술혁신을 위한 유전공학 등 첨단농업기술의 개발촉진과 함께 농촌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응용기술개발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품성 향상과 농산물 수출의 적극적 추진

농산물 수입이 제한되던 시기와는 달리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내생산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특히 부가가치가 큰 가공분야에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방화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같이 수입을 개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국제화에 대한 소극적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대외진출확대가 중요하며 특히 기술집약적이고 한국적 특산성을 살린 국내 농산물은 수출가능성도 큰 만큼 경쟁력있는 수출유망작목을 개발하여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크게 경험해 보지 못한 국제화라는 커다란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이러한 국제화 환경에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인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기회에 국내 농업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득원의 안정적 확보대책 강구

국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농가단위로 보면 소득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개방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세상당치와 연계한 차액보상·생산조정보상 등의 보완대책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농산물가격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관세 등 관세제도의 보완과 함께 산업피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농산물가격지지방식도 통상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출하 약정제', '자조금제' 등 시장기능 접근방식의 가격안정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등 농외취업기반의 확충과 함께 농외취업희망농가에 대한 기술훈련과 취업알선 등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제도의 확충

현재 농어촌은 소득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도·농간 균형발전차원에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도로·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편익·복지시설 등을 보다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어촌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소득보전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력이 없고 농외취업도 어려운 농가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그동안 크게 경험해 보지 못한 국제화라는 커다란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이러한 국제화 환경에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인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기회에 국내 농업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농어촌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 우리 농업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민·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합심된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하겠다. 농촌경제

UR섬유협상과 대응방향

섬유협상의 결과는 우리의 사전준비 여하에 따라서 우리 섬유업계에 새로운 수출시장확보 및 수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섬유교역의 자유화 추세를 고려하고 2천년대 우리 섬유산업의 위상을 제시하고 있는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번 UR섬유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수출촉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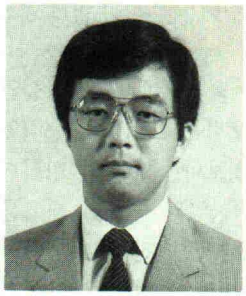

최용진
상공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각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섬유협상

인간의 기본 생존요건인 '의·식·주' 중 교역이 가능한 농산물과 섬유분야는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유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GATT에서도 예외적으로 취급해오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 UR협상에서도 이들 분야의 협상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산물교역은 특정한 품목별 협정에 의해 부분적인 규율을 받아온 반면, 섬유교역은 MFA라는 국제규범에 의해 총체적인 교역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협상은 협상내용과 방법은 복잡하나 협상목표는 보다 단순한 측면을 갖고 있다. 즉 MFA를 철폐하고 자유화될 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섬유교역 체제를 규율하느냐 하는 것이다.

협상의 배경

세계 섬유교역은 GATT 체제 밖에서 규제되고 있어

세계 섬유교역은 61년 7월 면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1년간의 잠정협정인 단기면직물협정을 효시로 73년까지 12년간 연장·시행되어 온 장기면직물협정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는 64년 12월에 장기면직물협정에 28번째로 가입하고 65년 1월부터 동 협정의 적용을 받았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조섬유의 생산과 교역이 증대하여 면직물뿐만 아니라 모직물, 인조합섬섬유까지 포함되는 전반적인 섬유류교역규범이 필요하게 되자 선진국들은 세계섬유교역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있는 교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GATT의 힘을 빌어 다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상 MFA(Multi-Fibre Arrangement)로 지칭되는 '섬유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Arrangement Regarding Int'l Trade in Textiles)'이 74년 1월부터 발효되고 이후 계속

연장되어 MFA Ⅰ(74년 1월~77년 12월), MFA Ⅱ(78년 1월~81년 12월), MFA Ⅲ(82년 1월~86년 7월)를 거쳐 현재 발효중인 MFA Ⅳ(86년 8월~91년 7월)로 이어지면서 GATT 체제 밖에서 세계섬유교역을 규제해 오고 있다.

수입선진국들은 MFA협정에 의해 GATT로부터 예외 인정을 받아 GATT 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수출국별로 차별적인 수입수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MFA에 근거하여 미국, EC, 캐나다 등 선진 7개국과 양자쿼타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전체 섬유수출의 30%가 수량규제하에 수출되고 있다.

섬유교역 자유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86년 8월 GATT 섬유위원회에서 91년 7월까지 5년간의 MFA Ⅳ 연장의정서에 합의한 직후,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市에서 개최된 GATT 각료급 회의에서 섬유교역 자유화 문제를 UR협상 15개 의제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다룰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섬유협상의 목표는 각료선언문에 일목요연하게 표명되어 있는데 이는 "강화되는 GATT규정에 의거해 섬유교역을 궁극적으로 GATT로 복귀(자유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섬유교역을 보다 자유화하는 데 있다"라고 하여 현 MFA가 91년 7월에 종료된 후 GATT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체제로 완전히 복귀할 때까지 어떠한 잠정적인 규범에 의해 섬유교역이 통제되느냐 하는데 협상의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UR 섬유교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

UR 섬유교역 자유화협상 진행상황

현재까지의 섬유협상분야는 현행 MFA상의 규제를 철폐하고 조속히 GATT체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섬유수출 개도국과 일정기간 어느 정도 섬유수입규제를 유지하려는 선진수입국간의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즉, GATT복귀방안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대다수 국가의 현 MFA규제 철폐방안과 미국 및 캐나다의 총량쿼타제 주장이 대립하여 협상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난 9월에 캐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캐나다가 종전 입장인 총량쿼타제 주장을 철회하고 현행 MFA에 의한 양자간 쿼타협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잠정기간 중 쿼타량 증대방법 및 양자협정 인정여부 등 구체적인 MFA철폐방법, 섬유수입이 급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특별규제조치제도, GATT복귀시한 등 세부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즉, 어느 품목부터 자유화할 것인가 또는 어느 국가에 대한 규제를 먼저 철폐할 것인가, 규제중인 품목에 대한 증가율 정도와 융통성조항의 개선방법 등에 있어서 각국의 섬유산업 발전수준 및 전망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수출개도국들은 다자간에 합의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쿼타량을 증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EC등 선진수입국은 현재 각 나라별로 상이한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 MFA체제를 계속 유지 내지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있어 수출개도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외에도 GATT로 복귀될 때까지의 잠정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제도에 있어서는 수출개도국은 일반 GATT규정에 따른 엄격한 적용을, 선진수입국은 별도의 제도에 따른 보다 용이한 기준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GATT복귀를 위해서는 우선 개도국의 시장개방문제, 관세인하, 위조상품 규제규정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여타 UR협상의제가 명료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이내에 GATT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각국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0년 정도의 GATT복귀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EC가 최소한 15년의 기간을 고집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교역의 자유화라는
외부적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섬유산업 구조조정의 촉진과
정책기조의 전환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섬유공장 내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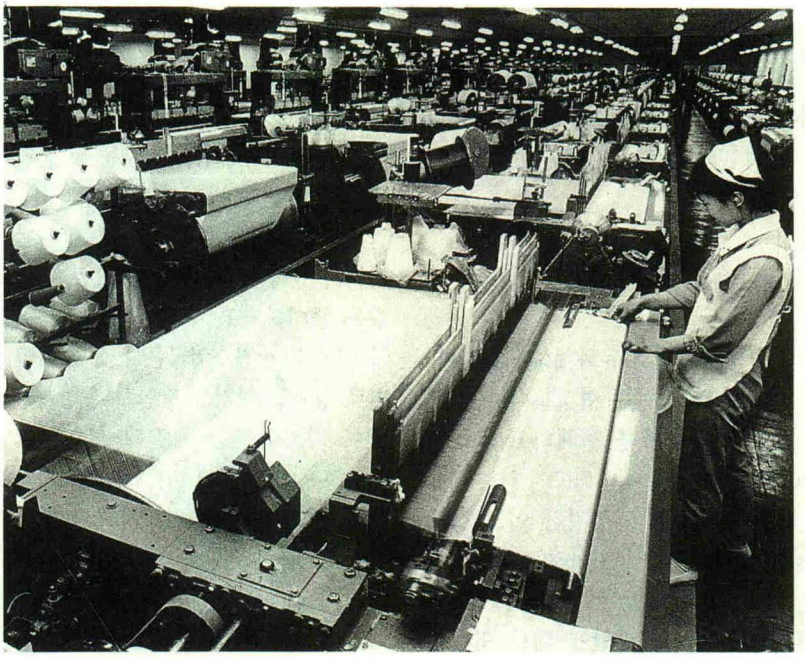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점진적 교역자유화를 주장

우리나라는 연간 150억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제4위의 주요 섬유수출국으로서 세계 섬유교역체제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점진적인 교역자유화 목표 달성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ITCB(84년 12월에 설립되고 현재 섬유수출개도국 22개국으로 구성된 공동협력기구, Int'l Textiles & Clothing Bureau) 회원국들과 공동대응전략을 통해 현행 MFA상의 규제를 협상의 기초로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GATT로 복귀하는 방안을 주장해오고 있다.

현 MFA체제는 종료되고 자유화 방향으로 타결전망

섬유가 차지하는 개도국 경제에서의 중요성과 선진국에서의 정치·사회적 민감성 등을 감안하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못하고 상당한 부분이 최종 협상단계에까지 가서 UR 전체협상 결과와 맞물려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번 UR협상은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타결되어야 하므로 섬유분야도 합의는 될 것이며 이는 현 MFA체제가 종료되고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든지 현재보다는 상당히 자유화되는 방향이 될 것은 확실하다.

UR을 섬유수출촉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발전과 섬유수출성장과정에서 MFA상의 쿼타규제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잠재적 수출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섬유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수출 물량확보 및 제품 고급화 등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양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섬유협상의 결과는 우리의 사전준비 여하에 따라서 우리섬유업계에 새로운 수출시장확보 및 수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존 수출시장과 국내시장을 잠식당할 수도 있는 국면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섬유교역 자유화라는 외부적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국내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의 촉진과 정책기조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UR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섬유교역의 자유화 추세를 고려하고 2천년대의 우리 섬유산업의 위상을 제시하고 있는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동 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섬유교역의 GATT복귀과정 기간 이내에 기술향상, 신제품개발, 패션·디자인의 국제화 등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우리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번 UR섬유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수출촉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UR서비스협상의 진전상황과 대응방향

정부는 국제화 전략에 따른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계획이 국내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각종 규제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및 분야별 부속서와 상치되는 법규 및 제도를 정비·보완하여 개방유예기간 중에 국내경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서비스공급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용준
경제기획원 통상조정3과 사무관

전반적인 진전상황

서비스협상은 국제간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규범을 제정하여 점진적인 자유화를 촉진하고 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산업으로 옮겨지고 서비스교역의 규모가 점차 증대하게 됨에 따라('88년 : 전세계 교역규모의 16%인 5,600억불 수준), 동경라운드가 끝난 '80년 이후부터 서비스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본격화했다. '84년에서 '86년까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자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National Study)를 GATT에 제출하여 UR서비스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87년 2월부터 시작한 서비스협상은 처음 3년 동안은 주로 서비스교역의 정의·통계·기본원칙 등에 대한 이론적인 논쟁을 하며 협상요소들을 구체화시키는 가운데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을 해왔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100건 이상의 서면제안(written proposal)이 서비스협상그룹(GNS :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협상이 종반단계에 도달하면서 각 협상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볼 때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협상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은 해운·항공 및 기본통신분야에 큰 약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EC는 EC통합에 의해서 점차 협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수용할 수 없는 노동력의 이동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협상의 주요 내용 및 동향

서비스협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frame work) 제정, 둘째 분야별 부속서(Sectoral Annex)의

제정, 셋째 최초의 자유화 약속에 대한 협상이 그것이다.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제정

모든 서비스교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frame work)를 제정하는 데는 GATT의 관련조항들이 대부분 원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GATT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주의(transparency) 원칙이 서비스협정에도 규정되게 됨에 따라 각 서명국은 서비스교역에 대한 모든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GATT와는 달리 강제적인 의무규정이 아니고 각국이 양허협상을 통해서 자유화 약속을 한 분야에 대해서만 개방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는 상당히 신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현재 기본구조의 제정과 관련해서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ured Nations)을 기존 국제협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쌍무간협정을 맺어 놓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일률적인 적용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캐나다·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초석인 최혜국대우원칙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개별 서비스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협상은 금융·통신·항공·해운·육운·관광·건설 전문직업서비스·시청각서비스·노동력 이동 등 10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아래 사진은 한국의 업체가 건설한 바그다드~아부그레이브간 고속도로

한편 각국이 자국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과 정부조달에서의 우대문제는 상품교역과 달리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협상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다자간규칙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

개별 서비스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분야별 부속서(Sectoral Annex)의 제정을 위한 협상은 금융·통신·항공·해운·육운·관광·건설·전문직

업서비스·시청각(Audio / Visual) 서비스·노동력 이동 등 10개 분야로 나뉘어 90년 6월부터 90년 10월까지 각각 3~4회의 공식회의를 하는 이외에 수많은 비공식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협상참가국들은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이 필요한 분야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입장대립을 하고 있다.

금융과 통신분야의 부속서는 선진국간에는 합의를 보았지만 개도국이 노동력 이동에 대한 부속서와 연계를 시키며 반대를 하고 있고, 해운 및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토를 갖고 있는 미국과 섬나라인 일본은 부속서를 통하여 서비스협정의 거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반해 EC·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가 서비스협정으로부터의 의무 일탈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EC·호주·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부속서를 제정하여 문화적인 영향을 이유로 한 국가간의 차별대우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한편 건설·전문직업서비스 및 관광분야 등은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고 별도의 부속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다.

분야별 부속서를 둘러싸고 주요 협상참가국간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각국의 이해관계의 절충이라는 관점에서 개략적인 전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진국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금융과 통신분야의 부속서는 개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의되어 있는 내용대로 채택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대신 선진국은 개도국이 주장하는 노동력 이동에 대한 부속서의 제정을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노동력 이동에 대한 부속서에는 노동력의 입국허용의무 등 실체적인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양허협상의 지침 및 대상 등 절차적인 규정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해운·항공 등 운송분야와 시청각서비스분야는 브뤼셀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C가 정치적으로 절충을 하되 각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상의 의무를 부속서를 통하여 대부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정가입국은 주기적으로 부속서를 재검토하여 점차 기본구조의 의무조항들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할 것이다.

최초의 자유화 약속에 대한 협상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초래할 최초의 자유화약속 (Initial Commitment)에 대한 협상에 대해 당초 미국·EC등 선진국은 UR기간내에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와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 이외에 최초의 자유화 약속을 하여 서비스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각국의 서비스시장이 어느 정도는 자유화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개도국은 시간상의 제약을 이유로 금년내에는 보다 충실한 내용의 서비스협정을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혜국대우원칙과 해운분야 등을 둘러싸고 서비스협정의 제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에 스위스는 금년내 양허협상없이 자국의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계획(Offer List)을 서비스협상그룹(GNS)에 자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내년도에 있을 양허협상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협정에 가입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EC·캐나다·호주·북구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동조의사를 표명하고 11월 20일경을 전후로 자국의 자유화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유화 계획을 제시한 국가는 스위스밖에 없으며 그 주요 내용은 현재의 자유화 수준을 더이상 악화하지 않겠다는 동결조치와 일부 업종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내년 3월말까지 자유화 계획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간의 실질적인 양허협상은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고 10월 한달동안 양허협상의 결과를 서비스협정에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거쳐 일정수 이상의 국가가 가입을 신청한 날로부터 서비스협정이 발효할 예정으로 있다(92년 1월로 예상).

서비스협정의 발효는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일부 업종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하게 되고 아울러 서비스가 투입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여 국민복지를 증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서비스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서비스협정의 제정은 앞으로 국내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0여년 동안 상품교역의 관세율이 GATT에 의한 주기적인 양허협상에 의해서 선진국의 경우 5% 내외로 인하되었듯이 서비스협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향후 수십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고 내국민대우를 외국 서비스공급기업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우대정책의 시행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통신 및 금융분야의 부속서 제정은 정보와 자본의 자유화를 가속화시켜 국내경제가 상품분야에 이어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게 된다. 국내 서비스공급기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든 외국을 상대로 교역을 하든 항상 국제경쟁을 의식하고 서비스협정이라고 하는 다자간규범 하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경영을 해야 한다.

현재의 서비스협정은 보조금, 독점적 사업자의 지정, 정부조달 등에 대하여 강제적인 의무규정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정이 보완될 것이다. 이 경우 서비스 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정책수단의 행사는 현저하게 제약받게 되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위생 및 소비자보호 등 일반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생산과 소비의 근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과는 달리 국내에 외국기업이 설립되고 외국 노동인력이 상주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고용정책에까지 영향을 주고 나아가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문화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정부는 서비스협상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종합·조정하고 국내 대응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UR서비스협상 대책위원회(위원장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18개 주요업종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대책기구에는 연구기관 및 법률사무소의 전문가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업계의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요구와 인식에 관계없이 우리의 국민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대체로 개도국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해 왔다. 특히 우리와 경제구조와 여건이 현저하게 다른 인도·브라질 등 강경 개도국보다는 아세안·호주·캐나다 등의 온건 선·개도국과의 공동입장을 모색해왔다.

그간의 협상결과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추진방식이 Positive System (자유화할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자체는 매우 신축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고 개도국의 가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식·비공식회의 및 각국간 접촉에 있어서 남아있는 쟁점에 대하여 다자간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입장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은 일정한 과도기간 후에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협상이 종료되는 '92년 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내 서비스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국내 대응대책도 협상대책과 병행하여 수립·추진중에 있다. 각 부처가 내년 중에 있을 양허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자유화 계획과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구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관업종에 대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국제화 전략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국제화 전략에 따른 국내경쟁력 제고 방안과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각종 규제제도를 구체적

관광 · 건설 · 전문직서비스 분야 등은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고
별도의 부속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났다.

으로 검토하여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및 분야별 부속서와 상치되는 법규 및 제도를 정비 · 보완하여 개방유예기간 중에 국내경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서비스공급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민간업계도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분야는 구조조정노력을 하는 한편, 신규투자의 증대, 경영규모의 확대 및 새로운 경영기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외개방적 경제운용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다자간 서비스협정하에서의 점진적인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서비스협정의 발효는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일부 업종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하게 되고 아울러 서비스가 투입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여 국민복지를 증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선 · 개도국의 서비스시장이 동시에 개방되어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면성과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설 · 해운 · 항공 · 소프트웨어 · 엔지니어링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수출의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결국 언젠가는 닥쳐올 불가피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단시일내에 국내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국제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UR 금융서비스협상과 금융산업개방

금융산업 개방에 대한 요구는 우리 금융산업의 능력에 극히 부담스럽지만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 체제의 불가피성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는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의 개방을 통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결국 국내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진영욱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시장개방의 필요성

1960년대초 우리나라가 성장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우리 금융산업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와 그간의 왜곡되었던 경제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부문에서도 자율화와 국제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으나 그 정도는 아직 충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라 하겠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거래규모의 양적확대와 아울러 금융혁신이라 불리우는 급격한 질적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즉 각국의 금융규제 완화와 대외거래 자유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이 상호연계되는 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증권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EC 등 선진국은 자국의 비교우위산업인 금융 및 서비스의 대외진출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을 통하여 금융시장 개방압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92년에 예정된 EC통합도 우리의 금융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같은 다자간협상을 주도함과 아울러 미·일간의 금융정책회의에 이어 한·미 금융정책회의(Financial Policy Talk)와 같은 쌍무회담을 통하여 우리 금융시장에의 진출확대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내용과 이로 인한 우리의 금융산업개방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UR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협정구조 및 전망

최근들어 세계 각국의 서비스산업과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증대되고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상품교역에서 서비스교

한·미통신회담 및 UR통신협상

UR협상이 예정대로 연내에 타결되면 곧이어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양허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며 또한 미국과의 쌍무회담도 재개될 것 같다. 따라서 협상대책으로는 개방원칙에는 능동적 ·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지만, 통신시장개방은 점진적 ·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영보
체신부 통신개방연구단 과장

향후 세계무역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금년말의 종료일을 눈앞에 두고 협상 참가국간에 활발한 조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현 추세대로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경제 모든 분야에서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문제는 농산물 외에도 통신 · 금융 · 지적소유권 · 섬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지만, 그중에서도 통신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술문제로 인식되어 개인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되기 쉬우나,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아 통신시장 개방은 앞으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로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은 1989년 2월 미국종합무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미국과 5차례에 걸친 통신회담을 가진 끝에 그중 통신서비스분야는 UR협상에서 타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UR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은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한 · 미간의 현안을 UR다자간협상과 연계하여 타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한 · 미통신회담과 UR통신협상의 경과, 내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 · 미통신회담

미국은 1989년 2월 미국종합무역법의 전기통신조항을 내세워 한국을 EC와 함께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여 국내통신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와 우리는 지난 1년간 미국과 5차례에 걸친 통신회담을 가진 끝에 PFC 지정을 1991년 2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는 당시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47억불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었으며, 통신기기 분야에서만도 1년에 4억 5천만불이나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점과 우리의 통신서비스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시장자유화의 정도가 뒤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미국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미국기업은 우리의 통신서비스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현실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구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먼저 통신서비스시장에 있어서 일반 전신·전화를 제외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1990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자유화하여 무선전화·소형위성통신·국제간통신·컴퓨터통신 등 모든 서비스시장에 미국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통신기기시장에 있어서는 미국기업이 한국내에서 통신기기를 판매할 때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의 표준제정절차를 투명하게(transparent) 하여 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것과 통신기기의 인증기준을 미국의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기기시험기관 및 기기제조업체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통신기기 공공구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통신사업자가 교환기·케이블 등 각종 통신기기를 구매할 때 미국기업도 한국기업과 동등하게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미국이 요구하는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사항은 그 내용이나 요구시기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시장여건이나,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우리는 대미교역량, 대미무역흑자 등 현실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미종합무역법에 의한 협상이 아니라 한·미간의 통신분야의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회담으로서 한·미통신회담을 미국과 가지기로 하여 1989년 9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하였다.

5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의견접근을 이룬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시장 자유화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다자간협상에서 논의하되, 국내에 이미 자유화되어 있는 정보은행(DB)과 정보처리(DP) 서비스에 대해서만은 1990년 7월부터 미국기업도 참여시키기로 하였으며, 국제회선 이용은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간에만 허용하였던 것을 1991년 7월부터 특정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선이용을 보다 완화한 것 등이다.

기기시장 자유화에 있어서 기기표준제정시에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또한 형식승인 및 형식검정시 정부가 지정한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통신기기 공공구매분야는 대상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어떤 절차에 의해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주요 협의대상이었는데 이에 대해 양국은 대상기관을 정부와 통신공사에 한정하고, 조달절차는 통신기기 중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GATT 정부조달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교환기·케이블 등 통신망장비는 별도의 조달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고, 시행시기는 통신기기 일반물품의 경우는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동 협정발효시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동 절차를 준용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통신망장비는 199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담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보은행(DB)·정보처리(DP)는 이미 1985년부터 국내에 자유화되어 현재 150여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보은행(DB)의 경우 현재 국내계 DB가 14%, 해외계 DB가 86%정도로 DB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개방되더라도 DACOM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던 기존 해외 DB서비스 부분이 국내에 일부 이전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DB서비스 이용규모에서 해외계 DB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처리(DP) 부분은 국내기업 대부분이 기업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처리 및 협조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전산실을 설치·처리하고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며, 국내의 외국기관 DP서비스 시장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시장 점유율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기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통신기기의 품질수준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방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기기분야에서 1982년부터 단말기 자유화, 통신기기의 자체 개발 등 우리의 독자적인 시장자유화 및 기술개발을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공공구매 분야의 개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조달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호혜주의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협소한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침식보다는 방대한 외국 공공구매 시장에의 참여로 개방의 이득이 오히려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통신협상

1986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의 GATT 각료선언에 의해 출범하게 된 UR은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하에 상품의 교역규범확립을 위한 상품협상그룹(GNG :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과 서비스교역규범 제정을 위한 서비스협상그룹(GNS :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으로 분리되어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서비스무역협정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과 부분별 주석서 또는 부속서(Sectoral Annotation /

Annex) 의 두 부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기본협정은 모든 서비스 교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이고, 분야별 주석서 /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규칙과 예외조항 등이 규정되는 협정이다.

이러한 서비스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통신분야는 매우 중요한 협상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는 통신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비스협상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통신에 관련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통신은 하나의 서비스 분야로서 다른 서비스 분야와 함께 기본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또한 통신은 금융 등 다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본협정의 부록 형태로 통신부속서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 통신부속서 제정을 위한 통신전문가 회의가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여기에서 한국 · 미국 · EC · 일본 · 개도국이 통신부속서를 제안하여 논의해 왔으나 각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하여 제4차 전문가회의(10월 15일~17일)에서는 의장이 직권으로 그간의 토의사항을 종합한 의장초안을 작성, 서비스협상그룹에 제출하였으며, 이 통신부속서 의장초안은 각국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큰 변경없이 채택될 전망이다.

의장초안에 의하면 통신부속서에서는 '사업' 그 자체로서의 통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통신회선 또는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사업에서 금융 온라인망을 구성하기 위하여 통신회선을 빌리는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통신부속서에서 규정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의 개방범위나 개방시기에 대해서는 통신부속서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아니며 이는 기본협정과 이에 따른 양허협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또한 통신부속서는 양허협상에 의해서 시장접근이 주어진 분야(개방된 분야)에 대해서만 통신회선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방이 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서비스 협상그룹에 제출된 통신부속서 의장초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부속서에 의하여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 또는 통신서비스란 전신 · 전화 · 텔렉스 · 데이타 단순전송서비스와 같은 기본통신서비스 또는 그 시설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본통신서비스는 사업으로서의 개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용'만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의 사업자에게 현재 서비스 가능한 기본통신시설 및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이용요금은 원가를 지향(cost-oriented)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비싸게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셋째, 기본통신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요금, 단말기부착조건, 표준제정절차, 등록이나 허가요건 등)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넷째, 공중통신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기술적 통일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회선재판매나 단말기부착 등에 대한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섯째, 국내 및 국제간에 자회사 및 업무상 관련회사(affiliate)를 포함한 기업내 통신을 위한 기본통신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 허용, 국제기구와 협약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부속서 의장초안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별다른 내용변경 없이 11월중에 기본협정과 함께 서비스협상그룹(GNS)과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심의를 거쳐, 12월초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GATT 각료회담에서 최종 확정되면 1992년 1월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전자교환기 등
경쟁력 있는 통신기기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중용량 전전자교환기 TDX-IB.

대응방안

UR협상이 예정대로 연내에 타결되면 곧이어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양허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며 또한 미국과의 쌍무회담도 재개될 것 같다.

따라서 협상대책으로는 개방원칙에는 능동적 ·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지만, 통신시장개방은 점진적 ·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시장의 개방범위도 전신 · 전화 등 기본통신은 개방되지 않으며 컴퓨터와 연결되는 새로운 통신 즉 정보통신 또는 부가가치통신망을 국내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UR협상이나 한 · 미통신회담의 결과로 국내시장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국내통신산업육성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로, 부가통신분야의 개방은 불가피하므로 체신부에서는 통신사업구조 조정을 이미 실시하여 국내 부가가치 통신사업의 다수 경쟁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기본통신사업에도 복점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부가통신서비스의 수요촉진을 위하여 통신회선에 대한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부가통신 이용요금의 경감을 촉진함과 아울러 199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컴퓨터 단말기 1천만대 보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내부가통신사업의 육성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셋째,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하여 통신공사에 소프트웨어 연구소와 유통센타를 1991년 중에 설립, 1995년까지 매년 1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넷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전전자교환기인 TDX의 수출 등 경쟁력 있는 통신기기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나라경제

UR 지적소유권협상과 대응방향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개방의 의미는 이 권리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권리(예:특허권)와 문예적 창작에 대한 권리(예:저작권)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현대사회가 더욱 정보화 · 서비스화 · 첨단산업화 함에 따라 관련분야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손찬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명 · 창작 · 고안 등과 같은 인간의 두뇌활동의 결과를 독점적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이들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상이다.

지적소유권은 서비스 · 무역관련투자와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무역협상에 공식의제로 채택된 소위 말하는 신분야 중의 하나이다. 금번 우루과이라운드는 세계의 교역시장개방을 확대하고, GATT 규율을 더욱 강화시키며, 신분야에 새로이 교역질서를 도입하려는 세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가 과거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협상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상품은 물론 상품 이외의 분야에까지 시장개방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개방의 의미는 이 권리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는 외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게 되므로 외국 권리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보호시장이 더욱 확대됨을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UR 지적소유권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보호하게 되면 그간 이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외국의 물질특허권자의 권리가 그 국가에서 새로이 보호대상이 되는 까닭에 보호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다.

지적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권리(예, 특허권)와 문예적 창작에 대한 권리(예, 저작권)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현대사회가 더욱 정보화 · 서비스화 · 첨단산업화 함에 따라 관련분야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신지적소유권 분야의 포함은 향후 이 분야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많은 국가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표1 참조)

그러나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R 지적소유권협상에 임하는 기본적 시각에 있어 처음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은 매우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 · EC · 일본 등은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보다는 그들이 이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주공급국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반면 개도국들은 자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으로 간주하여 방어 일변도의 협상태도를 취하고 있다. (표2 참조)

이렇듯 출발점에서부터 크게 상반된 입장을 보인 지적소유권협상은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지적소유권의 일방적인 보호강화는 선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시의 기술대가(royalty)를 높임은 물론 기술이전 자체도 그전에 비하여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발명과 창작 등에 따른 기술개발만이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동력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동 협상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는 사실상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중심으로 많은 관련협약들(예: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워싱턴조약 등)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문제가 이번 협상의 정식의제로 채택된 것은 기존의 WIPO와 관련협약들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속지주의 원칙－즉, 지적소유권의 보호는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 국제적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의 채택은 미국의

〈표 1〉 지적소유권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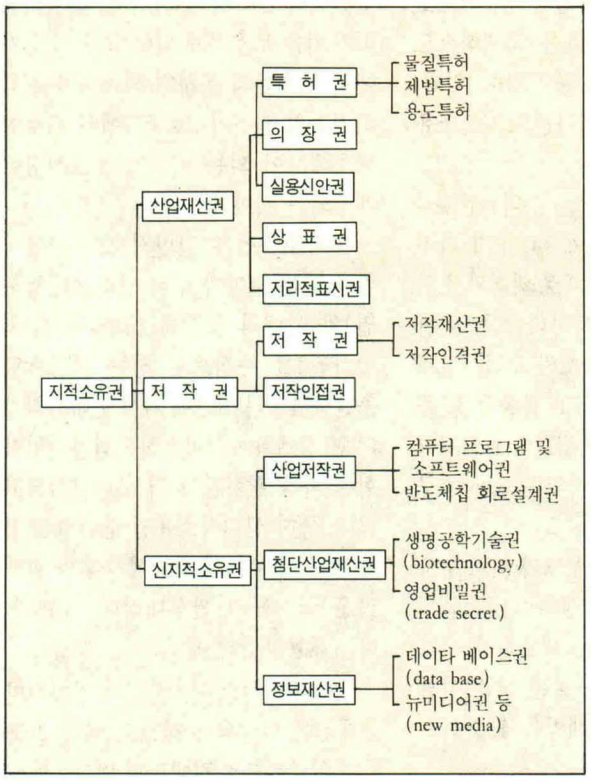

〈표 2〉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진국 · 개도국의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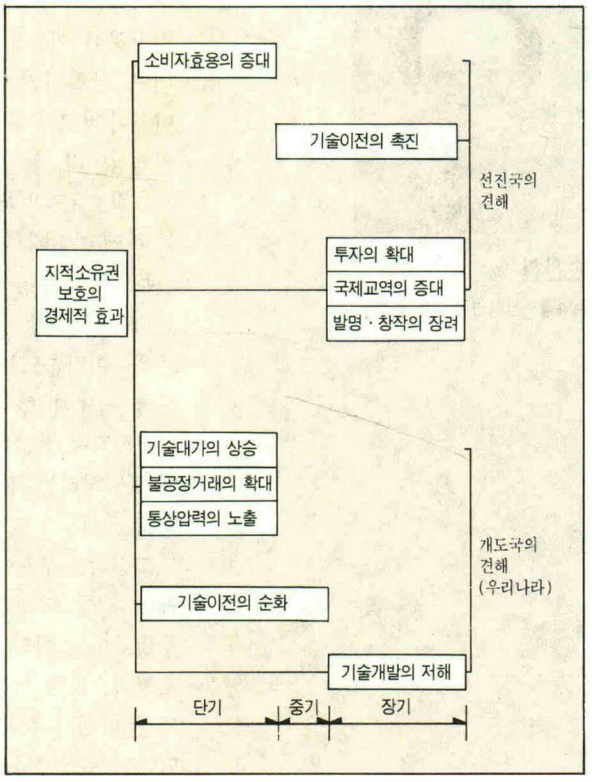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는
선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시의
기술대가를 높임은 물론
기술이전 자체도 그전보다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외국도서와 번역물.

강력한 주장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지적소유권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 관행으로 규정하여 GATT 다자간협상 의제로 추진함은 물론 쌍무협상에서도 핵심과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농산물·서비스와 함께 3대 통상과제를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단적인 예로 1988년 미국의 기술교역지수(=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100)는 524.0으로 일본, 서독의 32.6, 46.0은 물론 1987년의 영국, 프랑스의 92.0 및 56.2를 월등히 상회하고 있어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비교우위는 단연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은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을 알리는 푼타델 에스테 각료선언문에 따라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협상이라는 장황한 제목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는 개도국들이 포괄적인 지적소유권 협상을 극력 반대함에 따른 것이다. 즉, 개도국들은 GATT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의제는 지적소유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위조상품의 교역문제와 지적소유권의 무역에 관련된 문제점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의 출범을 위해 정하여진 명칭이다.

TRIPs협상은 1989년 4월의 고위실무급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동 협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까지는 활동이 거의 부진하였으나 이후 협상이 가속화되어 협상이 진행될수록 선진국의 주장대로 더욱 강도높은 보호강화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보호강화 일변도의 협상진행 상황은 협상의제의 폭과 지적소유권의 보호수준의 논의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TRIPs협상의 의제는 '위조상품교역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무역관련 지적소유권→지적소유권 일반→신지적소유권의 포함' 등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보호수준도 기존의 관련협약들을 각 해당분야의 최소한 보호수준으로 하여 보호를 더욱 강화시키는 속칭 '국제협약 plus'의 접근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의 일방적인 공세에 대해 개도국들은 협상력과 전문성에 있어 월등히 뒤지고 있어 단지 반발만을 할 뿐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TRIPs협상은 ① 지적소유권의 보호범위와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보호기준) ② 이의 국제적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각국의 관련 국내법과 통관절차 등과 같은 국경조치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시행절차) ③ 권리의 분쟁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하며 분쟁발생시에 대비하여 어떤 해결방식을 마련할 것인가?(분쟁해결절차) 등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의 생산과 교역의 방지를 위한 규정의 제정과 권리침해시의 제재의 필요한 제재수단의 마련에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표3 참조)

이상의 쟁점들 중에서도 특히 보호기준이 중요한 것으로 선진국들은 보호범위에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 설계권, 생명공학 및 미생물공학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에 관련된 권리는 물론 영업비밀(trade secret)과 같은 정보재산권도 포함하는 이른바 신지적소유권의

대폭적인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지적소유권 보호수준의 전반적인 상향조정을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일명 '국제협약 plus'의 사항으로 ① 저작물에 대하여 대여권(rental right)을 인정하고 ② 반도체집적회로 설계권은 집적회로 그 자체와 집적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칩(chip)은 물론 제품에까지 확대하여 보호하고 ③ 유전공학적 발명은 물론 외과수술기술과 같은 특수한 의학적 처치방법도 특허권에 포함시키며 ④ 제법특허는 제조된 상품에까지 인정하여 보호하고 ⑤ 기술적 비밀(Know-How)을 포괄하여 영업비밀권을 인정하며 ⑥ 특허·저작 등의 권리를 TRIPs협상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표 3〉 주요 의제별 쟁점 내용 및 주요 협상국의 입장

주요의제	쟁점내용 및 주요협상국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
기본원칙	-선진국 : GATT의 일반원칙을 대부분 적용 -개도국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공공이익 우선 등을 원칙화	-GATT 일반원칙외에 권리와 의무의 균형원칙 필요 -협정제정 당시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은 MFN 예외로 규정
보호기준	-미국·일본 등 주요선진국 : 지적소유권 전반으로서의 보호대상 확대, 장기간의 보호, 강제실시권의 제한 등 엄격한 보호규범 설정 -개도국 : 강제실시권의 폭넓은 인정등 지적소유권의 보호보다는 이용측면 강조	-GATT내에 보호기준을 설정하되 권리보호와 이용간의 균형을 도모 -기술이전차원에서 강제실시권의 허용 필요
시행절차	-미국·일본 등 주요선진국 :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경 및 국내 시행절차에 관한 강력한 기준설정 -개도국 : 위조상품교역 방지를 위한 국경절차에 한하여 논의하고 국내 시행절차는 각국 국내법에 위임	-각국의 입법체계가 상이하므로 시행절차에 대한 일반원칙만 규정하고 세부국내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
분쟁해결절차	-선진국 : GATT분쟁해결 절차적용 • 분쟁해결 결과 불이행시 보복조치(교차보복 포함)허용 -개도국 : WIPO내에서 토론중인 분쟁해결 절차에 의거함.	-GATT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GATT내에서의 다자간 해결방안 기대 -전문가 활용, WIPO와의 협력 등 분야의 특수성 고려 필요
경과규정	-미국·EC·스위스 :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경과기간 적용 (Individual Country Schedule) -헝가리 : 단일시한 적용(늦어도 2000년까지 보호실시) -개도국 : 개도국에 대한 상이한 기준, 기간 등 적용	-단일시한 적용(헝가리안) 기대 ·국별 시한적용시 우리나라로서는 장기경과시간 확보 가능성 희박으로 우리나라에 무의미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선진국 : 협상결과를 GATT에서 담당 -개도국 : 협상결과를 WIPO에서 담당	-GATT에서 담당하되 WIPO 등 기존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마련
위조상품교역	-선진국 : 무역관련 지적소유권과 통합하여 취급 -개도국 : 지적소유권과는 별도의 다자협정 추진	-선진국 입장 수용

한편 시행절차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사법체계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우선 명료성(지적소유권 관련보호법의 민사·형사사건의 소송 및 제재방법 등)의 확보와 실질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를 최대한으로 제약하려는데 촛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경조치의 포괄범위에 대해서도 최근 큰 쟁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권리침해 상품의 통관시 이의 압류가능성 여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통관유예는 세관원이 인지할 수 있는 상표 및 저작권 침해물만을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특허를 포함한 모든 지적소유권 침해상품으로 그 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유예의 대상범위에 대한 논의는 TRIPs협상의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분쟁해결절차는 선진국들의 GATT 규정 원용주장이 그간 개도국이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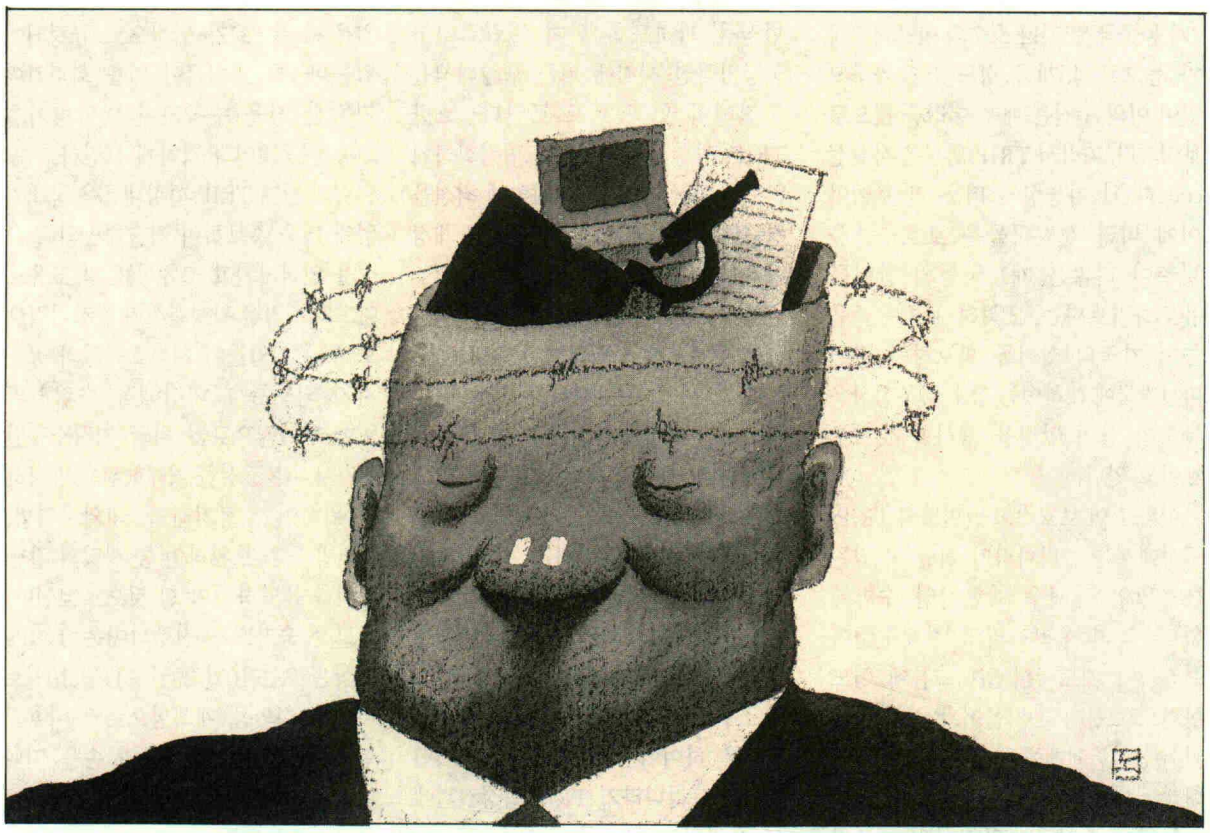

하던 WIPO에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GATT분쟁해결절차 채택이 거의 확실한 바 교차보복－즉,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상품으로 보복함－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TRIPs협상내용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지적소유권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조차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의 관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호기준과 국경조치 등을 가지고 있는 지적소유권협상은 이의 타결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RIPs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정의 타결방식은 ① GATT협정내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설정하여 모든 체약국에 적용토록 하고 GATT협정문에는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보호기준 · 시행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서를 첨부하는 GATT 중심의 보호방안과, ② GATT체제내 별도의 협정(code)을 제정하여 동경라운드의 MTN code와 같이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만이 서명하는 형태의 GATT 중심 보호방안으로 압축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 EC · 일본 · 스위스 · 호주 · 개도국연합 등 협정문 초안을 제시한 모든 국가가 사실상 상기의 ①방식의 'GATT협정문 개정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문 개정방식은 총99개 협상참가국의 3분의 2인 66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보호수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게 되면 이와 같은 타결방식은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이 안에 찬성할 수 있는 국가로서는 OECD 24개국, ASEAN 및 ANICs 9개국, 멕시코 · 알젠틴 등의 3~4개 남미국, 헝가리 · 유고 등 3~

4개 동구국 및 기타 소수의 아프리카국가 등으로 45개국 정도에 불과하고 있어 이의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TRIPs협상은 사실상 code화 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보호수준을 낮추어 더많은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수준을 높여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비서명국에 대하여는 향후 쌍무협상을 통하여 참여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보호강화 일변도의 TRIPs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양대그룹에 어느 한편으로 분명히 기울어져 있지 않고 있어 선진국에게는 실리추구의 최상의 대상국가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주어질지도 모를 특혜조항(예: 경과규정)의 혜택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TRIPs협상이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특히 개도국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함께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예: 강제실시권의 폭넓은 허용)하는 균형적인 접근을 견지하여 선진국들의 지나치게 엄격한 보호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도국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하는 중재자로서의 기본입장을 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TRIPs협상기간 중에는 가능한 한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쌍무협상을 피하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 따른 협상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RIPs 협상의 결과가 별도협정화하지 않도록 미국, EC의 진의파악에 최선을 경주하는 한편 GATT일반협정문 개정방식이 가능하도록 ASEAN, ANICs, 남미개도국들과 공동이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1986년의 한·미간 쌍무협상결과로 이 분야에 있어 대미 특혜조치가 발효중에 있으므로 이 특혜조치가 타국으로 자동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TRIPs협정의 기본원칙에 내국민대우만을 채택하고 MFN(최혜국대우원칙)을 배제하거나, ② 동 조치가 MFN의 조부조항(grandfathering)으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나라가 TRIPs협상결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외시에 따른 쌍무적 통상압력을 배제토록 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TRIPs협상이 종반부에 접어들었음을 감안하여 UR의 타협상의제(예: 농산물·서비스 등)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의제간 맞바꾸기(trade-off) 전략의 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분야의 베른협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TRIPs협상논의에 따라 동 협약에의 가입이 필수적인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어 가입방법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동협약은 소급보호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최근 미국이 이를 회피하여 가입한 점을 주목하여 미국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인다.

이와 함께 TRIPs협상내용을 국내기업에 더욱 홍보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고유상표 및 고유브랜드의 개발을 활성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적소유권의 공급자가 되도록 대내정책을 수립하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외국 지적소유권 권리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특허법 등을 보완하여 동 시장의 경쟁강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TRIPs협상은 오는 10월 29일~11월 10일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이후의 협의사항들은 전문가들의 손을 떠나 더 높은 차원에서의 절충을 모색하게 된다.

지적소유권협상은 서비스 또는 농산물협상이 일반협정구조, 분야별 부속서, 양허협상 등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진국의 공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가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분야는 협정이 이루어지면 곧장 국내법에 법제화하여 시행해야 하는 까닭에 매우 부담스러운 협상이다. 바로 이점이 우리나라의 TRIPs협상 참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 점이다.

회복추세 보인 90년 경제

김병일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

위기상황으로까지 인식되었던 89년 경제

우리 경제는 86년부터 88년까지 '저유가 · 저국제금리 · 저달러가치'의 소위 3저현상이라는 유리한 대외여건에 힘입어 연 12%를 넘는 고도성장과 대규모 국제수지흑자 및 물가안정 등 세가지 거시경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신기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89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 구조조정 지연과 단기적 경기순환 문제가 중첩되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즉 89년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 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12.8%)의 절반 수준인 6.7%로 급속히 둔화되었고, 그나마 성장의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어야 할 제조업부문은 86~88년 평균 성장률 16.8%보다 크게 떨어진 3.7%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은 88년에 비해 2.8% 증가한 624억불을 기록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오히려 5.2% 감소하였고, 수입은 615억불로서 88년에 비해 18.6%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88년(142억불)보다 크게 줄어든 51억불 수준에 그쳐 국제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였다.

한편 물가는 비교적 안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주택 등 부동산가격은 크게 상승하여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였다.

경제활력 감퇴의 원인

작년의 수출감소와 제조업의 활력상실은 87년부터 89년까지 지속된 극심한 노사분규에 따른 급속한 임금상승과 환율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1차적 요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86~88년의 호황과 국제수지 흑자 확대가 우리 경제의 실력에 의한 것으로 과신하여, 기술개발 · 신제품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미흡하였던 것도 89년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국으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도 경제불안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었다.

결국 노사불안 · 정치불안과 정부의 위기관리상의 문제가 복합되어 기업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 제조업투자를 기피하였고, 부동산투기 등으로 자금의 흐름마저 왜곡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감퇴되었다.

경제활력을 회복한 90년 경제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은 개선추세

작년에 이어 금년초에도 제조업투자와 수출부진,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4.4 경제 종합대책', '4.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 '4.20 물가안정대책' 및 '5.8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 등을 수립 ·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수년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부동산투기가 일단 진정되었고 설비투자와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모습이 개선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8월초에 예상치 않은 페만사태의 발발로 경제운용 여건이 어렵게 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구축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9.9% 기록

금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은 높은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증가에 힘입어 9.9%를 기록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즉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19.9%의 증가를 보였고, 수출(물량기준)도 작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또한 제조업성장률도 작년의 3.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8.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년들어 건설투자는 활발한 주택건설 등에 힘입어 과열현상마저 나타냄으로써 심각한 인력난과 건설자재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반기에는 소비 · 투자 등 내수둔화로 성장률이 8.5%대로 둔화될 것이 예상되어 연간 성장률은 9%로 수준으로 전망된다.

(증가율, %)

	89.상	89.연간	90.상
GNP	6.8	6.7	9.9
(제조업)	(3.7)	(3.7)	(8.1)
민간소비	10.1	9.8	11.1
총고정자본형성	12.3	16.2	27.3
(건설투자)	(13.4)	(19.8)	(33.9)
(설비투자)	(11.1)	(12.3)	(19.9)
상품수출	△3.2	△5.2	2.7

금년들어 지금까지의 경기는 GNP성장 · 생산 · 투자 등 각종 실물경제지표와 경기동행지수 등을 종합할 때 비교적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나 향후의 경기는 페만사태의 지속과 이로 인한 세계경기둔화 등 불투명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도 경상수지는 17억불의 적자예상

연초에 부진하였던 수출은 2 /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잠정 집계된 10월까지의 수출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2.9% 증가한 약 520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은 8월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9월에는 유가상승으로 다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10월까지의 수입(잠정집계)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558억불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상반기 중 약 16억불의 적자를 보였으나 7월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9월까지의 적자는 6.5억불로 줄어들었다. 당초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던 금년도 경상수지는 페만사태로 인한 석유수입 증가와 수출차질 등에 따라 17억불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총통화증가율에도 기업 자금 사정은 악화

금년들어 총통화(M2)증가율은 예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대비 총통화증가율이 상반기에 22.9%, 3 / 4분기에도 20% 수준을 나타내었다. 총통화증가율의 추세는 2월의 24.4%에서 10월에는 20.6%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를 볼 때 상반기의 높은 증가율의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21%수준에 달하여 목표수준인 15~19% 보다는 상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총통화증가율이 당초목표보다 상회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에 풀려난 증시부양자금(2조 8,000억원)이 금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상반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데다가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6.5%)보다 높아진 8~9%로 전망됨에 따라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통화수요가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이와 같이 풍부한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은행 · 신탁 · 단자 · 보험 등 금융기관의 대출과 기업공개 · 유상증자 ·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들었고 은행대출도 주택자금 · 농업자금 등 정책금융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자금사정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공급규모, 억원)

	89.1~9	90.1~9	증감률(%)
금융기관 총대출액	221,328	159,810	△27.8
직접금융 조 달 액	135,076	101,650	△25.1
계	357,076	261,460	△26.8

시중자금사정의 경색을 반영하여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연초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회사채발행수익률 자유화조치(8월 23일) 이후에는 17%를 넘어서서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오름세는 다소 진정

상반기 중 빠른 속도로 상승하던 물가는 6월 이후 다소 진정세를 나타냈으나 9월에는 폭우피해, 납사가격인상, 추석성수기 등의 요인이 겹쳐 도 · 소매물가 공히 크게 상승하였으며, 10월에는 소비자물가는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도매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물가상승 요인별로 보면 1~10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은 농 · 축산물,

	90.1 / 4	2 / 4	3 / 4	7월	8월	9월	10월
수출증가율(통관, %)	△1.6	4.4	6.0	5.0	1.1	11.8	△0.3
수입증가율(통관, %)	12.7	10.0	8.3	5.6	△2.4	23.5	14.8
경상수지(억불)	△10.0	△5.7	9.2	4.9	2.6	1.7	–

(억원, %)

	89.1 / 4	2 / 4	3 / 4	90.1 / 4	2 / 4	3 / 4	10월
총통화공급	△60	20,663	36,197	20,967	13,156	27,561	11,458
평잔증가율	19.1	18.9	17.7	23.5	22.4	20.0	20.6

(비전년말, 상승률, %)

	90.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도매물가	0.9	3.3	3.2	4.1	5.5	6.8
소비자물가	3.2	7.4	7.8	8.2	9.0	9.2

(전년 동기비, 증가율, %)

	90. 1/4	2/4	3/4	90. 1~9(누계)
산업생산	7.9(1.0)	9.2(4.6)	9.7(3.9)	9.0(3.1)
생산자 출하	9.2(3.0)	10.5(5.7)	13.3(4.2)	11.1(4.2)
건축허가면적	48.4(27.5)	25.5(38.2)	41.5(33.3)	36.6(36.1)
국내기계수주	39.5(28.4)	65.6(32.9)	14.0(52.1)	38.6(37.6)
제조업가동률	80.7(77.3)	78.5(76.2)	80.1(78.9)	79.7(77.5)

※ ( )안은 89년 수치임.

(비전월, 상승률, %)

	90.1	2	3	4	5	6	7	8	9
선행지수	0.9	1.3	0.9	△0.1	△0.2	△0.1	△0.6	△0.7	1.6
동행지수	0.4	1.0	1.0	0.8	△0.7	△0.2	0.0	1.1	1.1
동행지수순환변동치	△0.3	0.4	0.4	0.1	△1.2	△0.8	△0.6	0.4	0.5

전·월세, 공공요금 등이 주도하였고, 도매물가상승은 농·축산물과 공산품이 주도하였다.

한편 연말 소비자물가는 연내 유가인상조치가 없고 농산물 작황의 악화가 없다면 과거의 예로 볼 때 한 자리수 이내의 물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활동은 계속 활발한 모습

금년 들어 실물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출하·투자 등 제반지표는 작년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1~9월 기간 중 산업생산 및 생산자출하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9.0% 및 11.0%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의 3.1%, 4.2%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도 79.7%로서 작년 동기의 77.5%보다 높아졌다.

제조업 고용이 4개월째 증가

활발한 산업활동에 힘입어 실업률은 4월 이후 2.0%~2.3%의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9년 11월 이래 감소추세에 있던 제조업 고용이 지난 6월부터는 4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고용구조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년 들어 1~10월 기간 중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09건으로 작년 동기의 1,532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노사간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9.0%로서 작년 동기의 18.1%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현재의 경기상황은 비교적 좋으나 향후 경기는 낙관을 불허

현재의 경기상태를 월별로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5~6월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던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5월부터 3개월간 감소세로 돌아선 후 다시 8월부터 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또한 2~4개월 후의 경기상황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는 1/4분기에 호조세를 보였으나 4월 이후 활발한 실물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 및 통화관련 지표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서는 활발한 건축활동과 수출증가에 힘입어 증가로 반전하였다.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거나 향후의 경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경기종합지수(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 등)는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경기종합지수는 그 구성지표의 한계 및 지수작성 과정상의 통계적 가공처리 등의 요인때문에 100% 정확한 경기진단이나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의 판단이나 예측을 경기종합지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나 장래의 경기는 경기종합지수와 함께 여타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또는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의 경기는 GNP 성장·생산·투자 등 각종 실물경제지표와 경기동행지수 등을 종합할 때 비교적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나 향후의 경기는 폐만사태의 지속과 이로 인한 세계경기둔화 등 불투명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최인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페르시아만사태와 국제유가 전망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는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서방측에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나, 미국은 계속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사태의 결말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만은 않다. 후세인대통령은 그동안의 초강경 자세에서 크게 후퇴하여 협상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라크는 인질석방을 내세워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소련과 프랑스만이라도 불침을 보장해 준다면 인질전원을 석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누그러진 자세는 서방측의 군사 · 경제적 봉쇄조치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후세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음을 시사해 준다. 식량소비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외화획득의 거의 대부분을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이라크는 경제봉쇄하에서 식량 및 휘발유의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국민생활의 어려움과 지난 7월의 종신 대통령제 채택에 대한 정치적 반발 등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후세인으로서는 페르시아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현재와 같은 대치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아직까지는 단결이 잘되어 있는 연합봉쇄조치에 균열이 생기고 그 강도와 응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로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터어키 · 이집트 · 요르단 · 예멘 그리고 이란 등이 비밀리에 이라크와 경제교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의 도발에 대한 전세계의 분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라앉음으로써 미국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될 수 있고, 미국내의 여론도 월 10억달러를 상회하는 군비부담과 사태 자체에 대한 관심저하로 점차 부시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조만간 전쟁이냐 협상이냐의 결단을 내려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내 여론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미상원도 조급한 군사행동을 견제하고 있으며 무력충돌이 가져오게 될 인질의 안전위협 · 전사자 발생 · 유가폭등 및 전쟁확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쟁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사태의 부분해결 혹은 조건부 해결은 불가함을 주장하고 추가병력의 파병 등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페르시아만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석유공급의 감소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9월 이후에는 원유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460만배럴로서 전세계 원유공급의 7.4%에(89년 기준) 해당한다. 그러나 사우디, 베네주엘라, 아랍에미레이트연방 등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증산규모가 하루 300~350만 배럴에 달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증산도 가능한 상태이고, OECD 국가들의 원유비축 물량이 약 35억 배럴 정도 됨으로써 원유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유가는 금년말을 전후하여 석유수급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배럴당 25~3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사태가 지난 74년이나 79년의 오일쇼크 때와 같이 유가에 큰 영향을 못미치는 이유는 이제는 OPEC의 산유량이 전세계 산유량의 37%에 불과하며, OPEC 회원국들 사이의 단결력도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유가가 연말까지 30달러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원유수요가 하루 200만배럴 정도 증가하는 겨울철 성수기의 수급애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500만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석유의 방출을 이미 결정하였으며, 또한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회원국들도 협조적 방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경우, 지난 8월 이후 유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재고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진정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수개월내에 현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지난 7월 OPEC 총회에서 결정된 배럴당 21달러 수준에서 국제원유가가 재형성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소련경제개혁의 전망

고르바쵸프가 지난 1985년 집권한 이후 계속 추진해온 소련의 경제개혁은 부분적 개혁에 그쳤고, 1989년말부터 본격화된 개혁논의는 그동안 계속 개혁안에 수정이 가해지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에는 대통령위원회의 샤탈린 위원을 대표로 하는 13인의 개혁안 작성팀이 구성되어서 일명 '샤탈린의 500일 경제개혁안'이라 불리우는 대단히 급진적인 경제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리슈코프를 비롯한 중앙관료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고르바쵸프는 샤탈린안과 정부안을 절충하여 수정한 '최종경제개혁안'을 소련연방최고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최종개혁안은 지난 10월 19일 최고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인 옐친 등 급진파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경제개혁안'은 사적소유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개혁의 구체적 일정 및 실행목표달성 수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소련연방과 공화국

고르바쵸프의 '최종경제개혁안'이 최고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옐친 등 급진파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간의 경제권 분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련경제의 앞날을 대강 두 가지 길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소련연방과 공화국들이 각 공화국의 경제주권을 인정하고 경제개혁 단일안에 합의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나 그렇게 되면 몇몇 공화국들이 독립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새로운 연방체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연방정부가 각 공화국들과 합의를 못 이룬채 경제개혁을 연방주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공화국들의 반발 또는 비협조로 경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울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악화와 연방체제 붕괴로 인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군부나 보수세력의 쿠테타나 혁명을 통한 중앙집권적 독재체제의 재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겠으나, '샤탈린안' 대신 '최종경제개혁안'이 채택된 현상황에서는 소련의 장래가 후자의 경우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 경제개혁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독일통일과 EC통합

통독이 이루어짐으로써 독일경제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밝은 전망이다. 특히 구서독지역은 구동독지역에서의 소비수요와 설비투자의 증대로 약 1% 정도의 추가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물가도 서독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에 힘입어 계속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동독지역은 단기적으로 실업률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나 통독정부와 서방측의 적극적인 투자로 1992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에 대한 투자 급증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국제금리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통독이 EC의 1992년 통합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EC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구동독지역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10월 3일에 자동적으로 EC에 편입되었으나, EC의 공동농업정책 및 대외무역정책 등의 EC 관련규정은 점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EC는 시장통합에 그치지 않고 경제통화동맹(EMU)의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의 EC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을 1994년부터 설립하는데 이미 합의

가 된 상태이다. EMU는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단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개시된 유럽통화제도(EMS)에 전회원국이 가입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EC 중앙은행의 설립이며, 제3단계는 EC 단일통화의 채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감축안 및 달러화의 하락세

재정적자삭감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 오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 10월말에 마침내 합의를 보고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5개년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90회계년도 재정적자가 2천20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미국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세금증가를 고려해 왔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양당사이에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민주당은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공화당은 모든 소득계층이 고루 세금부담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이 타협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28%에서 31%로 올리기로(민주당의 본래 주장은 33%) 합의를 봤고, 호화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를 신설하기로 동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증세방안이 실천되면, 향후 5년간 약 1천4백40억달러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함께 진행될 연방예산축소와 더불어 향후 5년간 5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재정정책이 가져올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농산물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고 신분야에서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UR협상 참여와 미국에 대한 지지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미달러화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페르시아만사태가 일어나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시작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달러화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세계 기본통화로서의 미달러화의 역할이 감소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에서 미국시장 및 달러화가 갖고 있던 안전대피지역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단기금리 인하조치는 달러화의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 미통상관계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급팽창하고 있던 지난 1988년 미국의 수퍼 301조를 포함한 통상법이 발효되면서 한 · 미통상관계는 첨예한 대립국면에 들어갔으나, 1989년 5월 미국의 수퍼 301조와 관련된 한 · 미간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관계는 원만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되었다. 올해 들어서서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은 현시점에서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UR협상타결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 · 미 쌍무간의 통상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UR협상에서의 미국입장 지지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 · 통신 · 농산물 등 주요 이슈는 양국의 합의하에 UR협상으로 넘겨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의 과소비 추방운동이 수입규제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몇몇 쌍무적 통상문제들을 제기하며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UR협상에서 한국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농산물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고 지적소유권 · 투자조치 등 신분야에서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UR협상 참여와 미국에 대한 지지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 · 미통상관계를 좌우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여부라 할 수 있는데, UR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초에 있을 금융 · 통신 등을 포함한 서비스시장개방과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한 양자협상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11월 7일〉 나라경제

지구환경보전과 국제교역

김형철
환경처 기획관리실장

약 50년전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른 세계각국은 이러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오고 있다.

지금은 동서 강대국간의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데탕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페만사태'와 같이 인접국가간의 이해관계로부터 돌발되는 국제간의 분쟁이나 국가간의 경제적 갈등은 여전히 세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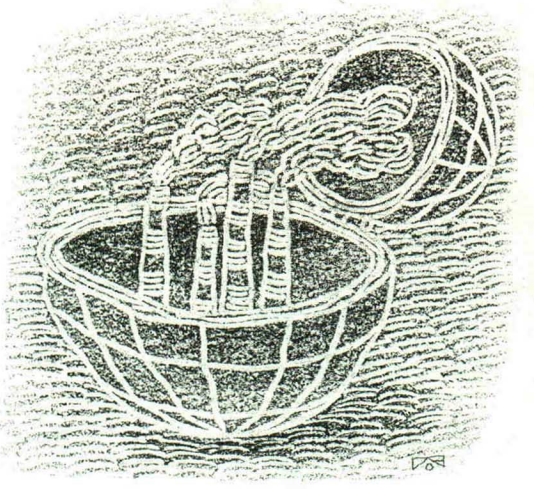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사용 증가로 지구에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염화불화탄소(CFC)와 같은 화학물질의 과다한 사용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는 등 지구의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지구환경보존문제가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는 새로운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제안정과 지구환경보호문제를 주요의제로 하여 세계의 주요지도자는 빈번한 모임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얼의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의해 열린 런던환경각료회의, 파리 세계정상회담(Paris Summit), 동경회담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공상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21세기에는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폐허로 변해버리고 사람들은 지구를 탈출하여 어디엔가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우주를 방황하는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이와 같이 우려되는 지구환경파괴의 주요인은 우리 인류가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환경사이클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태풍에 휩싸여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국제간 현안문제로 닥쳐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CFC와 같은 환경파괴물질을 사용하는 나라와는 국제교역을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CFC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되 행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작은 정성으로 큰 도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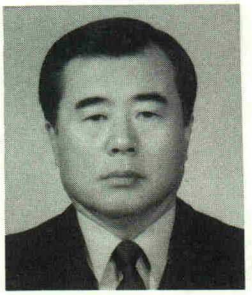

김주일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장

과거 우리 경제는 '한국인이 몰려온다', '한강의 기적', '4마리 용의 선두주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등등 외국으로부터 과분한 찬사를 받았다. 그러던 우리 경제가 '88 서울올림픽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용이냐 지렁이냐', '침몰이냐 부상이냐', '선진국 진입이냐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 앉느냐' '한국경제는 괴질에 걸렸다'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국내외의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우리 경제가 왜 이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과거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무엇일까. 묘안은 좀체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서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우선 쉬운 데서부터,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국제화 시대에의 대처 등 해야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이런 일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를 요한다. 예컨대 지금처럼 수출이 잘 안될 때 기술이 모자라 외국에 내다 팔만한 물건이 없다고 해서 기술개발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한다고 해서 남의 탓만 하면서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며 우리 상품이 외국 상품과 경쟁하여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데 힘써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품질을 향상사켜 제품을 고급화하여 제값을 받고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다고 본다. 우리 상품은 끝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외국 바이어로부터 많이 듣는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정성을 쏟으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페만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 에너지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역시 정부가 거창하게 에너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각자가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아껴쓰는 마음으로 절약하는 데 정성을 쏟아서 에너지 10%를 절약한다면 유가 10%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같이 차가 밀리는 서울 시내 출퇴근 길은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혼자서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줄이고, 주차난도 덜고, 기름도 절약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로 인하여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 농산품의 품질개량과 상품화에 정성을 들인다면 시장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농민들은 고기맛이 좋도록 일본 和牛(한국소를 韓牛라고 하듯이 일본소는 和牛라고 함)의 육질을 개량했기 때문에 일본내에서 값싼 수입쇠고기가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고급 쇠고기용으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려울 때를 만나면 서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싸우기 쉬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우리 모두 헝클어진 문제의 실마리를 내가 풀겠다는 마음으로 각자가 자기 일에 정성을 쏟는다면 이러한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강의 큰 물도 한잔의 작은 물에서 시작되듯이… 나라경제

역사의 교훈

김경우
재무부 국고국장

천년동안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도 어느 일순간에 망하고 말았다. 막강한 군사력과 엄격한 법률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하여는 로마제국멸망사를 저술한 기봉을 비롯 많은 사가들이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하고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진리는 로마의 전성기에 이미 쇠망의 요인이 배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오현제시대는 '인류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라고 찬양되기도 하지만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 영광의 그늘에서 멸망에 이르는 쇠퇴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하다는 것은 이미 불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한다는 옛현인의 말도 떠오른다.

중소자영농민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병사로 참여했다가 부상당하거나 지친 몸으로 돌아왔으나 고향땅은 이미 황폐되어 있었다. 그들은 부자나 지배층에 땅을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빈털털이가 되어 로마시내로 몰려들어왔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계급이 생성되게 된 시초였다. 당시 수도로마의 인구는 백만명을 넘었고 이중 삼분의 일이 노예였으며 활동가능인구는 삼분의 일도 채 안되었다고 한다. 전승으로 얻은 전리품과 싸게 사들인 토지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된 지배층은 노예들의 시중을 받아가며 끝없는 향락과 낭비와 타락의 길을 줄달음질쳐갔다. 로마시내로 몰려든 무산계급층의 불평과 불만을 빵과 서커스제공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달래가면서 이들 지배층은 향응으로 밤이 지새는 줄 몰랐다. 놀자판에 누가 칼잡고 나라를 지킬까? 전쟁에 나가봤자 기다리는 것은 피폐한 집이요, 가난에 그늘진 가족이었다. 그러다보니 주위의 빈한한 나라로부터 용병들을 고용하여 국방을 맡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힘의 실권을 게르만용병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객이 뒤바뀌는 대역전극이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로마의 멸망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어 모두 어리벙벙한 가운데 현실로 닥쳐왔다는 얘기다.

중산시민계층이 건실하게 발전하지 못하면 사회구조가 불안정해져 사회전체가 와해되고 만다. 경제적 빈부의 문제가 나라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실례를 우리는 로마역사에서 배운다. 빈부의 격차문제를 일과성 자선사업이나 단순한 복지시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역사는 가르쳐준다.

국민소득증대로 빈곤을 타파하자는 경제개발계획이 근래 여러나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서건 경제개발이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것은 중산층의 출현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제개발계획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만다.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 처음 단계에서는 빈곤이 더욱 두드러지고 불평등이 더욱 확산된다.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 상황으로만 보아서 해결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 · 자율화를 추구하는 소용돌이속에 자기몫 찾기에 급급하고 자기 이익 극대화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한창인 듯하다. 남과 나는 경쟁적으로 대립하고 충돌하기도 하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철로를 달려야 할 동지적 관계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경제개발의 기초는 투자니 자본이니 하는 경제적 요인보다 더 본질적인 곳에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자꾸 따져간다면 결국 교육이나 윤리가 아닐까? 우리는 역사에서 참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밝은 내일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작은 것은 아름다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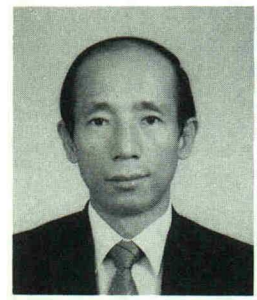

서주석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

최근 국내외 정세는 전환기적 격변의 와중에서 열병을 앓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관심과 경계속에 진전되어온 고르바쵸프의 '新思考'에 바탕을 둔 개방 및 개혁정책은 동유럽공산체제의 와해와 독일통일은 물론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도 경제·사회적 전 국면에서 새로운 사고, 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70년대 중반, 유학시절에 접한 E.F. 슈마헤의 『작은 것은 아름다워라(Small is Beautiful)』라는 책속에 담긴 경제철학이다. 처음 접하면서 느낀 신선한 충격중의 하나는 170여년전 옥스퍼드대학의 정치경제학과 신설여부를 두고 당대의 석학들이 벌인 찬반 논쟁을 회상하면서 빗나간 현실을 개탄하고 있던 점이다.

그는 경제학은 사회철학의 한 분야로서 부의 축적을 통하여 인류의 행복과 윤리의 향상에 기여해야 함에도 이제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경제성과 능률이 최고가치로 군림하게 된 점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는 서구의 형이하학적 물질위주의 경제학을 불교 등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형이상학적 경제학으로의 전환을 제창하면서 대형주의, 자원낭비 및 무분별한 기계화에 따른 실업과 인간소외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는 그간 빈곤의 극복을 위해 경제 제1주의의 기치아래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온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급변하는 최근 국내외 정세로 보아 슈마헤의 경제철학에 조금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아 다음 몇가지 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거대주의 또는 제1주의의 탈피이다. 규모경제주의에 제1주의가 가세하여 공장도, 학교도, 도시도, 건물도 모두 대규모화, 집중화되어 그간 어느정도 성장과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적지않은 규모의 비경제성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이로 인한 관성과 투자비용으로 새로운 변화에의 대응이 늦어져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몰인간화에 따른 애정결핍으로 범죄와 폭력의 폭증, 창의력의 감퇴는 물론 교통난, 공해문제, 입지난 등 역기능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형주의, 분산주의 등에 좀더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우선에서 완전고용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기계화, 자동화, 산업구조변화와 여성취업의 가속화에 따른 실업증대는 인간의 존엄성 파괴는 물론 복지재정지출의 증대를 통해 결국 성장과실을 잠식할 뿐아니라 자녀교육의 소홀과 가정결속을 약화시켜 사회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전고용에 바탕을 둔 성장정책에 역점을 두어야겠다.

셋째는, 건전한 소비산업 및 문화의 개발·정립이다. 인간은 일하는 즐거움과 소비 및 노는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간 일하는 기쁨이 고통으로 느끼도록 일만 해와 소득증대에 걸맞는 놀고 소비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해 오늘날 과소비, 퇴폐 및 무질서가 범람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산업구조의 절반 이상을 3차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문화와 소비문화의 조화와 중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다.

끝으로 작은 것을 사랑하고, 보다 가슴으로 경제현실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면서 고인이 된 슈마헤선생의 명복을 빈다. 나라경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백남근
교통부 도시교통국장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난의 근원적 해결책은 도시철도 즉 지하철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방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달하고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간 약 2년간에 걸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회계를 보면서 왜 꼭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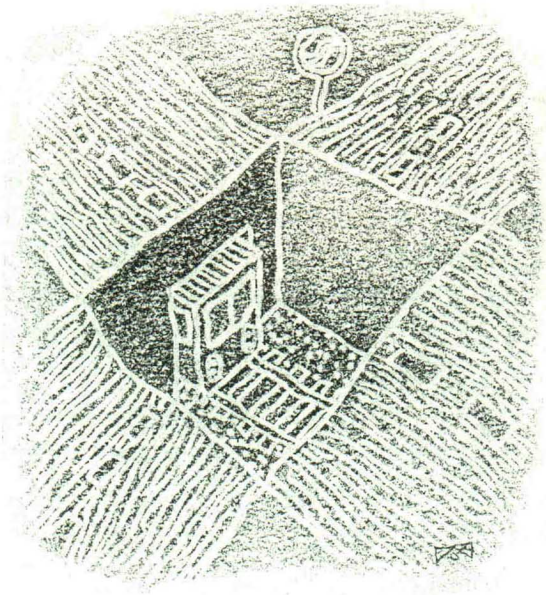

우리 도시교통문제는 이제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에서도 국가 5대 현안과제의 하나로 정하여 관계부처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도시교통난은, 폭발적으로 연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중교통수단의 미비로 인한 승차난과 혼잡으로 나타난다.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해져 서울의 경우 평균주행속도가 20㎞/h이하이고 이대로 가면 '94년경이면 자동차주행 포기 속도인 12㎞/h에 달하고 2001년에는 보행속도인 7~8㎞/h에 달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승차난 또한 매우 심하여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시에는 정원의 3배 정도가 타고 있어 가히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여 시민에게 여유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도시전철)망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주요도시인 런던, 파리, 뉴욕의 지하철망은 서울의 118㎞에 비하여 훨씬 긴 400㎞ 이상이고 수송분담율도 서울의 약 18% 보다 높은 70% 수준이다.

그러나 지하철건설을 위해서는 1㎞ 건설에 약 250억원이 소요되므로 전체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런던 등의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총건설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를 시작하여 거의 2년간 계속되는 회의와 토론을 거쳐 이제 특별회계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다. 생각해보면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간 협조해주신 관계부처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지하철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킬 것을 다시한번 마음속에 다짐해 본다.

식품위생 행정을 수행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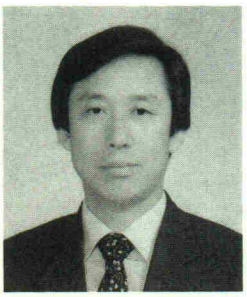

김용문
보건사회부 위생국장

지난해 牛脂사건이 있은 직후 식품위생행정 실무책임을 맡은 이래 줄곧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는 가운데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있다. 한 나라의 식품위생 수준은 그 나라의 제반여건, 즉 경제와 생활수준 그리고 국민의식수준에 따라 변한다. 배고픈 시대의 위생수준은 '먹고 죽지 않으면' 만족했고, 먹고 살만한 시대에서는 '양과 질에서 즐기면서 먹는 정도'로 변하였으며 오늘날의 위생수준은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추면서도 특히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만족하는 시대로 급속히 변천하였다.

어릴 때 밥상에 밥 한톨이라도 흘리면 '귀한 玉食을 흘린다'는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흘린 밥을 다시 주워먹던 시대에서, 더럽다고 먹지 못하게 하는 시대로 변해가면서 '죽을 밥먹듯이 했다'라는 어른말씀에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라고 대답하는 애들의 답변만큼 위생개념은 많이도 변했다.

외국의 식품관련 잡지나 단체에서 어떤 물질이 인체에 있어 발암의 개연성이 있다면 발표가 있으면, 그 물질이 우리들이 먹는 식품에 극미량 함유되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불안해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하는 농산물에 흡연이나 자동차 매연보다도 위해가 훨씬 적을 수도 있는, 안전성의 염려가 없을 정도의 극미량의 농약이 잔존하거나 피할 수 없는 환경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내로 식품에 존재하는 것도 한 번만 먹으면 당장 암에 걸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물이나 극물로 인식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소비자에게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곤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 식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도 상관없다든가 방관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실 농약이나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생체 이질물질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에 해롭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는 이익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량증산 또는 기호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의 사용을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해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각종 규제기준은 대부분 동물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능한 모든 과학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한 각종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무한한 욕구가 충만한 현실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식품위생행정을 수행하기에는 때론 너무 어렵고 고민스러우며 사실 합리적인 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이를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도 많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산업 오염물질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농수산물을 생산 수확하거나 이를 원료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식품을 제조할 수는 없을까 라는 번민을 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보낸다.

各其處所

김상남
노동부 감사관

주차하기 위해 나선형으로 된 길을 따라 지하로 내려간다. 이 시간대쯤이면 모르긴 해도 잘해야 2층 아니면 지하 3층에서까지도 두서너 바퀴를 돌아봐야 겨우 차를 댈 수나 있을는지? 핸들을 여러번 돌리고는 해서 지하 1층에 다다르자 안내원이 지하 2층으로 향하는 길로 신호를 보낸다. 막 움직이려 할 때 한 귀퉁이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후진하는 차를 본다. 쾌재라! 이런 시각에 지하 1층에 단번에 주차를 시킬 수 있다니.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요즈음엔 웬만한 복권 하나 당첨된 만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신호등이 바뀐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교차로를 건너면서 무척 좋은 기분이 된다. 운수 대통한 날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만약 그 찰나를 놓쳤다면 시간은 지연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된다. 그날의 운수요 일진이려니 여기고 무심코 지나치면 그만이다. 생활의 매운 양념처럼 말이다.

그러나 차례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장사진을 무시하고 매표구 앞에 잠깐 눈을 속여 들어오는 부류나,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어느 사이엔가 시상대 열에 끼이는 요행(?). 앞의 것과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

요즈음 수출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고 모두들 걱정이다. 이리저리 원료를 들여와 부지런히 가공해서 추운 곳 더운 곳 가리지 않고 내다 팔아온 품값이 오늘의 나라살림이다. 그래도 믿을 건 이 대목 뿐인데도 뜻대로 되지 않아 모두 우는 소리요, 뾰족한 묘안이 서지 않는 모양이다. 항해 중인 선상에서 팔려가고 있는 자동차의 부품을 새로이 넣고 고쳐가면서 하는 장사가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미구에는 잘될 리 만무하다.

과거 어려웠던 역사 속으로 후퇴하여 다시 가난하고 왜소해지려는가?

70년대에서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경제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민 여러 계층에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온 결정체였다. 그러던 것이 한 순간에 요행이 사행으로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면면에 뜻하지 않은 투기가 성행하고 과소비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하루에도 기천만원의 이익을 올렸다는 주식시장의 활황보도에 농민은 논팔고, 소팔아 흙을 떠났다. 교사는 밑천마련할 양으로 퇴직금때문에 일치감치 교단을 떠나고.

얼마간의 국민들은 돌아갈 농지도 교단도 가정도 잃었다. 횡재 바라기를 택한 탓이 아닐는지. 대낮의 즐비한 차량행렬을 보아도, 밤거리의 네온싸인을 보아도 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뭔가 유랑하고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짧은 역사 동안에 우리네 아이들의 사전에서 '보리고개'를 지워버린 위대한 국민이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해서, 흥청망청거릴 게 아니고 다시 재정비해서 생활의 폭을 좁혀보면 어떨까. 교사는 학생이 기다리는 교단을 향해, 농민은 떠났던 땅으로, 주부는 주방으로 돌아가 제자리에 정위치하는 거다. 그것도 넓게 차지하려는 욕심을 없애고, 최소한의 자리만으로 만족하면서 국민 모두가 제자리에 다시 서야 한다. 밤낮없이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국군을 향하는 마음으로, 쇠망치소리나는 산업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산업역군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헛된 요행을 버리고,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갈 때.

만 남

소설가 한말숙이 본
이승윤부총리

'엘리어트'를 즐겨 읽던 나라 경제의 사령탑

한말숙 / 소설가

"학창시절의 부총리는 다른 수재들처럼 모나거나 괴팍하지 않고 오로지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번에 만나보니 굵직한 사회활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똑같이 성실한 인상을 주는 데 속으로 무척 놀랐다."

때 : 1990. 11. 13(화)
곳 : 정부 제1청사 부총리 집무실

이 부총리와 나는 전공학과는 다르나 서울대 문리대의 동기동창이다. 나의 선후배 동창 중에는 우리 사회의 각 방면에서 빼어난 인물로 우뚝 선 사람도 많고,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많으며 그 중에는 정말로 동창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승윤 부총리는 아직 이렇다할 평가를 내릴 때가 아니나 자랑스런 사람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전쟁 때문에 어려웠던 부산 피난시절 명강의로 유명하셨던 이양하 교수의 엘리어트(T.S.Eliot)의 시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 지금 KDI에 있는 구본호 원장과 함께 그 어려운 시를 해석하느라고 셋이서 머리를 짜내던 일이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잔잔한 미소와 함께 뚜렷이 생각난다. 그 시절의 이승윤 학생이 오늘날 이토록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기획원장관이란 중책을 맡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으랴.

학창시절, 부총리는 다른 흔한 才士들처럼 모나거나 자만하거나 혹은 남달리 우울하거나 괴팍하거나 혹은 나대거나 하지 않는 오로지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다. 이번에 만나보니 교수, 국회의원, 재무장관 등 굵직한 사회활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성실한 인상을 주는 데에 속으로 놀랐다. 그런 성품이 오늘날의 부총리 이승윤을 있게 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만나 뵙자마자 "지금도 엘리어트를 읽으십니까"하고 물었더니 "흠뻑 젖어들 만큼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아쉬우나 그래도 「프루후로크의 연가」나 「재의 수요일」, 특히 엘리어트가 시인으로서 정점에 이른 작품인 「네개의 사중주」는 즐겨 읽는다"고 했다.

흠뻑 젖어들 만큼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아쉬우나 그래도 「프루후로크의 연가」나 「재의 수요일」, 특히 엘리어트가 시인으로서 정점에 이른 작품인 「네개의 사중주」는 즐겨 읽지요.

부총리의 이력서를 보면, 미국유학 가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마친 후 바로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30미만의 나이에 「경제발전을 위한 선택적 신용통제」라는 어려운 논문으로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귀국 후는 모교와 연세대, 서강대에서 강의를 했고 76년부터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오늘에 이른다.

"학계와 정계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고 물으니까 "부총리로서 어려운 결단이나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대학에서 강의하던 때가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책임감과 함께 마음 뿌듯할 때도 있다"고 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과 포부를 실지로 펼쳐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고 반문한다.

부총리의 주요 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바쁜 와중에서 어느 사이 이렇게도 많은 책을 썼을까. 『신화폐금융론』, 『관리가격과 물가』,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 과정』, 『전환기의 한국경제』 등 무려 20여권에 이른다. 그의 집은 인세로 샀다고 소문이 날 만큼 경제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인기있고 유명했던 필독서들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부총리의 자리에 있는 만큼 경제에 대한 경륜이 없을리 없다. 그래서 "부총리의 경제 운용 철학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 "풍요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도 찬성이다. 풍요롭기만 하면 무엇하나? 마음을 놓고 살아야 산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부총리는 풍요로운 사회로 가는 도중에 있는 우리가 국민소득 5천불시대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한말숙여사는
1931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신화 속의 단애」로
1957년 김동리 선생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데뷔하였다.
삶의 허망함을 극복하려는
새세대의 인간상을
주로 그리고 있으며
작품집으로는 「산과의 약속」,
「하얀 道程」 등이 있다.

한편 부총리는 일부에서 왜곡된 경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걱정했다. 부총리가 걱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균등은 있어야 하나 사회적 불형평의 시정을 위해 결과의 균등을 요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을 앞두고 콜 서독 수상이 '동독 사람들이나 인접한 동구 국가들은 오늘날 서독이 잘사는 것은 어느 누가 공짜로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서독 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룬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부총리를 만난 김에 평소에 궁금하던 경제문제를 몇가지 물어보기로 했다.

"내년의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소지가 없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진입하고 또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가불안정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안정기조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이후 세계의 부러움을 샀고, 곧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는 줄 알았는데, 요즈음 들어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상태인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부총리는, 88년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바람에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주문이 쇄도해 그 덕을 많이 보았지만, 그 이후에 노사분규로 일을 많이 못했고 임금이 인상되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데다 소득이 높아지니까 과소비가 늘고, 따라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늘어 생산성이 둔화되었다고 한다. 바로 그런 것들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니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를 것이 뻔합니다. 페르시아만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괜찮을까요?"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기름값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원유도입가가 평균 25달러를 넘지 않으면 연내에는 유가를 인상하지 않고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도입가가 30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국제원유가 동향, 국내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택문제다.

"금년에만 해도 전세값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열명이 넘고,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는데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88년부터 92년기간중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중 60만호 이상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20만호 이상 건설될 것으로 보여 전·월세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주위에도 다세대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주택건축 붐을 피부로 느낄 수는 있으나 저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러나 어쨌든 집이 많아진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불만과 고통을 주던 주택문제에 조금은 밝은 길을 트이게 하는 것이리라.

장바구니의 무게로 경기를 가늠한다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일지 모르지만 주부들이 경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시장이다.

"이번 여름에 채소값이 폭등했는데 물론 수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정책이 있으신지요?"

"생산농가의 시장 대응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농민의 협동출하반(90년 현재 2,302개라고 한다)을 육성하고, 농산물 집하장, 공동 저장고, 수송차량 등 산지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개선과 규격출하 확대 등을 지원하고 산지가공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 소비지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과 직·공판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산지 농민과 소비자의 직거래로 효율적인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니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상인, 소비자 등 모든 사람들의 공동노력과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어찌 유통구조 문제에만 한하겠는가.

모처럼 어렵사리 부총리를 만난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지만, 인터뷰 도중에도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급한 전화로 더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질문을 했다. 사회보장 문제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부총리의 정책의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4천만 인구의 나라경제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와, 또한 통일 후의 우리나라 경제까지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실로 무거운 짐을 진 부총리에게 나는 다만 우리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형평과 분배문제는 점진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의 선순환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형평과 분배를 가장 왜곡시키는 물가불안과 부동산투기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제개혁을 통해서 소득계층간의 형평과세를 도모하고 계층간·기업간·지역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7차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서 죽고, 또 죽은 후까지도 사람과 떨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경제다. 4천만 인구의 나라경제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와, 또한 통일 후의 우리나라 경제까지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실로 무거운 짐을 진 부총리에게 나는 다만 우리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부총리의 경제철학대로 국민이 풍요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또한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확실한 경제기반을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터뷰를 끝냈다.

이승윤 부총리는 이화여대 영문과에서 강의하는 부인과 슬하에 2남 1녀를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다. 내내 다복하시기를 빈다.

통화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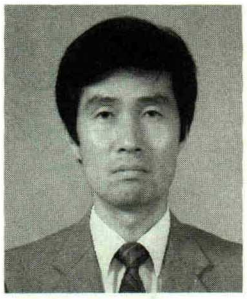

권오규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

금년 물가는 하반기 들어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10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9.2% 상승하여 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페르시아만 사태의 돌발로 향후 유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물가마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근의 물가불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안정보다는 성장을 중시하여 그간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통화지표를 보면 당초 정부가 설정한 목표통화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화량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늘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불안은 통화량의 증가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원가요인에 더 많이 좌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처방도 단순한 통화와 재정의 긴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각계의 자기 몫 확보 경쟁을 지양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금년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금년도의 경우 물가상승은 주로 지난 수년동안의 임금 및 자산가치가 크게 증가된 계층의 소비수요 증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여기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한 건설노임 및 기타 서비스요금 상승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일기 불순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격상승이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집중호우에 따라 채소류·과실류의 작황이 부진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 페만사태 영향으로 납사 및 석유화학계열제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금년 10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9.2% 올라갔는데 이중 농축수산물·공공요금·개인서비스요금 상승에 따른 요인이 6.8%로서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표 1〉 90년 1월~10월 중 부문별 물가추이

(%, %P)

소비자물가			도매물가		
	변동률[1]	기여도		변동률[1]	기여도
농축수산물	14.8	4.23	농축수산물	24.9	3.97
공산품	4.3	1.18	공산품	3.5	2.37
공공요금	6.1	1.25	공공요금	△1.3	△0.07
석유류	0.0	0.00	석유류	4.5	0.20
연탄	0.8	0.02	연탄	0.0	0.00
집세	12.3	1.43	기타	6.3	0.24
개인서비스	13.5	1.11			
소비자물가 전체	9.2	9.2	도매물가 전체	6.8	6.8

1) 전년말 대비 증가율

금년도 물가상승의 원인은 주로 지난 수년동안의 소비 수요 증가와 건설 노임 및 서비스요금 상승,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미친 주요인은 생산성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인상, 일기불순과 수매가 인상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던 납입금 · 의료보험수가 등 누적된 공공요금의 일부 현실화와 인건비 · 임대료 등이 올라감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속적인 상승 등이라고 하겠다.

요는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다면 통화긴축으로 안정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물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재정 · 금융 등 총수요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통화가 과다하게 늘어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인플레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긴축적인 재정 · 금융정책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코스트'요인에 의해 물가상승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긴축하게 될 경우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제품의 원가가 높아짐은 물론 기업자금을 압박하게 되어 생산활동까지 위축시켜 공급차질에 따른 또다른 물가불안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통화를 무리하게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긴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재정이 민간부문에서 풀린 통화를 흡수하는 것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지만은 이보다 경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공급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정부예산이 쓰여질 경우에 기업의 생산 및 유통비용의 절감과 산업생산의 증대를 유도하여 보다 큰 물가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년도 총통화증가율이 당초목표수준을 상회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

금년 들어 총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년 동기대비

총통화증가율이 높아지게 된 것은 정부가 통화 관리를 느슨하게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변동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이다.

총통화증가율이 상반기에 22.9%, 3/4분기에도 20% 수준을 나타내었다. 비록 총통화증가율의 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현추세로 볼 때 상반기의 높은 증가율의 영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1% 수준에 달하여 당초 예상수준 19%보다는 상회할 전망이다.

당초 금년도 총통화의 적정증가율을 15~19%로 설정한 근거는 경제성장률 6.5%, GNP 디플레이터 4.5%, 유통속도하락률 3~7%를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여건이 크게 변동되어 연간 총통화증가율이 당초목표수준을 상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당초예상 6.5%에서 8~9%로 상향 전망됨에 따라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통화공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몸이 커지면 몸에 맞추어 옷도 큰 옷을 입어야 함은 당연하다.

둘째, 증시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자동화·신제품개발 등 설비투자를 늘리려면 은행권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셋째, 증시침체 지속에 따라 국민주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1조 750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도에 영구임대주택건설 지원과 추곡수매 등을 지체시킬 수는 없는데다 수해 및 페만사태의 돌발로 재정부담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2차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표 2〉 총통화증가율 추이

(%)

	87년	88년	89년	90년	
				당초전망	현전망
• 경상GNP 성장률	17.0	19.1	11.8	12수준	16~17
불변성장률	13.0	12.4	6.7	6.5	8~ 9
GNP deflator상승률	3.5	5.9	4.7	4.5	7.5
• 유통속도하락률 등[1]	1.8	△0.3	6.6	7수준	4.5
• 총통화증가율	18.8	18.8	18.4	19수준	21수준

1) • 지난해 유통속도하락률이 높은 요인 : 노사분규, 임금상승, 수출부진 등
• 금년의 경우 : 증시위축, 자금출처조사 등에 따른 현금선호 및 퇴장, 수출부진 등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총통화증가율이 당초예상보다 높아지게 된 것은 정부가 통화관리를 느슨하게 해서가 아니라 상황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시장실세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은 자금부족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금년 들어 통화가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공급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높은 통화공급아래서도

자금흐름이 불건전하게 될 경우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으나 최근의 자금흐름을 보면 뚜렷이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곧 통화공급이 그리 넉넉치 않았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결국 통화는 증가율 자체보다도 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하더라도 자금이 서비스부문·소비지출·부동산 등 불건전한 쪽으로 흐를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제조업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년의 경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추진으로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과소비 억제 시책으로 소비증가는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자금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부문에 흐르는 자금을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림으로써 통화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저축동향을 보더라도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제2금융권의 단기성저축은 줄어들고 있어 단기부동자금이 점차 장기저축성 예금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총통화구성에 있어 유동성이 높은 현금통화 및요구불예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총통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은 적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표 3〉 금융기관의 저축동향

(억원)

	90.1/4분기	2/4분기	3/4분기
은행저축성예금	5,301	27,168	22,449
단자사CMA	9,242	△1,849	△1,314

물가불안을 이기는 방안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물가상승은 지난 3년간 민주화 과정에서의 각계각층의 과도한 자기몫 확보경쟁의 결과 임금인상, 쌀수매가 인상, 의료보험수가,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가 초과수요요인으로 작용한데다가 그동안 부동산투기의 만연, 기업의 투자의욕 저상 등으로 자금흐름이 왜곡된 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없이는 경제성장도, 소득분배개선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운용을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재정·금융 등 총수요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각 계층이 자기몫 확보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각 계층의 협조를 구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우선 기업가는 부동산투기나 재테크에 몰두하기보다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자구노력에 의한 시설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금융지원 의존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 등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을 가격인상보다는 생산공정의 개선이나 품질향상을 통하여 최대한 흡수토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넘는 과도한 임금상승을 자제하고 이밖에 농어민·공무원·의사 등 모든 계층은 자신들의 경제행위의 집합체가 결국 물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지나친 자기몫 확보경쟁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물가가 불안할수록 절약·절제하여 저축을 늘리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물가불안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며, 자금도 꼭 필요한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 낮은 통화공급수준으로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 물가안정의 바탕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하더라도 자금이 서비스부문·소비지출·부동산 등 불건전한 쪽으로 흐를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제조업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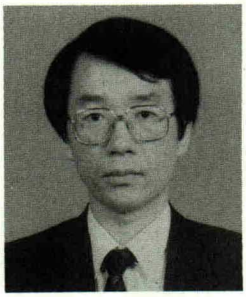

박종흠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 사무관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주요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현상이며, 각 도시 나름대로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도시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낭보는 어디에서도 들려오고 있지 않다.

얼마전 서울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도 푸시맨이 등장하여 세인의 관심을 끈 바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발달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푸시맨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정 역시 별로 나은 것이 없는 실정이며 기타 미국이나 유럽제국도 유사한 처지라 하겠다. 선진제국이 그러할진대 우리나라라고 해서 대도시 교통난 해결에 특별한 비책이 있을리 만무하다. 다만, 교통난의 해결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교통난은 소통난·주차난·승차난 등을 총칭한다고 보여진다. 이 세가지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소통난·주차난은 주로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와 결부되어 있고 승차난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소통난·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및 주차장의 신설, 확장은 필연적으로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내에 있는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물론 적정수준의 도로망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사정상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같이 도시내 도로율이 30~40%에 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은 소통난·주차난의 해결이 아닌 대중교통 승차난의 해소에 그 역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존 도로를 대중교통수단에 할애함으로써 그 수송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버스전용도로 등의 확대와 함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지하철의 건설에 대도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 등 도시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므로 결국 대도시교통난 해소는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여하히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대도시 교통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991년부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4년 처음으로 서울에서 지하철 1호선 7.8km가 개통된 후 1985년까지 4개노선 총연장 116.5km를 건설하였으나 그 이후 지하철건설을 중단함으로써 현재의 교통난을 초래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부산도 1989년까지 건설한 지하철의 총연장이 26.1km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지하철건설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업으로 간주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극히 미흡하였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하철은 그 건설비용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만으로는 건설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하철의 건설에 있어서 국고지원은 서울의 경우 3%, 부산의 경우 12%에 불과함으로써 지하철건설에 따른 부채액이 서울 2조 9,500억원, 부산 1조 1,700억원에 달하여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지하철건설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율이 미국의 워싱턴 80%, 뉴욕 60%, 프랑스의 파리 50%, 영국의 런던 7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하철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한 것은 대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입안중인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법(안)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으로 자동차 및 동 부품 수입관세,휘발유특별소비세액의 일정분(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관련세입을 중심으로 세입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대도시교통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예상세입 규모는 1991년 1,600억원, 1991년~2001년 약 3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건설 또는 운영에 대한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6대 도시의 2001년까지의 지하철 건설계획 및 투자소요(추정)액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지하철건설계획 및 투자소요(추정)액

(km, 억원)

	현행	건설계획	건설기간	투자소요(추정)액[1]
계	196.1	547.4	'90~2001	126,953
서 울	170[2]	226.0[3]	'90~'97	48,911
부 산	26.1	116.6	'90~2000	25,042
대 구	-	72.7	'91~2001	18,859
인 천	-	51.8	'94~2001	13,986
광 주	-	41.9	'94~2001	10,517
대 전	-	38.4	'94~2001	9,638

1) 투자소요(추정)액은 1991~2001년까지의 금액임.
2) 국철 52km를 포함한 수치임.
3) 신도시연결 전철 66km를 포함한 수치임.

특별회계의 현행 세입규모로는 6대 도시 지하철 건설비용의 약 30%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비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5대 직할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70~9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세입의 적극적 확충을 통하여 지원비율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 주요 도시의 경우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동경 76%, 뉴욕 72%, 런던 74% 등 대부분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18.8%, 부산 6.5%에 불과하며, 그나마 극심한 혼잡도로 인하여 지옥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정부가 지하철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한 것은 대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재원의 안정적 지원에 힘입어 지하철건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2001년까지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서울 50% 수준, 부산 40% 수준까지 제고될 것이며,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등도 2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시대가 명실공히 열리게 되며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도시지역에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책임의 일부분을 분담시키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교통유발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통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한편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외곽이전을 통하여 간접적인 교통유발억제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즉, 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시설로 인하여 기본수준 이상의 편익, 즉 기업체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부터의 고용이 가능하며, 상가의 경우 고객유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등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였다. 우선 교통난이 심각한 6대 도시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교통난이 중소도시까지 심화될 경우 대상지역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최저규모도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기준의 객관성 · 공평성 및 합목적성의 확보를 목표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책임의 일부분을 분담시키는 것이다.

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백화점 · 예식장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용도의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둘째, 도심지역 등 지역개발밀도가 높아 교통량의 집중정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은 많아야 한다.

이외에도 당해 시설물의 영업성, 주변교통시설의 서비스수준, 주차장의 공급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기준의 지나친 세분화는 오히려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기준의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면서 기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부담금=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은 바닥면적 3.3제곱미터(1평)당 1천원이며,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산정한 수치로 하였다. 시설물의 위치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기타 지역의 도심 및 외곽으로 구분하고 용도는 병원, 업무시설, 관람 · 집회 시설 등 16개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위치와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지역 / 용도	서울특별시		기타 지역	
	도심	외곽	도심	외곽
병 원	1.49	1.00	1.22	0.82
업무시설	1.00	0.75	0.82	0.61
예 식 장	4.48	2.99	3.65	2.44
백화점 · 쇼핑센터	5.46	3.28	4.45	2.67
공 장	0.49	0.30	0.40	0.24

부담금의 예상징수액은 6대 도시에서 1991년 약 1,600억원, 1991~2001년 약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6대 도시에 설치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되며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지하철건설 및 운영의 지원 등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교통투자확대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금까지의 교통투자정책은 계획에 의한 사전적 · 예비적 투자라기보다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행한 사후적 · 대증요법적 투자로 일관하여 왔다고 하겠다. 이는 그동안 교통투자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재원의 실질적인 조달이 어려웠던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심각한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나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외에도 기존 일반재정상의 교통관련 세입을 적극적으로 교통부문에 투자하는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교통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부담금제도를 확대하고, 교통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제3의 수혜자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끝

앞으로 심각한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세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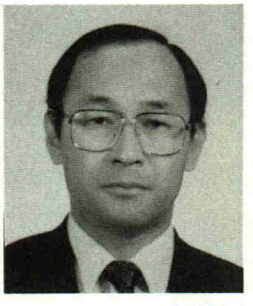

박진규
재무부 조세정책과장

세금제도를 왜 변경해야 하는가?

조제정책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 ·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탄력성에 제한이 있으나 세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88년도에 일차적으로 세제를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여건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기능의 변화에 부응하여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과정에서 고조되어 오고 있는 국민의 형평 · 균형에 대한 욕구를 세제면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둘째,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관련세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주택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책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방위세 시한만료에 대비하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등이다.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개편의 필요성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세법개정의 범위는 그 폭이 넓어질 수 밖에 없으며 개정대상이 되는 세법의 종류도 9가지에 이르고 있다. 또한 '90년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그 큰 줄기를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의 합리화에 두고 여기에 납세풍토조성과 지방재정확충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다.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법의 제정 · 개정 및 적용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이며, 최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비판과 함께 자산소득자 등에 대하여는 중과되어야 한다는 여론에서 알 수 있듯이 세부담의 형평성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땀흘려 일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상속 · 증여재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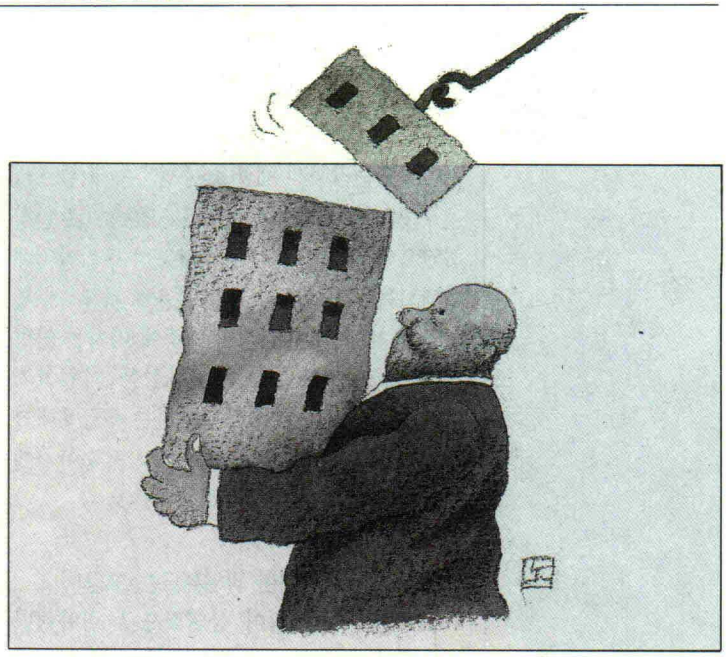

강화하는 것을 금년도 세제개편의 첫번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두번째 기본방향으로서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과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세제의 보강에 두었다. 즉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법인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고, 기업의 건전 경영풍토가 조성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현행의 조세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반면에,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국민개납의 원리 및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부담의 적정화와 납세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번 세제개편내용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향후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제의 조정 등도 '90년 세제개편의 주요한 내용이 되도록 하였다.

근로소득의 경감 등 형평과세의 실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

근로소득자 세부담경감을 위해 첫째,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근로소득자 면세점을 4인가족 기준으로 연 404만원에서 48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둘째, 의료비공제액·경로우대공제액·퇴직소득공제액 등을 인상하고 부녀자세대주 공제제도와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셋째, 소득세율체제를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였는바, 현행 8단계의 세율계급을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5.5~60%에서 5~50%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조치의 효과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4인가족기준 월평균 세부담 비교

(천원, %)

월소득	'90.1		'91.1		경감	
	부담세액	실효세율	부담세액	실효세율	경감액	경감률
600	12.3	2.0	5.5	0.9	6.8	55.1
1,000	57	5.7	35	3.5	22	39.2
1,500	176	11.7	114	7.6	62	35.2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시켜주되, 부동산 및 금융자산소득 등 재산 소득과 상속·증여세는 강화함으로써 조세형평을 도모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

첫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의 전액면제를 50%면제로 축소하는 등 양도소득세감면폭을 조정하였고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1년간 세액기준으로 3억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제를 도입하였으며, 고가의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는 '92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하였다.

둘째,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과세 세율을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수준(실명분 20%, 가명분 55%)으로 인상하였으며, 3년 미만의 단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 같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하였다. 다만, 세율인상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가계저축의 한도를 확대하고 장기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신설하였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보강

그동안 세원포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분야중의 하나인 자영사업자(특히 일부 자격사를 비롯한 과세자료 양성화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영사업자와 거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와 과세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세제를 강화하였다.

상속 · 증여세제를 강화

먼저 상속재산 포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속자(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세무서에 공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액상속자의 상속재산을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상속세 회피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세시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정도 연장하고 생전증여분을 상속세에 누적합산 과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상속공제제도 및 세율체계도 조정하였는바, 상속공제한도액을 현행 최고 1억 1천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중산층이 상속받은 1가구 1주택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상속 · 증여세의 세율을 하향조정(상속세 6~66%→10~55%, 증여세 6~72%→15~60%)하고 8단계의 세율구조를 5단계로 단순화하였다.

지난 88년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세제개편이 있었으나, 그간의 여건변화와 예상되는 재정기능의 변화에 부응하여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쟁력향상을 위해 기업세제를 개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과세개편의 방향은 먼저, 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기술 · 인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생산적인 투자 등 불건전한 기업형태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법인세율의 인하로 기업부담을 적정화

현행 법인세율체계는 일반법인, 자본금 50억원이 넘는 비공개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율을 달리하고 있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금번 개편안에서는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과세의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표 2〉 일반법인세율 조정(안)내용

과세표준	현행(방위세포함)	개정안
8천만원이하	24%	20%
8천만원초과	일반법인(36~37.5%)	
	비상장법인(39.6~41.25%)	35%
	비영리법인(32.4~33.5%)	

설비투자 및 기술 · 인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첫째, 제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현재 그 시행기간이 '90년말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91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첨단산업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였다.

그리고 기술 ·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는 바, 기술개발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업내에 적립하는 경우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주는 범위를 현재보다 2배(매출액의 1.5%→3%)로 확대하고 세액공

제대상이 되는 기술 ·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였는바, 기계장치 · 첨단산업기계에 투자시 투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투자준비금의 설정범위를 기계장치가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하였다.

소비성산업 등에 대한 과세강화와 건전한 기업경영풍토 조성

레저산업 등 소비성서비스산업에 대하여는 차입한 이자 · 접대비 · 광고선전비의 비용인정범위를 제조업보다 축소함으로써 제조업투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였고, 일반기업의 기부 · 접대비 손비인정범위축소를 위해 기부금의 비용인정한도를 소득금액의 10%에서 7%로 축소하고 계열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의 손비인정 한도를 1/2 수준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접대비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토록 함으로써 접대비 등을 이용한 기업자금의 유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최저한세도입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최저한세(Minimum Tax)제도의 도입

현행법령상으로는 소득세 ·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6~11%의 방위세는 부담하고 있으나 방위세가 폐지되면 전혀 세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 국민개납의 원칙에 맞지 않게 되므로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수준의 최저한세는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한 조세지원 종합한도제를 폐지하고 최저한세제도로 대체함으로써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도록 하였다.

지방재정확충 등을 위한 과세체계의 조정

금년말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는 폐지하며 현행 한시세인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하고 현행 방위세 재원의 일부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양여세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전화세전액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5%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도로확충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교육세 전액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조세정책은 여건변화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

정부정책의 대부분은 그 변경에 따라 국민상호간의 기존의 이해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이해조정의 과정이 민주적일 때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90년 세제개편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3회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언론보도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금번 세제개편에서 반영되기를 원하는 각계의 건의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참고함으로써 최선의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현행조세제도의 배경이 되는 경제 및 사회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되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세제의 변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과세개편의 방향은 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기술 · 인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생산적인 투자 등 불건전한 기업형태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맑은 물 지켜내기

팔당·대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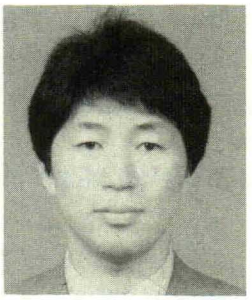

신동원
환경처 수질제도과 사무관

팔당·대청호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정부정책의 선택은 사회적 총효용과 사회적 총비용의 비교형량에서 비롯된다.

물의 경제정책은 크게 수량관리정책과 수질보전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수량관리정책은 물에 대한 총수요와 총공급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그 기본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 정책수단은 정확한 수급계획과 이에 입각한 가용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각종 댐의 건설과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질보전정책은 물에 대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정책수단은 적정한 수환경기준 설정과 이를 위한 각종 수질오염원의 규제와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물의 경제학이라 하더라도 수량관리정책은 그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폭이 수질보전정책에 비하여 매우 좁다. 왜냐하면 수량관리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물은 보통 경제체제의 외부 즉 자연현상에서 유입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부족이나 과초과는 즉시 그 경제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결하는 수단은 직접적인 물의 수급조절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질보전정책 대상으로서의 물은 보통 경제체제 내부의 문제 즉 인간의 경제·사회활동의 결과로서의 수질오염물질의 低減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수단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의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수량관리정책과 수질보전정책은 그 정책적 배경이나 정책수단이 엄격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5천$을 넘고, 21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둔 지금, 물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수량관리정책에서 수질보전정책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사실상 건설부의 수자원수급계획을 보더라도 '90년부터는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언론이건 국민이건 정부건 '물문제'하면 '물의 부족'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오염'을 연상한다.

팔당호와 대청호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1,800만시민에게 상수원수 등 각종용수를 공급하는 공공의 재산이다. 이 양대 湖沼는 막대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정부가 이 막대한 물의 사회적 효용을 보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

'90년 7월 1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팔당호와 대청호 유역을 환경보전법상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동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한 것은 수도권과 중부권 시민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표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환경정책사상 처음으로 경제부처 장관이 모여 광역적인 지역의 경제활동을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다.

인간에게 효용을 증대시키는 유한한 재화가 경제재라고 한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맑은 물도 매우 중요한 경제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보호의 차원을 벗어나서 국가 경제정책의 매우 중요한 일단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의 정부에서 취한 팔당·대청 수질보전특별대책의 지정과 이에 따른 종합대책의 시행은 정부 경제정책의 새로운 지평선을 연 계기라고 볼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의 범위와 그 근거는

팔당호의 경우 경기도 지역인 남양주군·여주군·광주군·가평군·양평군·용인군·이천군 등 팔당호 유역 총 7군 43개읍·면지역(총면적 2,102㎢)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며, 대청호의 경우에는 대전직할시 동구 1구와 충청북도 옥천군·청원군·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3군 11읍·면(총면적 729㎢)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중에서도 상수원 취수지점과 거리상 가깝고 직접적인 오염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댐 만수구역에 직접 유입되는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까지의 유수거리상 자정능력이 1/2미만인 본류 및 지천에 인접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지역중 상수원 취수지점과 거리가 멀고 간접적인 오염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댐 만수구역을 제외한 본류 및 지천지역과 유수거리상 자정능력이 1/2이상 2/3미만인 본류 및 지천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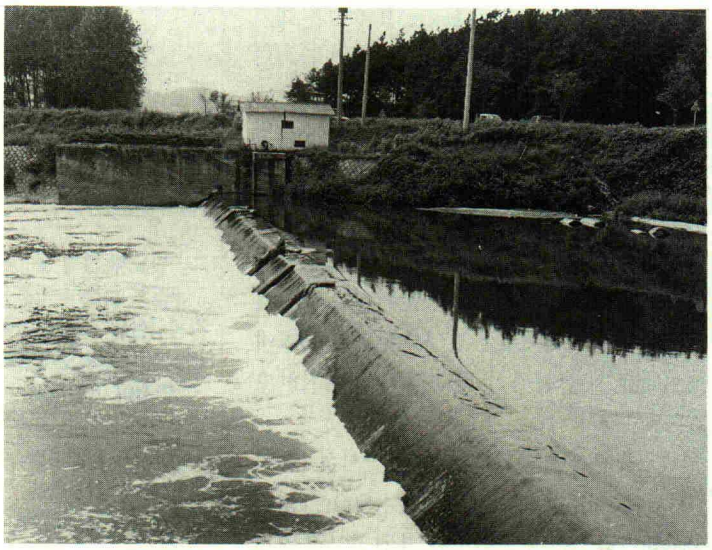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오염돼 검게 변한 채 흰거품으로 뒤덮인 하천. 수질보존특별대책지정의 근본취지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잘 보전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현재도 이 지역에는 규제가 강한데 또 규제를 하여야 하나

본 대책의 근본취지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잘 보전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500㎥/일 이상의 폐수배출업소만 입지가 금지된다.

그것도 Ⅰ권역에만 입지를 금지하였고, Ⅱ권역에는 입지를 금지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만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 폐수를 500㎥/일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4%에 불과하다(다만 이들이 배출하는 폐수배출량은 전체의 95%를 상회한다). 500㎥/일 미만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입지가 가능하므로 중소규모의 공장과 무공해공장(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은 당연히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500㎥/일 이상 폐수배출업소의 입지금지로 주민의 재산권의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보전법상 축산시설(소 10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도 Ⅰ권역에만 입지가 금지되고, Ⅱ권역에는 입지가 금지되지 않는다.

현재 팔당권역내 축산농가는 총 3,600가구이나 환경보전법상의 규제대상시설은 1.4% 정도인 50가구에 불과함으로 중소규모축산이나 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기르는 행위가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38개소를 건설중에 있어 특별대책지역내 축산농가의 폐수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대상 축산시설 (우사 700㎡(소 약50마리 정도), 돈사 500㎡(돼지 약 500마리))은 Ⅰ권역이건 Ⅱ권역이건 입지를 규제하지 않는다. 규제기준 2,500ppm을 2,000ppm정도로 강화할 계획이나 이 기준은 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만으로도 처리가능할 것이다.

〈표 1〉 수질오염원의 특별관리

오염원	Ⅰ권역	Ⅱ권역
산업폐수 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금지 1일 500톤이상 배출시설 입지금지	좌 동 배출허용기준 강화
생활오수 배출시설	연건축면적 800㎡이상 일반 건축물 및 400㎡이상 숙박시설 등의 입지금지 하수처리장 배수구역내는 규제하지 않음	방류수 기준은 BOD 30ppm으로 강화 400㎡미만 오수배출시설에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축산시설	기업형 축산시설 입지금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 타	골프장 및 가두리양식장의 수질관리 기준 강화 ※ 골프장은 상수원 20km밖에서 BOD 10ppm 처리 ※ 가두리양식장의 신규면허 금지	

800㎡ 이상의 일반건물, 400㎡ 이상의 숙박시설도 Ⅱ권역에는 입지가 가능하며, Ⅰ권역이라 하더라도 조건부로 설치가능하다. Ⅰ권역에만 입지를 금지하였으나,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이나 간이오염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가능할 경우는 입지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반도체 업체 등 무공해 업소나 적정 관광시설을 유치할 경우 이상적인 전원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며 토지의 가치도 계속 높아져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룩하게 될 것이다.

특별대책지역내 호텔·여관 및 식품접객시설 3,268개 중 400㎡ 이상 시설은 1.6%에 불과함으로 주민의 생계를 위하여 운영하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입지가 타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가능하다. 그리고 Ⅱ권역에는 오수만 잘 처리하면 어느 곳이든지 입지가 가능하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되면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보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동과 문래동은 대기오염으로 지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산·군산 등에서는 주민들이 공해공장 입주반대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반도체 업체 등 무공해업소나 적정관광시설을 유치할 경우 이상적인 전원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며, 외국의 예처럼 토지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피츠버그시의 경우 수질오염 주범인 카네기 철강공장 등이 주민의 반대로 문을 닫았고, 대신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컴퓨터 산업이 들어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룩하고 있다.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대상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행법 체계상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지가보상은 있으나, 국토이용계획 등에 따른 장래의 반사적 손실발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질보전 특별대책의 지정시에는 물의 혜택을 받는 수도권 시민과 상류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의 차원에서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에 수질보전 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이다.또한 이 지역에 유입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팔당호 유입 3개 하천(복하천·금남천·경안천) 및 대청호 유입 2개 하천(항건천·보청천)에 '90년도 사업비 4,547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준설 및 정비작업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90년도에 도로포장·하수도정비사업·불량변소개량 등 생활환경조성사업과 관광농업개발사업융자·농가소득원개발사업·영세축산농가지원·관광농장조성 등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90년 지원사업 현황

(천원)

구 분	계	수질보전 기초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계	67,849	45,758	14,895	7,196
팔당	43,647	32,827	5,880	4,940
대천	24,202	12,931	9,015	2,256

앞으로 경기도 및 충북지사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할 경우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의의는 광역적 수질오염원 감시체제로의 전환과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수질보전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의 민주성 등이다.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의의는

첫째, 개별적 수질오염원 감시체제에서 광역적 수질오염원 감시체제로의 전환이다. 상수원수라는 대단히 큰 사회적 효용이 있는 팔당호와 대청호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는 유역관리체제는 불가피하다. 이는 앞으로 단계적인 총량규제조치로 발전되리라 본다.

둘째,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도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지만 지나친 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금번 팔당·대청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종합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정책기조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오수다량배출시설은 정부지원하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여야 입지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셋째, 수질보전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의 민주성이다. 환경의 보호로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환경정책형성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주민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바, 팔당·대청 특별정책의 경우도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소득원 개발사업이나 생활환경조성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앞으로 팔당·대청 상수도 특별종합대책이 그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향후 팔당·대청호 이외의 수질보전정책도 금번 대책을 크게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농지가격 하락은 새로운 농지제도 때문인가

안종운
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장

농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농지거래가 한산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생겨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비농민에게도 농지매입을 허용하는 등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농지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농민의 재산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다.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로 농지가격 상승 진정돼

금년말에 이르러 농지거래가 한산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농민이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마치 농지매매증명제도를 강화하여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데서 생긴 것으로 보고 비농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증명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효과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작년 하반기 이래 전국에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어와 대도시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지지역의 임야와 농지까지도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이 저하되는가 하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된다는 사회의 각 계층간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치유하고자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지금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검찰·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상습투기자의 자금을 추적하고, 투기지역의 농지매매증명허위발급사례를 집중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가공시제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확대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토지세를 신설하는 등 토지공개념법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부동산투기열기가 진정되면서, 신규아파트개발지역·도로개발지역·공단조성지역 등 구체적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토지거래가 한산해지고 이에 따라 가격이 종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등 전반적으로 진정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농지의 경우 농민보다는 자금동원의 여력이 있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이 없어지고, 최근 종합토지세 등 세금 중과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농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며, 그동안 농지거래가 한산했던 것은 벼생육기인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농지매매 비수기인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매매증명발급을 강화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이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지매매증명제도의 보완내용면에서도 농지매매를 확인하는 사람을 이동장 · 영농회장 2인에서 농민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농민조직인 농지관리위원회의 3인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민의 농지투기를 억제하는 조치는 과거보다 강화했으나, 농사짓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는 통작거리를 4km에서 8km로 확대하여 농지거래 요건을 대폭완화하였으므로, 이번 농지매매증명제도의 보완으로 오히려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은 억제되어야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제한하고 있는 농지매매증명제도의 강화로 인하여 농민이 농지를 팔기가 곤란해지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는 결국 농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농지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농지매매증명제도는 경자유전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단행된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5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정신에 따라 농지를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자경농민인지의 여부, 농지소유상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만 농지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규제하여 농지를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농지매매증명제도의 목적이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열기가 진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토지거래가 한산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농지는 농업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농지자경능력증명서발급제도를 운영하여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적극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농지매매증명제도는 첫째, 농민입장에서는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억제함으로써 농업의 기본적인 생산요소이고, 농업의 기반이며, 농민의 생활터전인 농지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민의 소유로 남아있게 하여 이들 농민의 생활과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하겠다.

둘째, 농업측면에서도 자경농민이 자기농지를 경작하게 됨으로써 소작에 의한 경우보다 소작료 부담이 줄게 되어 농업생산비가 절감되고 또한 자기 농지소유에 대한 애착과 성실경작으로 땅심을 높이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공헌하여 왔다고 하겠다.

셋째, 이 결과 농지매매증명제도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식량을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래의 농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70년대 초까지 부족했던 주곡을 이제는 완전히 자급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전체적인 국민경제개발과 정치 ·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농지매매증명제도가 농민의 손에 농지를 남아있게 하고, 농업의 생산성향

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사회의 안정에도 이바지하여 개인과 국가목표간에 별 마찰없이 조화를 이루어 시행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지를 대지·공장부지 등 타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농민입장에서도 쌀 소득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쌀 생산위주의 농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이 농민개개인의 이익과는 반드시 합치하지 않는 현실때문에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생산요소로서의 농지는 농민의 손에 돌아가도록 하면서 이들 농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농민의 농지투기는 억제하되 생산요소로서의 농지는 농민의 손에 돌아가도록 하면서 이들 농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발전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꼭 보전해야

이와 함께 농지의 보전이나 개발방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농지보전방식은 국민식량이 모자라는 시대이던 1972년에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상대농지제도였다.

이러한 절대농지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 2,127천*ha* 중 약 64%인 1,350천*ha*의 농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었고, 이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어려워 농어민의 소득원개발, 생활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이용 및 전용조차 제약되어 농어민의 불편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지를 국민식량의 안정된 공급이라는 국가목표와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생활편익증대라는 농민개인의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 농업용수개발 ·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여 이 지역안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며, 기타의 농지를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하여 농어민의 소득향상이나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이용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우량농지는 보전이 잘되고, 생산기반투자가 집중되고, 기타농지는 다양한 활용이 쉽게 되는 등 농지이용체계가 조화있게 지역별로 이루어지게 되고, 농지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다년성 농작물 재배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하고, 관상수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면 재배할 수 있게 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 창고 · 양어장 등 농어업용 시설이나 마을회관 · 어린이놀이터 등 마을공동 편익시설 설치도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한 지난 9월 8일의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완화조치를 보면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소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하겠다.

농지가격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농지규제완화, 새로운 농지보전제도의 도입이라는 정책 전환시점과 맞추어, 농지는 농민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농지가격이 올라야 농민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잘사는 농민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농지가격이 높아야 좋으냐 적정수준에서 안정되어야 좋은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농지가격이 높아야 좋으냐 적정수준에서 안정되어야 좋으냐 하는 문제는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먼저 농지를 농업의 기본적인 생산요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안정되어야 적정가격의 농산물 생산과 구조개선이 용이하기 때문에 농업생산측면과 장기적 농업발전측면에서는 농지가격이 적정수준에서 안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반면 농지를 농민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농하거나, 시급한 상황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가격이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정책과 경자유전의 실현을 통한 농촌사회의 안정구축이라는 차원과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투기억제시책을 완화하여 농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외국에서도 농지를 생산요소로 보아 가격의 안정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한편, 농지가 비농민에게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농지가 농민의 손에서 도시민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고, 농민은 재산없는 과거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농민은 농지를 팔아 이농이 쉽겠지만, 이 다음 농업을 담당할 후세대 농민은 결국은 비싼 농지를 사지못해 도시민소유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떠돌이 농사군에 지나지 않게 될 불행한 현실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도 비농민소유농지가 매년 약 15천*ha*가 증가하여 전체농지의 21.7%인 462천*ha*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비농민의 농지매입은 앞으로도 계속 억제되어야 하고, 농지가격도 적정수준에서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또 하나의 멀고도 가까운 이웃

한 · 소 통상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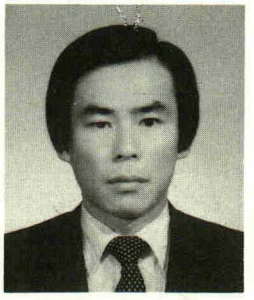

정태신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사회주의 국가로는 물론 동구권 국가로 불리우는 것조차 싫어하는 유럽 어느 나라의 주한 상무관으로부터 자신이 부임후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과거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도 머리에 뿔나고 손등에 털이 수북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한국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다는 반농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문을 열게 될 주한 소련내사관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마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울에서 소련 교향악단의 연주와 발레단의 공연을 감상하고 그들의 서커스에 즐거워할 만큼 소련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양국을 오가고 수많은 국내 기업인들이 레닌그라드에서 하바로프스크까지 소련 전역을 누비고 있다.

지난 9월 30일의 역사적인 수교이전부터 한 · 소간의 교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급속한 신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87년에 2억불이던 교역규모가 작년에는 그 세배가 되는 6억불로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8월까지의 교역량이 5억불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신장세는 수출에서 두드러지는데 87년 이후 매년 두배로 늘어온 수출이 금년 6월말에는 이미 작년말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수입은 작년에 4억불로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비교적 낮고 특히 금년에는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대소 무역수지에서 86년 이후 적자가 계속되던 것이 올해에는 흑자로 바뀔 전망이다.

교역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거의 모든 품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자 · 전기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VCR은 단일품목으로서 지난 8월말까지 대소 수출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비누, 치약, 신발 등 소련이 가장 부족을 느껴왔던 생필품은 상반기 중에는 수출이 급격히 늘다가 하반기부터는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데 이는 소련의 국내 공급능력이 확충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한편, 수입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특히 원면, 수산물, 선철, 니켈괴 등의 수입이 격감하였다.

교역형태에 있어서는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거래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직접교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소련의 외환부족 문제해소에 도움이 되는 연계무역도 부분적이나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중에는 소련산 농축우라늄의 수입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연계되어 국산가전제품이 수출될 예정이다.

한편 대소 플랜트 수출과 투자는 삼성전자의 VCR공장과 진도의 모피의류매장이 진출해 있는 정도로서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소련의 정부기관,

소련과 국내의
백화점이 공동으로
물산전을 가졌다.

대외무역기관, 기업 등과 의향서를 교환하기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아 여건만 성숙되면 제조업은 물론 산림개발, 호텔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사업이 단시일내에 가시화될 것이다. 이밖에 기술협력분야에서도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소련국가과학기술위원회(GKNT)간, 그리고 양국의 특허당국간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제 양국간 경제교류를 활발히 해줄 다리는 놓인 셈이다. 수교도 되었고 무역협정 등 경제관계협정들도 연내에 체결될 것이다. 모스크바와 서울에서는 KOTRA 무역관과 소련연방 상의사무소가 오래전부터 경제교류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한·소통상의 전도가 탄탄대로는 아니다. 소련이 서방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협력상대가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들은 70년간 굳어온 이념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탈바꿈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과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빵을 사기 위한 줄이 과거보다 더 길어지고 많은 실업자도 생겨났다. 10월혁명후 경제체제개혁상의 시행착오를 여러번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체제선택의 고통과 전환기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자본, 기술과 경험을 원하고 있다. 소련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의 1백배에 달하는 면적에 2억9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연간 수입액이 1,100억불을 넘는 거대한 시장이다.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주요자원의 생산량이 세계제일이며, 기초과학과 첨단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들은 올바른 체제를 선택했고, 지금 겪고 있는 과도기적 어려움을 어쩌면 예상보다 빨리 해결할지도 모른다. 많은 소련사람들이 우리에게 늦기전에 와달라고 한다. 다른 서방국가들이 오기전에 빨리 서두르라는 그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어려울 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87년도 2억불이던 교역규모가 작년에는 2,3배가 되는 6억불로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8월까지의 교역량이 5억불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련이 요청한 물자의 공급과 주요 프로젝트 참여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지원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업계 지원이 확대되면 교역과 투자에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0억불이 넘는 중국과의 교역을 단기간내에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련으로의 진출에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소련의 경제개혁 진행상황을 잘 살펴

유엔에서 첫 한소 외무장관회담을 하고 있는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반 조성이 완료되고 업계지원이 확대되면 교역과 투자에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출해야 하겠다. 소련과 경제교류를 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인 루블화의 태환성, 가격결정, 연방정부와 공화국간 경제권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안이 최근 연방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었다. 그동안 대소진출에 있어서 불안요인이 되어왔던 소련경제개혁 방향의 큰 줄기가 잡힌 만큼 본격진출을 위한 세심한 준비를 서두를 때다.

둘째, 교역은 확대균형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다. 소련은 현재 체제전환의 혼란 중에서 엄청난 양의 소비재를 수입해야 하는 반면 경화수입을 위해 가급적 수출을 늘려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은 그들의 체제전환에 도움이 되는 교역을 하고 점차 교역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교역량을 확대해 나가되 수출입간 균형이 크게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투자는 우선 소련이 비교적 발전이 늦은 경공업분야에 우리의 기술과 설비를 가지고 중소규모로 진출한 후 현지적응을 해가며, 점차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소련측도 한국기업들이 중소기업분야에 많이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끝으로, 대소진출에 있어서 질서유지가 중요하다. 교역,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질서 교란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크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역시 중요한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의지이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먼저 차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불필요한 경쟁없이 질서있는 진출을 해나갈 때 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익도 극대화될 것이다. 나라경제

지역의료보험료의 올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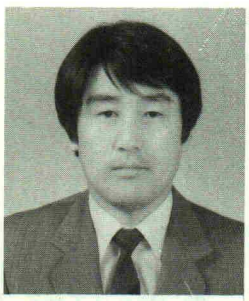

정병조
보건사회부 보험제도과장

'89년 7월 1일 온국민의 소망이었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큰 경제적 부담없이 손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동보험료는 종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계부담인 까닭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은 보험료 결정과정이나 부과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의료보험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료보험료는 이렇게 부과된다.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인 농어민·자영자 등은 공무원이나 직장근로자 등 임금소득자와는 달리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료를 직장조합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 조합처럼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모든 사람이 능력에 맞게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고 소득파악률이 높은 주민들에게 보험료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조합별 총 소요재정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든 적용대상자의 소득·재산·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저소득세대에 대하여는 조합별로 적용대상자의 5% 범위내에서 부과된 보험료의 50%까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고, 최고 보험료를 평균 보험료의 5~7배 수준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평균 보험료의 2~3배 수준에서 최고 보험료를 정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능력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소득이외의 재산 및 가족수 등에 따라 부과한다 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총보험료 부과목표액을 여러 요소에 배분하여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지역의료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이유는

지역의료보험료는 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이용회수, 의료보험수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회수가 최근 2년동안 근 100% 증가하였고, 의료보험수가도 같은 기간중에 누계치로 30.9%나 인상된 반면에 보험료는 이에 맞추어 적절히 인상되지 못하여 대다수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들어 재정적자가 나타나는 조합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였던 바, 각 조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9월말 현재 농어촌지역조합은 136개 조합에서 평균 30.9%, 도시지역조합은 71개 조합에서 평균 23.1%를 인상하였다.

그렇지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수준은 '90년 8월 현재 도시지역이 9,880원, 농어촌지역이 7,930원으로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나라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이웃 일본의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수준과 비교하면 11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률(수진율)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보험재정 압박 및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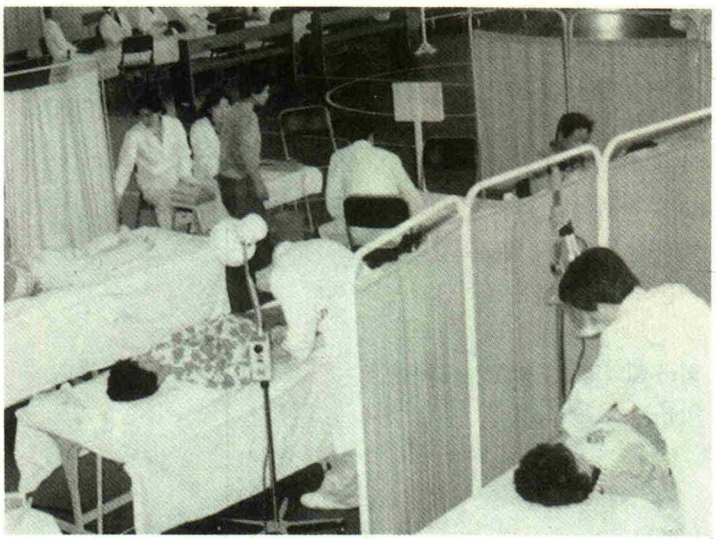

정부는 지역의료보험료 경감을 위해 상당액을 재정에서 지원

정부는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지역의료보험 총 소요재정의 50% 수준으로서, '88년 94,559백만원에서 '90년 364,742백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33.2%를 증액하여 485,89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1〉 연도별 정부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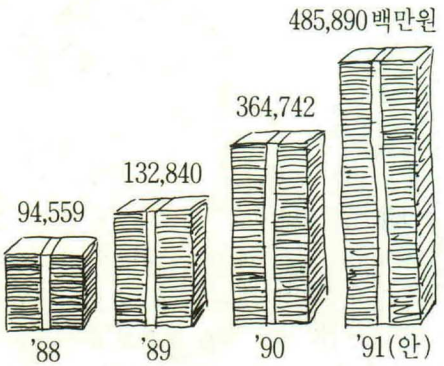

일부에서 의료보험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일부에서는 소득계층간 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직장조합, 지역조합, 공·교조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다보험자 방식의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험자가 전국민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와 자영자간 그리고 자영자 상호간에는 소득의 형태가 달라 소득파악률의 차이가 클뿐 아니라(임금근로자 100%, 농어촌주민 60%, 도시자영자 12%) 소득계층간, 도·농간에 의료이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에는 오히려 농어촌주민이 도시주민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는 소득형태나 의료이용수준이 유사한 집단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의료보험을 운영토록 하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조합별 총소요재정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든 적용 대상자의 소득 · 재산 · 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표 2〉 계층간 의료이용실태

구 분	수진율[1] (회 / 연)	1인당 진료비 (원 / 연)
직장근로자	3.047	64,596
공 무 원	3.555	77,648
농어촌 주민	2.477	32,999
도시자영자[2]	2.456	56,655

1) 약국이용건수는 미포함된 수치임.
2) 도시자영자의 경우는 '89년 6월~12월 실적을 연간실적으로 환산추계한 수치임.

다같이 협력하여 의료보험을 정착시켜야

이제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한지 1년여가 지났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료보험을 실시한 국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몇년간은 보험급여비가 급증하게 되고, 따라서 보험료 인상률도 다소 높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의료기관 이용률이 점차 안정되면서 보험급여비가 안정되어 보험료 인상률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서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 중요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지만, 국민 각자가 상부상조의 정신에 터잡아 이룩한 전국민의료보험의 참뜻을 되새겨 보면서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자제하고 보험료를 제때에 자진납부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등 온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통신선진국을 향한 디딤돌

통신사업 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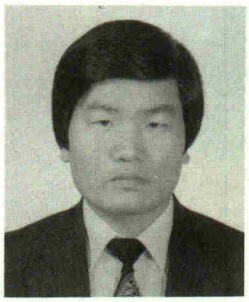

천조운
체신부 통신기획과장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통신사업에 경쟁원리의 도입을 추진

지난 80년대는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정보사회에 조기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다가오는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전기통신이 결합하여 정보의 축적·처리·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해지게 됨은 물론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결합에 의한 정보통신이 가사, 기업활동, 행정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도입되어 인간의 제반 사회·경제·생활양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전기통신은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전달 매체로서 국가경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사회기반구조의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활동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간의 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보사회의 기반인 전기통신시설 특히 전화시설면에서 금년 10월 1,500만 회선을 돌파하여 기본통신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아시아에서 2위, 세계에서 10위권에 도달함으로써 선진국수준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술개발측면에서도 산·학·연·관간의 긴밀한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여 4M DRAM, 국산전전자교환기 등 반도체와 교환기 분야의 첨단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특히 최첨단 통신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전전자교환기(약칭으로 TDX라고 부름)는 이미 240만 회선을 국내에 설치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관련기관 모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정부의 정책 특히 통신정책기능과 통신사업기능의 분리 및 분야별 전담사업자 육성정책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최근 통신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통신기술의 급속한 혁신 및 기본통신 수요충족 이후의 통신서비스수요의 다양화·고도화 그리고 범세계적인 통신사업에의 경쟁도입 및 규제완화 추세와 국내외부터의 통신시장 참여욕구 증대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선진 각국에서는 국가의 통신정책목표를 종래의 '기본통신 수요충족'에서 '정보통신의 국가 전략산업화'로 변경하고 있으며, '통신의 비교우위없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00년대의 자국통신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경영효율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통신사업에의 경쟁원리 도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전화보급면에서 1가구 1전화를 달성한 이후 우리나라는 이제 1가구 1컴퓨터 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화 · 고도화해 가는 국민들의 정보 · 통신수요에 부응, 고품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전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신정책방향을 재검토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체신부에서는 88년 이후부터 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89년에는 정보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 각계 전문가를 총망라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발전협의회에서는 1년여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본통신을 포함한 우리나라 통신산업 전분야에 경쟁을 도입할 것을 건의한 종합건의서를 체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체신부에서는 동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2월 통신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기본방침을 확정한 후 수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와 공개토론 등을 개최하여 관련기관 및 일반여론을 수렴하여,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 제도 새로 분류

통신사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시내전화부문은 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계속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내전화부문에 비해 투자규모가 비교적 작고 기술변화가 급속한 장거리 · 국제 및 이동통신분야는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해 나가며,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누구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5,000만번째 전화회선 가설을 위한 점검모습.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별로 규제의 내용과 정도를 적정화해 나감으로써 각 사업자들의 창의적 활동을 자극하는 한편 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가 안정적 ·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중통신사업자제도를 새로이 분류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사업자 분류는 통신회선설비 보유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회선을 보유한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업무구역, 제공서비스의 종류 및 기술적 특성을 기준으로 전국 규모의 설비를 보유하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였다.

〈표 1〉 신구 사업자제도 비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개정	○ 통신설비 보유 ○ 통신설비 임대	○ 자기업무용 통신설비 보유 ○ 지역적, 기술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	○ 통신설비 임차 ○ 전신, 전화서비스금지
현행	공중통신사업자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

사업부문별 구조조정 계획의 추진방향

'일반통신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영역은 전화 · 전보 · 가입전신 · 정보통신 · 전용 · 대여 등과 각종 음성 · 비음성 복합전송서비스 및 전화망의 확장서비스 등으로 일반통신사업에 대한 경쟁도입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를 감안하고 국가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점 또는 과점 등 제한적인 형태의 경쟁을 도입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정통신사업자'는 자기업무용 통신설비를 보유하되 업무구역, 제공서비스의 종류 또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특정통신사업자는 독립적인 통신망을 구성하되, 특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독립적인 제공이 가능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통신사업자의 통신망에 대한 접속이 전제되더라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 독립적인 통신망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통신사업 구조조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인데 그 1단계로는 현행법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제한적인 형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2단계로는 현행법을 전면 개편하여 사업자체제의 재편성 및 각 부문별로 적정한 형태의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특정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은 무선전화(차량전화 및 휴대용전화 등) · 무신호출(삐삐) · 무선데이타 · 주파수공용통신 등 이동통신분야와 선박자동전화 · 항만전화 등 항만통신분야 그리고 항공통신분야로 구분되며, 특정통신분야사업에 대한 경쟁도입은 각 서비스별로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여 복수경쟁구조를 유지하되 시장규모, 국내외의 개방추이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임차한 통신회선에 정보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전신 · 전화 이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에 의하여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으로 예시될 수 있는 서비스는 각종 정보은행(DB)서비스 및 정보처리(DP)서비스와 전자사서함(E-Mail) · 거래정보교환(EDI) · 메시지교환(MHS) · 컴퓨터예약서비스(CRS) 등 데이타의 축적, 전송 및 처리, 전송서비스 등이 될 것이며, 사업수행을 위해 일정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자유로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다수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구조조정의 단계별 추진 일정

한편 금번 통신사업 구조조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인데 그 1단계로는 현행법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제한적인 형태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2단계로는 현행법을 전면 개편하여 사업자체제의 재편성 및 각 부문별로 적정한 형태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조치(1단계)

체신부에서는 지난 10월 22일자로 한국전기

통신공사와 한국데이타통신(주)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전화사업에 한국데이타통신(주)를 참여시켜 국제음성통신분야에 경쟁을 도입하는 한편, 정보통신사업에 통신공사를 참여시켜 통신공사로 하여금 다양한 DB 및 DP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여 이 분야의 조기육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다.

영역조정에 의거 통신공사와 데이타통신(주) 양사가 신규사업을 곧바로 준비할 경우 빠르면 92년경에는 국제전화분야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그 때가 되면 국민들은 통신공사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서비스와 한국데이타통신(주)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서비스 중에서 보다 저렴하고 품질좋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항공통신분야는 금년말까지 콘소시움을 구성,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91년 3월까지 사업자 지정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91년말까지 사업준비를 완료하게 되면 92년초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은 금년 10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됨으로써 조기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법령개편 후 조치(2단계)

1단계로 현행법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쟁을 도입한 이후 2단계로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체제의 재편성 및 각 사업부문별 적정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통신사업분야에 있어 통신공사와 한국데이타통신(주)를 새로운 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 국제분야의 경쟁성과를 고려하여 장거리통신분야에의 경쟁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장환경 및 경쟁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특정통신사업분야에서는 한국이동통신(주), 한국항만전화(주) 및 항공통신사업자를 개정된 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 각 사업영역별로 경쟁을 도입해 나갈 예정으로 무선전화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국이동통신(주) 이외에 1개의 전국사업자를 새로 허가하고, 무선호출 · 무선데이타 · 주파수공용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서비스지역별로 각각 1개 사업자를 새로 허가하여 서비스별로 특수경쟁구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통신분야는 항만전화(주)로 하여금 독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제한적인 형태의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항만전화(주)가 연안선박전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항공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여행정보(주)에 대해서는 항공예약서비스 등 현재의 사업범위를 계속 유지토록 할 것이다.

부가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는 현행법의 개정으로 사업체제가 재편성되는 것에 맞추어 현행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 사업영역도 확대하여 전신 · 전화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음성복합서비스도 허용해 나갈 것이다.

통신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대 효과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우리보다 앞서 경쟁을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통신사업 구조조정으로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자간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보급 경쟁이 촉진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통신편익증진과 전체 산업의 정보화 촉진 및 비용의 합리화로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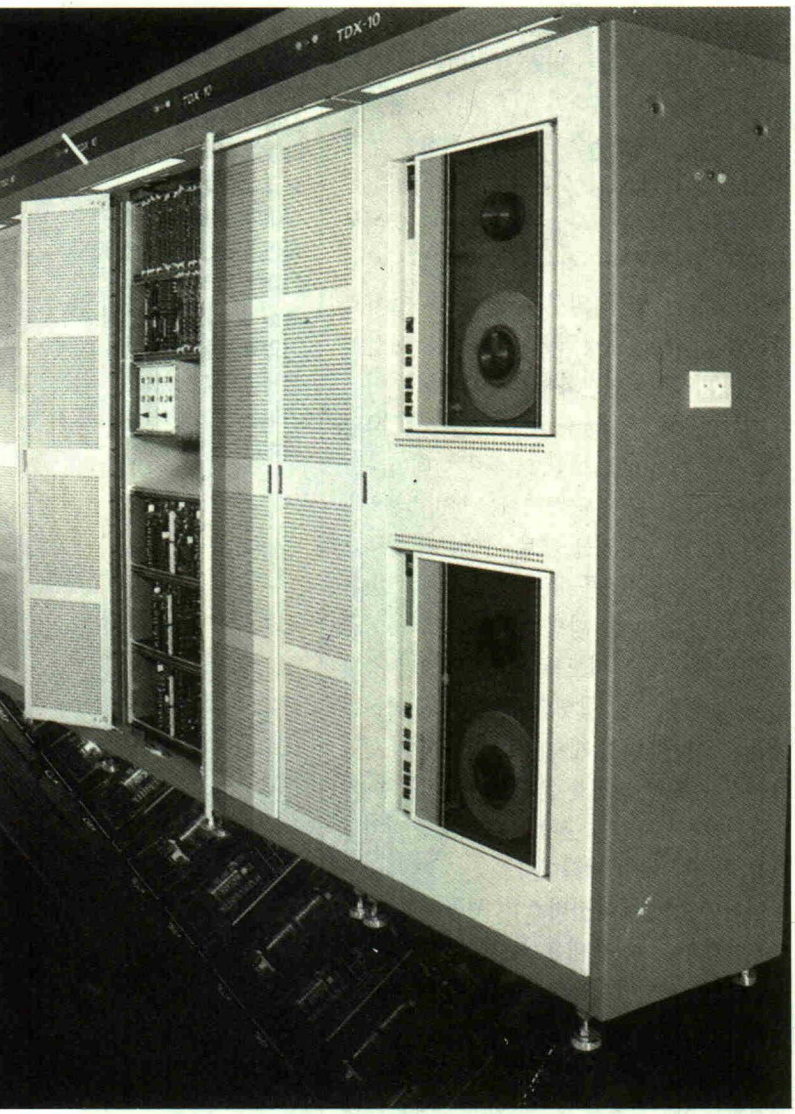

최첨단 통신기술의 결정체 전전자 교환기. 이미 240만 회선을 국내에 설치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출까지 하고 있다.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장거리시장 경쟁도입 이후 전체 통화수입이 403억달러에서 435억달러 규모로 증가하였고, 통화량도 1984년 375억분에서 1988년 597억분으로 연평균 15%가 증가하였으며, 실수입면에서도 1984년 160억달러에서 1987년 215억달러까지 증가하여 연9% 이상의 신장률을 보인 바 있다.

요금면에서는 미국전신전화 주식회사(AT & T) 분할전에 비해 장거리요금이 25.5% 이상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쟁을 도입한 일본 ·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R & D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우 AT & T 분할 이후 연간 4~5%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 85년 NTT 민영화 이후 투자자율화 및 경영다각화 전략하에 R & 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 바 있다.

미국 정보통신청(NTIA)에서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여 경쟁을 도입한 각국 모두 대체적으로 요금면에서 최소한 20% 이상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되고 있으며, 경쟁도입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속 신장하여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정보사회를 앞당기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금번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으로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자간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 보급 경쟁이 촉진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통신편익증진은 물론 금융 · 보험 · 관광 기타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정보화 촉진 및 비용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기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통신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분야에의 기술개발도 촉진됨으로써 통신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 · 통신관련 타 산업분야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시장창출 및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금번 통신사업 구조조정이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조기 육성 및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어 2000년대 초까지 통신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라경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정책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투기억제시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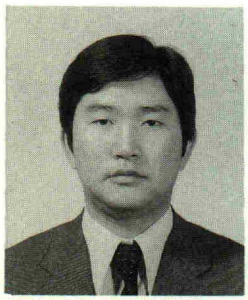

최종수
건설부 주택정책과장

우리의 주택시장은 인구증가와 대도시 집중화로 매년 35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야만 주택보급률이 악화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2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기 전에는 평균 20만호에 불과하여 주택보급률 저하와 주택가격상승 등 주택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100인당 주택수, 주택의 호당평균면적,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현대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자연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구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건설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의 양적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부족은 현저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저소득가구는 전·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시장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이중가격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주택이 주거목적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 경쟁률 심화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도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대도시 인구의 지방분산과 함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주택투기 및 가수요 억제방안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200만호 건설

주택보급률 저하로 인하여 서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88~'92년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제6공화국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었다.

〈표 1〉 200만호 주택건설계획

(천호)

구분	계	'88	'89	'90		'91	'92
				계획	9월말		
계	2,000	317	462	450	559	400	371
		(340)	(360)	(400)		(430)	(470)
공공부문	900	115	161	200	160	210	214
영구임대	250	-	43	60	41	70	77
근로복지	150	-	-	40	22	50	60
사원임대	100	-		20	7	30	50
장기임대	150	52	39	25	44	20	14
소형분양	250	63	79	55	46	40	13
민간부문	1,100	202	301	250	399	190	157

※ '88, '89는 실적임. ( )은 당초 계획임.

그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90만호와 민간부문 110만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영구임대 25만호, 근로복지

및 사원임대 25만호, 장기임대 15만호 및 소형분양 25만호로 계획되어 있다.

주로 공공부문은 주택구입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계층에게 공급되며, 민간부문은 자기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계층에게 주택시장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정부의 임대주택은 대부분 5년 이상 임대후 분양을 전제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이었으나, 생활보호자 또는 의료부조자 등 도시영세민은 주택구입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주거마련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계층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3~4만원선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평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들 계층에게 근로복지주택 15만호와 사원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택지·세제·금융상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중산층화 가능계층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장기임대 및 소형분양주택 4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이미 88~89년간 78만호가 건설됨으로써 계획 70만호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90년도의 경우 9월말 현재 55.9만호의 건설실적을 보임으로써 45만호의 건설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65만호의 건설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택지 및 금융지원이 수반되어야 달성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택지 5,762만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316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미 88~89년간 2,246만평을 공급하였으며, 90~92년에 걸쳐 3,516만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92년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90만호와 민간부문 110만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영구임대 25만호, 근로복지 및 사원임대 25만호, 장기임대 15만호 및 소형분양 25만호로 계획되어 있다.

〈표 2〉 주택지 공급계획

(만평)

구 분	계	'88~'89	'90	'91~'92
택지소요	5,762	2,246	1,278	2,238
택지공급	6,905	2,349	1,473	3,083
공공	4,726	1,505	1,190	2,031
민간	2,179	844	283	1,052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64조원이 필요한 바, 이중 23조원은 재정, 국민주택기금 또는 민영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투기 및 가수요도 억제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함께 주택투기 및 가수요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는 세제개선,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제도개선, 등기의무화제도, 임대전문업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세제면에서의 억제방안은 다주택보유자의 재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중과하여 보유 및 이전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조세부담 효과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이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형주택은 중과함으로써 보유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의 40평 이상 대형아파트의 경우 과표가 시가의 10% 정도에 불과한 상태[1]이므로 세제개선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표현실화를 통하여 보유비용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무주택실수요자들에 대하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는 방안으로서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2순위로만 인정하고, 장기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민영주택분양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아파트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재당첨금지기간을 동시에 적용하고, 주택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첨자가 계약 및 입주를 하도록 관계규정을 재정하였다.

부동산투기수단 중의 하나인 미등기전매는 지금까지는 세무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본적인 투기억제수단으로서는 미흡하여 금년 9월 2일부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등기가 의무화되고 미등기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토록 하여 부동산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거주관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1가구다주택보유자 등의 음성적인 주택임대를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 임대전문업자로 육성하고자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기타 소형주택건설확대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의무비율을 당초 6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18평 이하를 35% 이상 건설토록 세분화(91.1.1 시행) 하였으며 주택분양시 해당 지역주민 우선분양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1967년 이후 주택경기 변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4~5년의 침체기와 3년 정도의 호황기를 주기로 경기변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87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1988년 이후 경기호황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경기는 1990년을 정점으로 경기가 수축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유가인상이 향후의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재비 등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주택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석유류를 중간원자재로 사용하는 공산품 및 서비스가격의 상승으로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실물선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유가파동 이후에는 경제성장 둔화 등 주택경기 위축으로 지가와 집값 모두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주택미분양사태를 예상하고 있으나 '90년 9월말 현재 청약예금가입자가 83만명, 주택청약저축자가 135만명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는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다만 향후 5개 신도시에서의 대량동시분양과 상환사채발행의 확대 등에 따라 일부 지역 및 일부 평형에서부터 미분양주택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91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도권지역에서도 주택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미분양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시책 등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함께 세제 개선,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제도 개선, 등기의무화 제도, 임대전문업자제도 등 주택투기 및 가수요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 강남구 압구정동 48평 아파트의 경우 시가는 3~4억에 이르고 있으나 '89년도의 재산세 과표는 2,500만원에 불과하며 재산세액은 1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주도의 인력양성
사업내 직업훈련 활성화 시책

김용달
노동부 훈련기획과장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력수급문제

최근 신문의 노동·경제란에는 '기능인력 절대부족', '제조업 및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외인력수입을 둘러싼 공방' 등 인력문제가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산업인력 양성분야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사업내 직업훈련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전반적인 어려움에 비추어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산업인력수급문제가 경제의 주요 변수로서 경제계의 관심의 촛점으로 부각된 것은 크게 보아 다음의 세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사회가 첨단화·자동화·정보화되어 가는 추세로서 지금까지의 기능이나 기술수준으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근 3~4년간의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이 일본·대만 등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훨씬 높아져 저임을 바탕으로 했던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보호무역 장벽과 수입개방 압력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길은 첨단기술개발과 이를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수출원가 상승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다른 기업에서 양성한 인력을 쉬운 방법으로 데려다 쓰는데 익숙해졌고, 심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서 10여년간 공들여 양성한 핵심간부인력까지 스카웃해 가는 일이 일어나는 데다가 젊은층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일하면서 많은 수입이 생기는 비생산적인 서어비스업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제조업 및 건설업에는 취업을 기피하는 경제의 早老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과소비 풍조와 함께 최종수요의존형 서비스 산업부문에 인력공급이 편중되고 제조업부문의 기능인력은 절대부족한 상태인데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업체의 인력부족현상은 산업의 공동화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라면 '90~'96년 중 매년 7~11만명 정도의 기능

〈표 1〉 기능인력 수요

(천명)

	'90	'92	'94	'96
기능인력추가소요	227	254	266	245
'90년 현재 공급가능	158	158	158	158
-직업훈련기관	61	61	61	61
-실업계고교	78	78	78	78
-일반계고교	19	19	19	19
부족인원	69	96	108	87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인력양성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공업계 고교를 확대 개편하고 아울러 첨단산업 관련학과를 위주로 한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늘리면서 이와 함께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으로부터 제조업부문으로 인력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각종유인 및 억제시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이 기술개발 및 제품의 고급화에 부응하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훈련기관을 확충하고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기관을 내실화하여 '90년 현재 직업훈련 수용능력 70천명을 '96년에는 127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2〉 기능인력 양성계획

(천명)

	'90	'92	'94	'96
계	61	80	103	127
공공직업훈련	21	32	41	53
민간부문	40	48	62	74
사업내직업훈련	19	26	36	45
인정직업훈련	21	22	26	29

이중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업자체 소요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3월내지 1년의 기간으로 單能工을 양성하여 훈련기간의 2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업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직업훈련은 2~3년간에 국가기간산업 및 수출전략직종 위주의 다능공을 양성하여 해당 업종의 기업에 공급해 주고 있다.

본래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의 공급은 당해 산업사회가 맡아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정부가 양성·공급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자체 내에서 소요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손쉬운 직업훈련분담금납부를 선호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과 지방업체의 인력부족현상은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할 만큼 심각하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매년 7~11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자체훈련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훈련원은 9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3〉 '90년 사업내 직업훈련 현황

	계	3,000인 이상	1,000~3,000인 미만	1,000인 미만
대상업체	2,575	144	356	2,075
훈련원수	121	65	34	22

민간직업훈련은 왜 중요한가

한편 공공직업훈련은 훈련을 위한 별도시설, 장비, 실습재료 및 훈련교사 등이 필요하며 직업훈련원 1개소 설립시(500명 수용규모) 약 100억원이 소요되고 훈련생 1인당 양성비용도 1000만원이 필요하나 사업내 훈련의 경우에는 기존의 생산시설과 생산요원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공훈련비의 20%미만의 비용으로도 직업훈련이 가능하고 훈련생의 생산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사업내 현장훈련이 절대 유리하다고 본다. 아울러 종래의 기능·기술 및 지식으로는 고도로 변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지만 민간훈련은 이를 탄력성있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공공훈련원의 '90년 상반기 수료생 1만명에 대한 구인배율이 5배수에 달하는 등 기능인력이 크게 부족하지만 공공직업훈련 예산이 전체 노동예산중 60~70%를 점하고 있어 더이상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훈련의 촛점을 사업내 직업훈련에 두어야 한다.

인력양성은 사업내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따라서 현재 2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하여 당해년도 임금총액의 0.2% 범위의 비용을 직업훈련에 사용토록 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96년까지 1%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훈련비율 고시는 전년도 12월에 하던 것을 차년도 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1년도분 직업훈련비율 고시는 9월에 앞당겨 하였고 훈련실시비율도 '90년도 0.3%에서 '91년도에는 0.479%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를 실제훈련인원비율로 보면 200인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은 '90년 1.4명에서 1.9명으로,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의 기업은 '90년 11명에서 '91년 16명으로, 3,000명 이상 기업은 154명에서 '91년 229명으로 조정하였다.

〈표 4〉 기업규모별 평균훈련비율

(%)

	'91		'90		'91차등
	비율	훈련인원	비율	훈련인원	적용율
전산업평균	0.479	20명	0.300	15명	
3,000명 이상	0.602	229명	0.374	154명	1.5
3,000명 미만 중소기업초과	0.442	16명	0.258	11명	1.0
중소기업	0.165	19명	0.126	14명	0.4

또한 훈련비율 결정시 산업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양산업인 석탄산업은 70%, 직물제품제조업 등 9개 업종은 노동집약적 경영악화를 고려하여 30%를 경감조치하였다.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체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경제가 극심한 국제경제의 험한 파도를 넘어 온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는 인력개발 및 R & D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업이 훈련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경우 15억원, 개인의 경우 3억원을 연리 6%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여 주고 있고, '91년부터는 훈련실시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표준훈련비를 현실화시키는 한편,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인건비·훈련수당·재해보험료 등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훈련투자비용의 10% 만을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15%로 확대하여 주도록 하였고, 직업훈련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직업훈련원의 교사를 사업내 훈련원에 파견하고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공동훈련원을 운영토록하거나 위탁훈련제도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 공동훈련원에 대한 설립지원을 위한 건축비 및 훈련장비구입비 지원자금 114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경제가 극심한 국제경제의 험한파도를 타고넘어 온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는 인력개발 및 R&D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업은 스스로의 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한 인력양성에 노력하여 공공직업훈련사업과 상호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경제의 건실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석유사업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

고정식
동력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

페르시아만사태로 국제원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그동안 국제 원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유가완충용으로 적립해 놓은 석유사업기금은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없어 국제원유가가 오르니까 국내석유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일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페만사태 이후 국제석유시장의 현물가격은 30$ / 배럴 이상으로 뛰어올랐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가격도 금년 9월부터는 27$ / 배럴을 넘어섰으나 우리나라는 그간 적립해 온 유가완충용 석유사업기금을 사용하여 국내 유가를 인상하지 않고 대처하고 있다.

석유사업기금은 2차 석유위기 직전인 1977년 12월 석유사업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제운용은 2차 석유위기 당시인 1979년 7월부터 개시되었다.

석유사업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은 1차 석유위기 당시의 무방비상태를 거울삼아 석유의 비축사업, 유전개발사업과 그밖에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석유수급안정을 기하는 한편, 고유가시대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치 당시인 1979년도 이후 비축사업의 추진을 위한 석유비축기금과 석유가격안정을 위한 석유안정기금이 각각 운용되어 오다가, 1983년부터는 유전개발을 위한 석유개발기금이 추가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1986년 이래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0$ 수준으로 급락하고 이에 따라 일부는 국내가격을 인하하고 잔여재원을 기금으로 징수하게 되었으며, 종래의 3개 기금은 석유사업기금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때부터 징수된 기금 중 에너지부문사업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국제석유가격의 재반등시 국내유가완충재원으로 적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수입시에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나, 비축용 석유, 윤활유,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 납사 및 액화 천연가스(LNG)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석유제품(발전용 저유황연료유 등)의 경우에는 징수가 면제된다.

기금의 징수액은 국내가격에 반영된 기준비용(원유가 18$ / B, 달러 환율 710원)과 석유회사의 실제 발생비용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이 관련부처장관(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과 협의하여 고시하게 된다.

그러면, 석유수입업자는 고시된 기금을 석유수입 신용장 개설은행에 납부하게 되고

통관시에는 기금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게 된다. 이렇게 수납된 석유사업기금은 수납 즉시 기금계좌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걷어들인 석유사업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1990년 9월말 현재 거두어 들인 액수는 4조 3,456억원이며, 각종 사업과 예탁금의 이자수익 1조 1,219억원으로 총 5조 4,675억원이 조성되었다. 이중 73.6%에 해당하는 4조 229억원이 1986년 이후 4년여에 걸쳐 조성되었다.

석유사업기금을 어떻게 써 왔는가

석유사업기금의 용도는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석유의 비축·수송, 유전개발, 품질관리 및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정유시설현대화 사업, 석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유자금은 은행 또는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하거나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1990년 9월말 현재까지 조성된 석유사업기금 5조 4,675억원 중에서 3,581억원이 원유도입선 다변화·석유개발공사 운영·석탄산업 등에 보조지원 되었고, 잔여 5조 1,094억원 중 3조 1,148억원이 각종 투융자 자산으로 남아 있고, 여유자금 1조 8,439억원이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유가완충용 예비자금으로 정부재정 및 국책은행 등에 예탁되어 있으며, 나머지 1,507억원은 '90년 4/4분기로 이월되어 사용되고 있다.

석유사업기금은 그간 석유비축·유전개발·도입선 다변화 등 에너지수급 안정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기금의 설치 당시인 1979년 2차 석유위시기와 비교해 볼 때 석유위기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졌다.

석유사업기금이 있는데도 유가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석유가격은 크게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가격과 달러환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석유가격의 인상폭이 클수록 달러환율이 오를수록 같은 돈으로 완충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러환율이 720원으로 일정하고 원유관세율을 현재와 같이 10%에서 1%로 인하한 경우 현재 확보된 1조 8,439억원 및 비수기에 기금징수를 유예한 920억원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격인상 없이 버티어 나갈 수 있는 기간은 석유수입가격이 배럴당 22불 수준이면 약 1년 10개월이나, 35불이 되면 5개월 밖에는 완충기간이 지속될 수 없다.

또한 가격인상없이 완충재원 전액을 써버리

〈표 1〉 기금 자산현황('90년 9월 현재)

(억원)

구 분	금액	비 고
조 성	54,675	기금징수 43,456억원, 운용수익 11,219억원
보조산업	3,581	원유도입선다변화, 석탄산업지원 등
총 자 산	51,094	조성액에서 보조를 차감한 액수임
에너지산업투융자	31,148	석유비축, 유전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도시가스사업 등
투 자	9,630	
석유비축	9,339	비축시설건설 및 관리 2,276억, 비축유구입 6,613억
송유관건설	93	
유전개발	198	시추선운영
융 자	21,518	
유전개발사업	1,638	국내대륙붕 및 해외유전개발 사업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9,662	에너지소비절약사업 지원
도시가스사업	4,405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건설 및 LNG인수기지 건설지원
전원개발	3,061	발전소 건설자금 지원
석탄광개발	2,036	석탄광개발 및 저탄 사업지원
기타사업	716	민간비축지원, 송유관 건설, 탈황시설, 해외자원 개발
유가완충자금	18,439	재특 13,000억원, 금융예탁 4,239억원 등
이 월	1,507	'90년 4/4분기로 이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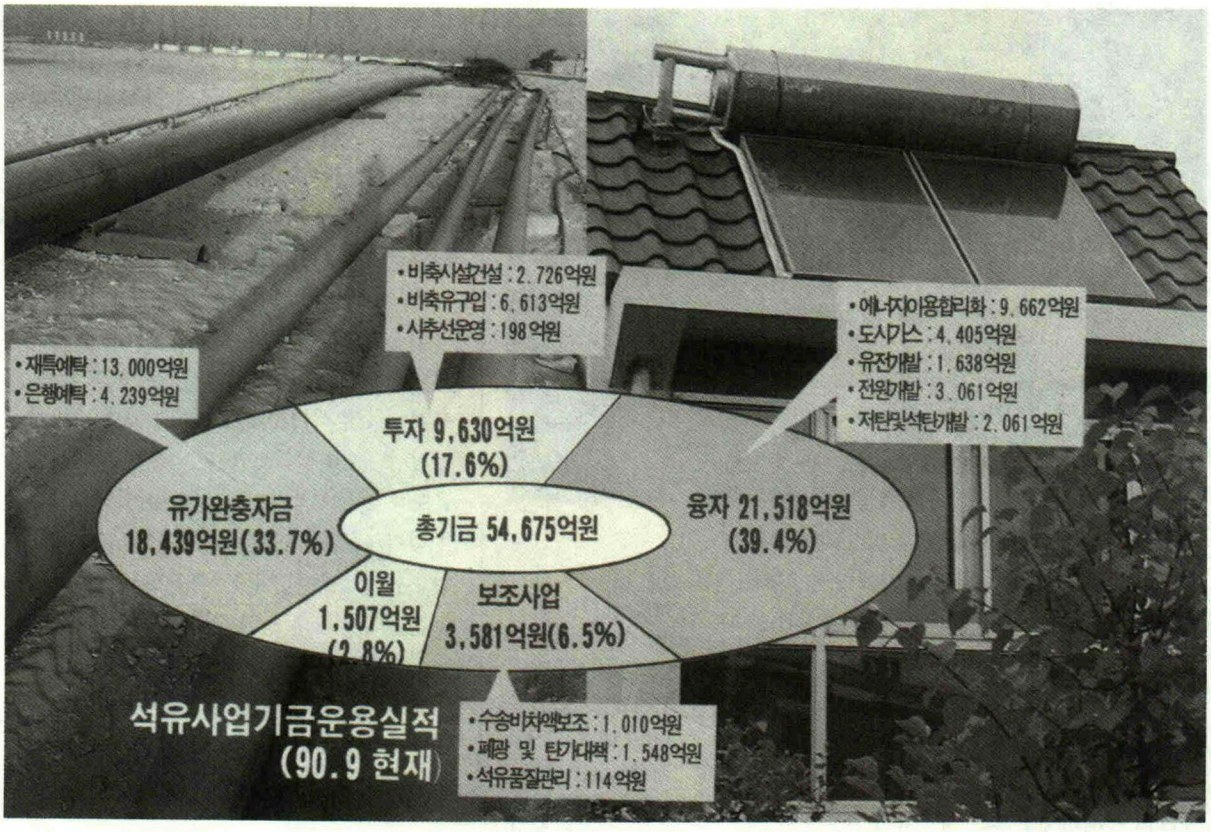

게 되면 완충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동안의 인상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그 충격은 막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유가완충재원은 단계적 가격인상과 병행하여 적절히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유사업기금 활용과 구조적 유가완충기능

항간에는 유가완충용 예비자금이 엉뚱한 곳에 유용되어 실제로 쓸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탁의 경우는 석유사업기금 중 여유자금을 연리 5%의 이자를 받고 1년 만기로 재정에 빌려준 것이며, 정부는 이 재원을 다른 재원과 함께 활용하여 도시영세민지원, 농어민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사업기금이 목적외로 유용되어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확보된 유가완충용 예비자금의 운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현재 국책은행 예탁금 및 '90년 기금운용계획 반영분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우선 이를 사용하고, 정부재정에 예탁한 돈도 '90년도 추경(안)에 2,000억원이 상환되도록 되어 있으며, '91년도 중에도 재원의 인출이 가능하므로 계속 이를 사용하면 된다.

〈표 2〉 유가완충용 예비자금 운용내역

(억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예탁	은행예탁	'90년 기금운용 계획반영분	계
13,000	4,239	1,200	18,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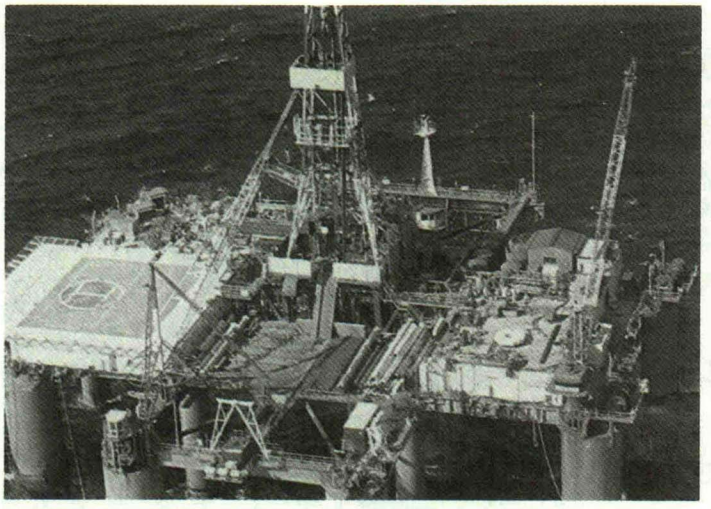

그리고 왜 조성전액 5조원으로 석유가격을 완충하지 않고 전체 기금 조성액의 1/3에 해당하는 1조 8,439억원만 사용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가완충기능은 석유사업기금의 설치목적 중의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며 석유사업기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석유비축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같은 생산량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종래의 1/2수준으로 낮추었다고 하면 에너지가격이 2배로 인상되어도 전체에너지 비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유가완충기능이다.

석유사업기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약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비축사업을 수행하여 현재 약 4천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고, 해외유전개발사업도 지원하여 일일 약 2만 5천배럴의 개발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완충기능은 우리 경제가 고유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국제원유가의 인상은 국내유가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성액 전액을 유가완충재원으로 소진하여 완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석유비축·유전개발 등 에너지수급안정기반을 다지는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석유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은 석유의 비축사업, 유전개발사업과 그밖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석유수급 안정을 기하는 한편, 고유가시대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은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

기술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부존에너지 자원의 빈곤을 본질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화하는데 따른 편의성·청결성·고품질화의 추구 등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석유사업기금은 기존의 석유비축사업·유전개발사업 등 기반구축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석유 및 기타 에너지자원의 개발·생산·가공 및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기술과 에너지소비절약기술 등 각 부문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석유사업기금 운용방법 개선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을 둘러싸고 지난 5공화국 시절 정치자금으로의 유용설 등 많은 의혹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수사결과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석유사업기금은 적법하게 운용되었고, 유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렇지만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정부기금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민간기금으로써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되던 석유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앞으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됨으로써 운용절차도 강화되는 등 석유사업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국가발전

과학기술 진흥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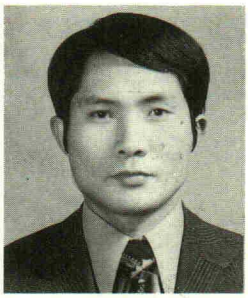

김대석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 사무관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빠르고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분단 45년만의 남북고위회담의 개최와 한소수교, 한·중간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의 진전 등 우리나라가 세계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강대국과 대등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페르시아만 사태의 장기화 조짐과 '90년대 세계의 신무역질서의 형성을 위한 UR협상의 진전, 미·일과 신흥공업국을 의식하여 과학기술능력의 집합체 구축이 핵심인 92년 EC통합으로 세계의 경제질서는 이른바 '3극체제'로 재편될 전망으로서 21세기를 바라보고 90년대의 정책방향을 정립할 우리나라는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지역간·블럭간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경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지난 30년간 수출입국의 기조아래 양적 팽창에 치중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성장에 등한시해온 우리의 산업체가 고임금·저생산성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조와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그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기반

종래에는 자본과 노동 등이 국가경제·사회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들어 과학기술이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경제성장의 50~60% 이상을 과학기술의 진보에 힘입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1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으므로 산업경쟁력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생활 복지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첨단과학기술의 개발·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의 경제·무역환경은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민간주도화·자율화로의 진전과 전상품의 95.5%의 수입자유화, 서비스업의 빠른 개방화 추세에 있으며 기술환경은 미국, 일본, EC등 선진공업국들이 우리나라를 새로운 경쟁상대로 지목하여 지적소유권 보호압력, 로얄티의 증대, 기술이전기피 등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기술수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현장기능적 생산기술은 선진국수준이며 반도체 등 특정분야는 도약단계이나 핵심기술, 첨단기술, 기초과학부문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어 총체적으로 8~10년의 기술격차가 있다.

연구개발 자원은 과학기술투자가 '88년 현재 32억불로 GNP대비 2.12%로서 미국의 1/52, 일본의 1/19, 서독의 1/10 수준이며 연구개발인력은 '88년 현재 5만 7천명으로 미국의 1/14, 일본의 1/13, 서독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학기술 제도면은 과학창조와 기술혁신을 촉진·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과 장치면에서는 외견상 상당한 구색을 갖추었으나, 경쟁상대국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하도록 보강·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금융, 조세, 정부공공구매, 부동산, 교육, 특허 및 표준화, 외교정책 등 관련 정책들의 과학기술진흥 지향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90년대 과학기술정책 방향 및 주요정책과제

과학기술의 진흥을 바탕으로 21세기 선진복지산업국가 구현을 선도·뒷받침하며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핵심·원천 기술을 자주적으로 개발·확보하여 확산하기 위해,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추진과 과학기술개발활동의 전주기적 균형발전 및 총체적 접근으로 대학 및 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의 균형육성을 지원할 것이다.

이와함께, 전국을 과학기술혁신의 장으로 조성하고, 선진기술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개발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투자와 연구개발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며 과학기술개발에 유리한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확산함으로써 범사회적인 과학기술진흥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육성해야 한다.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국가발전목표에 따른 국가·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책적 차원에서 핵심·원천기술을 집중개발·보급확산하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현실적인 경제·사회적 애로요인을 해결 지원하기 위한 중요기술개발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급한 기술인력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 기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자원절약적 산업구조 촉진을 위한 대체에너지기술,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에 따른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림수산·정밀화학기술, 제조업의 수출경쟁력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신공정·신제품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 차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원가구성의 80%를 차지하는 신소재기술, 미래생명과학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생명공학기술, 준국산에너지원으로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보장할 원자력기술, 유망전략산업이자 자주국방력확보의 관건인 국산항공기술, 환경·보건의료·교통·건설 등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복지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대학·출연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기업의 균형적 육성

우리나라 전체연구인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의 방대한 연구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13개의 우수연구집단을 2001년에 100개가 되도록 선정·육성함으로써 연구분위기를 전국 대학으로 확산 유도할 것이며,

1만여 연구인력이 활동중인 24개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적 역할정립과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여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결고리로써, 산·학·연 협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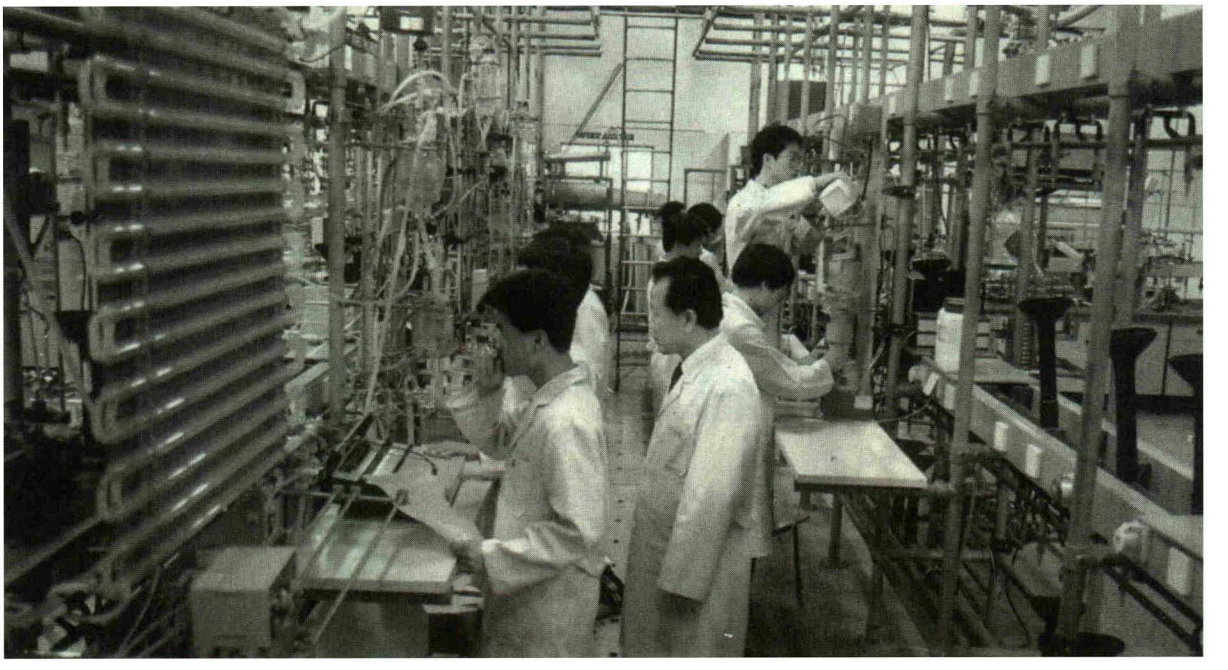

할 것이다.

또한 3,300명의 연구인력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106개 국·공립 연구기관은 정부기관내 전문연구소로서 국가정책과 연계된 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 UR 등 대외개방에 대응한 농림산업 기술개발을 촉진케 할 것이며, 929개의 기업부설연구소와 53개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 기술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유인·지원시책의 폭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국가발전목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책적 차원에서 핵심·원천기술을 집중개발, 보급을 확산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혁신의 전국적 확산과 국제화 전략 추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인 기술개발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 건설공정 74%인 대덕연구단지를 계획목표인 총부지 834만평, 입주 연구교육기관 55개, 상주 인구 5만명 규모로 '92년 12월까지 완공·활성화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광주, 대구, 부산, 전주, 강릉 등지에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덕연구단지를 핵으로 한 전국적 연구개발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전방위적 과학기술협력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미·일·구주 등 3대 선진권역을 중점 협력대상국으로 하여 대통령 정상외교성과를 과학기술측면에서 구체화시키고 특히, 북방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서방 선진기술의 보호장벽을 극복하며, 국제공동연구, 현지연구소 진출, 기술정보수집 등 다각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과학기술투자 및 연구개발인력의 안정적 확보·공급

급증하는 과학기술개발수요를 충족할 투자·인력 등 핵심자원을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88년 2.6조원으로 GNP의 2.1% 수준인 과학기술투자를 '96년 3~4%, 2001년 5%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부문 과학기술예산의 년차별 지표화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을 주축으로 한 과학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조적 과학정신과 개척심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국방예산에 정부투자 기관을 통한 관련분야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며 제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88년 현재 매출액대비 1.8% 수준에서 '96년에는 3% 이상이 되도록 각종 투자유인 시책을 강구할 것이다.

과학기술진흥에 필수요소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은 '88년 현재 인구 만명당 13.5명 수준인 5만 7천명에서 2001년 인구 만명당 30명 수준인 15만명 수준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91년말까지 첨단산업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한국과학기술원과 대학의 우수연구집단 등을 통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공급기능을 대폭 확충할 것이다.

범사회적인 과학기술의 풍토조성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을 주축으로 한 과학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원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지향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도과학기술사회 도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창조적 과학정신과 개척심 함양을 위한 청년단활동 등을 육성 지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을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의 전당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와함께 보다 많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과학화 관련사업을 추진하며 과학지식의 대중보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지도층 및 여론형성층에 대한 과학기술교육 홍보시책을 강구·발전시킬 것이다.

추진계획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여건을 전체적으로 조감해볼 때, '90년대는 양적인 사회에서 질적인 사회로 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대량화·획일화 사회에서 개성화·다양화·세분화를 추구하는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변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88 서울올림픽 대회와 함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이제 아서·루이스가 말하는 '마의 분수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인 갈등,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경제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어려움, 사회저해 요소들의 범람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대한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 나라의 환경요인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음미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방향을 국가전체적 시각에서 볼 때 국가는 과학기술주도의 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추진하고, 기업은 과학기술혁신중심의 생산·수출·관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개인은 '과학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과학기술지향의 사회분위기와 기술혁신에 유리한 환경조성 등 과학기술주체간의 역할정립과 상호협력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와같은 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 보고하여 확정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라경제

EC의 경제·통화동맹 추진현황과 전망

이종훈
주EC대표부 재무관

1985년 EC 역내시장통합백서의 발표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장통합노력이 점차 현실화됨과 병행하여 최근에는 단일통화의 창출과 경제정책의 공통실시로 실질적인 유럽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nion) 결성 움직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EMU에 대하여는 '60년대초부터 거론되었으나, ECU(European Currency Unit)[1]의 창출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87년 구주단일 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어 '89년 4월 들로르(Delors) 위원회에서 3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들로르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1단계에서는 '90년 7월까지 모든 회원국 통화의 유럽통화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가입과 재정정책상의 협조를 강화하고, 2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재정정책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며, 3단계에서는 단일통화의 창출과 EC 이사회에 회원국 예산통제권을 부여하여 완전한 경제통화통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후 '89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금년 7월부터 1단계 EMU를 추진하는데 합의하였고, 지난 6월 더블린 정상회담에서 금년 12월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단일통화 창출을 위한 조약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정부간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함으로써 EMU 추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회원국간에 제2, 3단계의 EMU의 실시시기 확정여부, 제3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 유럽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 등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10월 27일 로마에서 개최된 EC 특별정상회담에서 단일시장의 완성, 회원국 중앙은행의 중립성 확보, 화폐발행에 의한 재정적자 보전금지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94. 1. 1 부터 제2단계를 실시하고, 이후 3년이내에 경제·통화부문 통합의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제3단계로의 이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의(영국제외)함으로써, EMU 추진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만, 12월 정부간 회의에서 로마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회원국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영국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국가의 발권력을 유럽중앙 은행에 양도하는 EMU 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대안으로 "Hard ECU"안(ECU를 제 13번째 공식화폐로서 12개 회원국 화폐와 병행 사용하자는 안)을 제안하고, 민간이 ECU 사용을 일반화하면 궁극적으로 ECU가 EC의 단일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무성과 연방은행을 중심으로 제2, 3단계 실시시기를 확정하기 이전에 먼저 회원국간의 물가, 실업률 등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며,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기능과 회원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독일의 입장과 전통적으로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부의 결정권한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차이로 보아 EMU의 완성에는 상당한 진통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창출까지는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파운드화의 EMS 가입과 노르웨이 크로네화의 ECU 연동에서 보듯이 유럽통화제도는 점진적으로 고정환율제도로 이행하는 동시에 국제통화로서의 ECU의 역할제고와 ECU의 민간사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ECU의 기능강화는 엔강세와 더불어 미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행 국제통화질서를 개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도 무역거래 및 외환보유고 운용 등에 있어서 미달러화 중심에서 ECU와 엔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환율운용에 있어서도 ECU와 엔의 가치변동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1) 한국의 '원', 프랑스의 '프랑'등과 같은 일종의 화폐단위

일본판 '큰 손(仕手)' 사건을 보며

오종남

경제기획원 과장 /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파견

매년 수백억달러씩 쌓이는 경상수지흑자는 일본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이 돈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치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대미·대구주 진출노력은 두드러진다. 미국과 구라파에 본부를 설치하고 고급두뇌를 파견, 현지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가 하면(89년 7월 三菱은행에 이어 富士은행, 住友은행 등) 사채, 주식의 인수를 포함한 증권업 전반의 인가를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RB)에 신청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로 눈을 돌려 국제화를 서두르던 일본의 금융계에 최근 발목을 잡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住友은행의 한 지점장이 仕手(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 손에 해당) 그룹에 커미션을 받고 부정융자한 사건이 밝혀져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관련 융자가 과다한 것으로 세인의 지적과 주목을 받아온 磯田회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 10월 7일 이례적인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사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기은행의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부동산융자·증권투자·큰 손에의 정당하지 않은 융자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여온 금융기관들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표면화된 住友은행의 경우는 '수익지상주의' 아래 이루어진 도에 지나친 경영의 전형적인 예라는 지적이 많다.

住友은행은 규모면에서는 일본내 3위에 지나지 않으나 수익지표는 모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로 '천황'으로까지 불리우는 磯田회장의 카리스마적 경영방침에 따라 부동산관련 융자와 증권투자수익이 높았던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상승일로를 걷던 부동산·주식시장이 금년 들어 침체와 폭락국면에 빠지고 말았다. 부동산 가격은 최근들어 적게는 10%, 심한 곳은 20% 이상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처럼 부동산담보 대출관행이 성행하는 일본은행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38,915.9까지 치솟았던 주가지수(日經)가 23,000 이하까지 떨어진 주식가격의 폭락현상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으나 특히 住友은행의 손실은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요즈음 이를 계기로 은행차입→부동산·주식매입→부동산·주가상승→이를 담보로 다시 은행차입을 늘리는 경로를 통해 소위 '거품경제(bubble economy)'를 주도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누려온 금융기관에 맹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가격의 폭락·부동산가격 침체, 금리자유화에 따른 예금대출마진축소 등 여러가지 펀치를 동시에 맞고 있는 일본의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의 완전자유화에 따른 국제결제위원회(BIS)의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equirement)마저 충족되지 못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하락현상이 지나치게 되면 '금융기관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통념마저 깨질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적정한(?) 선에서 멈추어 주어야 한다는 일각의 아이러니컬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산장수 아들과 신기루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본다.

그런데 우리 금융시장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며 강건너 남의 동네 불로 치부해도 좋을 것인가? 나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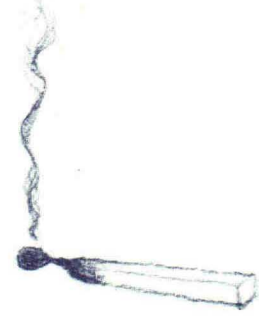

전환기 경제학이 필요하다

허 선
경제기획원 과장 / 독일경제연구소 파견

동독이 스스로 국가주권을 해산시키고 서독에 편입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체제에 단번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 동독사람들은 '실직'의 걱정을 새롭게 하고 있다.

900여만명의 노동자 중에서 '91년까지는 1/3인 300만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동독출신 독일국민들을 보면서 체제전환은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적응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웃인 헝가리와 폴란드를 위시하여 동구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두가 시장경제체제로의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실업과 고물가, 경쟁에 대한 적응과 자유 및 권력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혼란과 막막함에 빠져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느냐이다.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3가지 면에서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제도의 확립, 의식의 전환 및 적응, 그리고 경제성과의 변화이다.

첫째는 시장경제에 관련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그 제도는 ① 계획에 대한 가격통제와 배급, 줄서기를 버리고 시장의 수급과 경쟁에 가격을 놔두는 것. ② 토지 등 국유재산을 가장 유능한 자에게 불하하고 국영기업을 가장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단위로 전개, 가장 능력있는 기업가후보에게 넘겨 주는 일 ③ 기업이 자기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시장참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헐고, 기업이 자기가 필요한 돈과 땅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요소시장을 형성하고, 자기제품을 국내외 원하는 누구에게나 팔 수 있도록 제품시장을 자유화하는 것 ④ 국내외 경쟁력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율제도의 설정, 과잉유동성(또는 과잉저축)을 통제할 수 있는 통화조치, 금융시장 및 기관의 창설 등을 포함한 금융개혁 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⑥ 이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 및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다. 또 이 제도의 시행을 단번에 전반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단계적으로 할 것이냐와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선거에 의한 민주정부의 수립을 포함한 정치민주화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두번째,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식의 전환이다. 시킨대로만 하면 해고의 위험없이 봉급이 나오는 데 길들여진 노동자를 창의와 성의를 다하는 경쟁하는 근로자로 바꾸는 것과 무엇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어렵고 시간소모적인 일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유효하게 실현되어 이동가능한 생산요소가 경제원리에 따라 이동되어 실질소득과 상품수준이 전보다 나아지고 새로운 제품과 보다 나은 제품이 생산되어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만일 전환과정이 잘못되면 그전보다 경제성과가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기존의 경제학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동구권의 실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체제의 전환을 어떻게 싼 비용으로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 남북통일을 기어이 이루어 놓고 그 전환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학자와 공무원은 이 '전환기경제학'을 더 심각하게 공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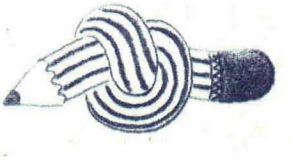

출입기자코너

추곡수매방식, 과연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추수기만 되면 연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추곡수매논쟁이다. 정부 관련부처와 각 정당, 농민단체들은 제철이나 만난 듯이 목청을 돋우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각종 소식통들이 띄우는 애드벌룬을 쫓아가면서 대서특필하기에 바쁘다.

이처럼 사회의 각 부문이 추곡수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3%(89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농외소득을 제외한 순수한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2.3%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특적자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통화증발을 통해 인플레를 가중시키는 것도 관심을 두는 요인이 된다.

추곡을 7백만섬 수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매가를 1%포인트 더 올릴 때 소요되는 추가자금은 1백25억원이다. 이를 추곡수매에 응하는 농가 1백15만호로 나눌 경우 농가 한 가구에 돌아가는 액수는 불과 1만1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수매가를 10% 인상하려던 것을 13%로 올린다 해도 농가 한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고작 3만3천원에 불과하다. 3% 포인트를 더 올려줄 경우도 이러한데 1~2% 포인트를 더 올릴지 내릴지를 놓고 온 나라가 산적한 다른 일을 제쳐두고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정부수매가가 시중 쌀값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같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농민들의 수혜폭을 가늠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매결정방식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하는 말이다.

정부는 수매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의견대립이 첨예화하자 3년전부터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기관으로 양곡유통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생산자와 소비자대표 등 관계당사자는 물론 학계·언론계·유통계 등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대표들이 모두 모여 지혜를 짜내다보면 좀더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고 관계당사자들간의 마찰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한갓 희망사항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농민들은 유통위가 정부의 시녀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통위 자체도 날카로운 의견대립으로 원만한 합의는 꿈도 꾸지 못하고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매가와 수매물량결정이 생산비 등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도·농간의 소득차를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보전해 줄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결정될 바에는 추수가 끝난 뒤에 수매가와 수매물량을 결정하기 보다는 과거 수년동안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물량을 정해 침종기에 사전 예시하는 것이 농민들은 물론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언론의 추곡관련보도로 추곡출하기의 산지쌀값이 급등락하는 부작용은 물론 공연히 농민들의 기대만을 부풀리고 반감만을 조장하는 각 정당의 선심공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수매대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현채 연합통신 기자 / **농림수산부**

출입기자코너

환경문제, 각 부처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환경처의 환경행정이 기획·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지난 1월 청을 처로 승격시킨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직접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어렵고 타부처나 공공기관이 업무조정내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행정을 펴나가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 때문에 환경처를 주로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환경행정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번 있었다.

지난봄 문제가 됐던 팔당호 골재채취사업의 경우 관계부처가 환경처와 사전협의 없이 시행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환경처와 협의하게 됐고, 결국은 환경처가 주관해 시험준설을 하게 됐다.

팔당호 골재채취는 업무규정상 물론 환경처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으며, 기자 개인의견으로는 현재 시험준설중인 북한강쪽 1공구의 골재채취가 상수원수에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수도물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수도권시민은 상수도문제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건설부는 간과한 것 같다.

이 때문에 환경처가 뒤늦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결국은 골재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사전에 건설부와 환경처가 충분한 협의를 벌였더라면 물의도 빚지 않고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었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남고, 이 과정을 취재하면서 환경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을 착공한 뒤에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든가, 부산시가 추진중인 인공섬건설계획에 대하여 환경처는 환경상 악영향을 들어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승인이 나버린 것이다.

부산시가 환경처에 공유수면매립계획 협의를 요청하면서 함께 낸 자체 영향평가서는 인공섬건설로 부산항의 수질오염도가 현재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5.6ppm에서 5.7ppm으로 0.1ppm만큼 악화되므로 환경상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계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환경처는 영향평가모델링이 잘못됐다고 보고 부산시에 보완지시를 내렸다.

결국 환경처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계법을 개정해 조정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법조문의 강제 이전에 각 부처가 스스로 환경처와 협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장건립도 좋고 관광지개발도 좋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기능이 안정되고 풍족하고 쾌적한 국민의 생활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고 볼 때 각 경제부처는 정책시행의 최종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환경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기자의 의견이다.

조병래 동아일보 기자 / **환경처**

나라경제논단

사회형평추구와 조합주의 정신

조합주의 정신은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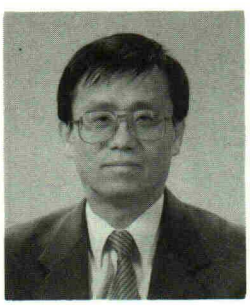

양수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의 제기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한국은 수출주도의 공업화를 통하여 놀라울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은 근래에 12대 교역국의 일원인 동시에 상위소득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87년의 6·29선언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정치민주화를 시작하였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여러가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고 특히 빈곤층 인구가 크게 감소되었다. 만성적 실업이 사라졌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한국은 주요 공산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선진국들을 추격하게 되었다. 또한 만성적 무역적자기조를 탈피하여 대외순채무도 우려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국제적인 지위도 괄목하지 않을 수 없게 향상되었다. 이제는 한국이 국제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선진국들의 대화파트너로서 인식되고 한국이 선진국들간의 정책협의기구인 OECD에 가입하라는 권고까지 받고 있음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사실이다. 개도국들로부터는 경제협력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소련을 위시한 주요 사회주의국들과도 국교가 수립되고 경제·문화 등에 걸친 실질적 협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북한과의 대화도 시작되었다. 민족통일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상서로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지금 하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협력기반의 약화에 있다.

1987~89년 중에는 폭발적인 노사분규가 있었으며 노사간의 긴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재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적대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대도시와 기타 지역간의 발전격차로 인한 지방주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만은 점고일로에 있다. 소득과 분배에 대한 도시저소득층의 불만도 사회불안에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사간 긴장의 직접적 원인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자의 억압과 착취로 인한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사고에 있다. 재벌에 대해서는 재벌들이 정부의 비호 아래 경제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력을 그들의 사적인 축재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비난의 내용이다. 지방주민들의 불만은 고속경제성장을 위하여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협력체제가 운영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다.

하는 과정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대도시와의 발전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고속경제성장전략 아래 농업의 발전이 희생되고 그들의 상대적 빈곤과 농촌공동화가 초래되었다고 믿고 있다. 도시저소득층의 불만도 경제성장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강의 기적'은 노·사·정간의 3위 1체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간의 고속경제성장은 노동자의 근면함, 기업인의 각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이 3자간의 조화, 그리고 이러한 협조체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지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대두된 제반갈등은 노·사·정간의 이러한 협조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화로 정부의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을 제거함으로써 노·사·정협조체제의 약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다.

경제성장의 기반약화는 경제·사회·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 위기를 가져온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영합적 분배경쟁을 조장하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며 나아가서 정치적 불안을 조성한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켜 하나의 악순환을 조성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자, 기업가, 농민, 여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백해무익한 '부합적' 상황(negative-sum game)인 것이다.

형평의 추구와 조합주의

앞에서 우리는 60년대초 이후의 고속경제성장과 작금의 제반 사회적 갈등간의 인과관계를 보았다. 고속경제성장은 왜 제반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과거의 경제성장이 분배의 형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경제성장이 분명히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는 뜻은 아니다. 형평이란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다. 이러한 분배에 대한 집단적 가치관은 사후적으로는 구해질 수 없기 마련이다. 사후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분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경제성장은 국민간 협의된 방식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다. 가부장적 지도자를 주축으로 한 寡頭的 국가운영집단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다. 그 결과 형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처음부터 배제되었으며 이것이 지금의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배의 형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합의조성노력의 핵심적 과제로서는 주요 이익집단간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대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근로자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익집단간의 대화 체계의 모델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조합주의(cooperatism) 이다. 조합주의란 사회내의 주요 이익집단간의 협력 체제를 나타낸다. 조합주의 하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간에는 중앙화된 협의 · 협상절차가 운영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생산자집단 및 노동조합대표들은 주요 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구해 나간다.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서독,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고도로 조직화된 조합주의국가로 들 수 있다. 일본도 매우 독특한 형태의 조합주의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조합주의국가들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운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 2차 석유충격 등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들이다. 실업률과 인플레율을 합친 '비참지수'(misery index)가 가장 낮은 6개국이 이들이다.

가장 모범적인 조합주의국가는 오스트리아다. 오스트리아는 외부적 충격이 많았던 1970년대에 일본을 포함한 22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개인소득증가율을 보였다. 오스트리아는 주요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협력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적 파트너쉽'(social partnership)이라고 불리우는 협의체계를 운영한다. '사회적 파트너쉽'은 원래 2차대전 후의 인플레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개발된 절차로서 가격과 임금에 관한 협상을 주기능으로 한다.

'사회적 파트너쉽'은 상공회의소, 노동회의소, 농업회의소에 의하여 운영된다. 노동회의소는 노조 및 작업협의회(works council)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주요 정책문제에 관하여 이들의 대표 및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제사회자문회의(Economic and Social Advisory Board)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임금 · 가격위원회(Joint Wage and Price Commission)는 임금단체협상의 시작에 앞서 임금타결안들의 윤곽을 심의하고 또한 주요 산업부문의 가격인상계획을 심사한다.

네델란드의 조합주의는 경제사회협의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 및 노동재단(Foundation of Labor)에 의하여 운영된다. 경제사회협의회는 경영자 대표 15인 및 노동자 대표 15인, 중앙은행 총재, 경제기획청장 및 대학교수 등 중립적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다. 장관들은 모든 중요한 경제적 · 사회적 현안문제 및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 경제사회협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또 경제사회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건의를 할 수도 있다. 경제사회협의회는 수많은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제사회협의회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협의하는 반면, 노동재단은 임금과 노동자 작업여건 등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한다. 노동재단은 1845년에 수립된 각종 노조연합과 고용자협회들간의 민간협의기구로서 산업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제경쟁력향상과 물가안정을 위한 일본의 노사협력

87~89년 사이의 폭발적인 노사분규는 우리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했다.

패턴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북구와 일본의 조합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사회적 협상(social bargain)과정은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는 제도 혹은 관습으로서 임금과 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정부와 기업에 의한 소득재분배정책과 임금안정을 포함하는 노사협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분배의 형평을 조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합주의의 정신은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경제사회협의회와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들 당사자들간의 사회적 연대감 인식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것이다.

도전과 당면과제

21세기의 개막을 전후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민족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민족통일의 달성이고, 또 하나는 조국의 선진화이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분배의 형평을 증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형평과 성장의 조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움의 핵심은 형평에 대한 건전한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이러한 합의의 부재로 인한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여러 직장에서 노동자와 기업주는 다다익선의 입장으로 제몫찾기 · 제몫지키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는 당장의 정치적 압력에 눌려 임기응변식으로 제반사회복지적 시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또 노사간의 협력이 부진하여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추진도 과거와 같이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사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의 경제성장추진노력은 기껏해야 단기적 효과 밖에는 못가져 오고, 이는 곧 물가와 임금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편 국제경쟁의 현실은 나날히 준엄해져 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곧 이루어짐에 따라 90년대에는 각국 경제의 지구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EC의 산업은 1992년 시장통합에 힘입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21세기 초에는 정치적 통합을 완료하여 '유럽합중국'을 구현하고 국제경쟁력을 배가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 내고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 추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사회계층간의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로 구성되는 북미경제권의 단일화가 추진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이 확대되고 그 결과 여타개발도상국들 및 지금 개방을 보고 있는 사회주의권 경제들의 활력도 증대되어 갈 것이다.

개방화된 세계경제에서는 국제경쟁력 보유여부가 일국경제의 진퇴를 좌우한다. 이처럼 경제효율에 대한 요구도 분배의 형평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나날히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내고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사회계층간의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런 의식에 입각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의 운영원리는 서독이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을 가져온 경제사회정책의 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같은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우리나라의 신헌법 제 119조 2항에 담겨 있는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의 정신을 누가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정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가 · 노동자 · 농민 · 학생 · 지식인 등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각성에 입각하여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국민적 노력은 어떠한 기구에 의하여 촉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촉발장치로서 헌법 제93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여 가동시킬 만도 하다. 나랏돌저

남북 경제교류의 전망과 추진방향

현재로서는 남북간의 경제적 보완관계가 단시일에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현재 진행되는 간접교역부터 착실히 확대해 나가면서 호혜 · 평등의 원칙하에 다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가능성을 타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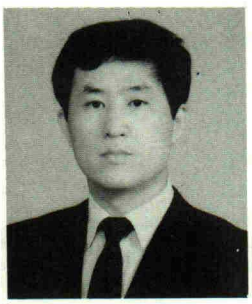

변재진
경제기획원 협력정책과장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와 경제교류 전망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처음부터 이번 회담에서 무슨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1차 회담에서와 같이 다음 회담의 시기와 장소 이외에는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남북 양측이 부분적으로나마 상대방안을 수용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비록 이번에 명칭과 절차 문제때문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측의 공동선언안이나 북측의 불가침선언안의 내용이 거의 같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3차 회담에서는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회담에 이어 이번에는 상호원칙적인 입장표명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담기간중 또는 회담 중간에 부문별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대해 양측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진만큼 경제분야의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부분적인 경제교류의 실현가능성도 기대해 봄직하다.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상호체제나 이념차이를 건드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으며, 남북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분야이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물꼬가 아직 트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남북관계는 상호 정치적인 대립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느끼게 된다. 남북이 힘을 합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남북경제교류의 추진상황 및 평가

남북은 분단 이후에도 6 · 25전까지는 부분적인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물자교류는 개성북방, 주문진북방, 춘천북방 등지에서 민간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48년 이후에는 한때 정부가 이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전쟁발발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 이후 60년대에 들어 남북은 각기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60년대에는 주로 북한이,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우리가 각종 협력제의를 했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80년대에 들어 84년 9월 북한이 대남 수해물자 제공을 제의하고 우리가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대화의 물꼬가 트여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5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경제회담에서 남북은 각기 상품교

역과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입장과 추진방법 등을 밝혔는데 그 내용중 유사하거나 공통된 부분이 많아 합의서 서명단계까지 갔다가 북측이 우리의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86년 1월 22일 예정되었던 제6차 회담을 무기한 연기통보해옴에 따라 경제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이후 88년 7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입각하여 우리의 일방적 조치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해 10월 7일 대북경제교류 허용방침을 발표하였고, 그때부터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북한물자 반입위주의 소규모 간접교역이 현재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간접교역 실적은 금년 9월말 현재 반입 115건에 3천 5백만불 규모에 그치고 있고 반출실적의 경우 3건에 16만 2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은 아연괴, 철강재, 무연탄, 전기동 등 중간 원자재와 1차산품이 주종을 이뤘고 반출은 담배필터, 잠바, 설탕 등이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간접무역을 남북교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간접교역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서류상 최종 목적지가 남한이 아닌 제3국인 이상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남한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만일 최종 목적지가 사실상 남한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선적을 거부하거나 계약자체를 파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이외에도 간접교역이 부진한 원인중의 하나는 북한에서 사올 품목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의 위험을 안고서 대북교역을 추진할 만한 실익이 없으며 이는 앞으로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되더라도 교역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당면과제와 개방전망

70년대초 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자력갱생'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 대내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결과, 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의 제약으로 전 산업에 걸쳐 기술수준이 낙후되고 생산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극심한 관료체제, 과중한 군비부담, 선전성 건설의 치중 등 사회주의 체제하의 폐쇄적 경제운영이 북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쟁이 없는 곳에는 각종 부조리와 비능률이 만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능히 짐작될 수 있다.

소련이 70년대 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막대한 외화수입을 올리고서도 이를 잘못 활용하여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현재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무역 및 대외협력을 통해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 상품들.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GNP의 20% 이상을 군비에 사용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무역 및 대외협력을 통해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경제의 과제는 경제관리체제와 구조를 개선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여하히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느냐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대체로 단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과 권력구조의 구조적 개편이 없는 한 변화가 있더라도 위로부터의 한정적인 변화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속에 살다가 개혁이 시작되고 한정적이나마 각자에게 생각하고 말할 자유가 주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굉장한 혼란이 수반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사회가 급격히 붕괴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교류를 보는 양측의 시각

북한과의 경제교류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제교류에 관한 양측의 시각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남북대화와 교류

에 있어 실용주의적인 점진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간단한 데서 복잡한 데로, 부분에서 전체로, 이념적 · 명분적 논쟁을 위한 대화보다는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회복이 통일에 이르는 더 확실한 길임을 믿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가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열 지향적인 것으로, 인도주의적 교류요구는 상호 불신의 핵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측은 우리를 통일에는 관심없고 그저 남북으로 갈라서서 장사나 하고 친척이나 만나자고 하는 것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북측은 이번 평양회담에서 교류 · 협력문제를 정치 · 군사적인 의제와 병행하여 토의할 수도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주의체제자체가 경제보다는 정치노선이 우선하므로 북측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의 우선실현은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개방을 나쁜 균이라고 표현하고, 동구가 무너진 것이 서방TV 시청이 자유로웠고, 서방과의 교역과 관광이 자유스러워 자본주의의 나쁜 균을 막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경제교류에 관해 북측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우리주장의 정당성에 관해 인내를 가지고 북측을 설득해 나가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측의 입장과 태도를 감안하여 포용력을 가지고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의 추진방향

남북경제교류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민족경제공동체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상하에, 공동체의 조기회복에 도움이

강영훈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총리를 중심으로 각기 마주앉은 남북총리회담대표단이 분단 후 최초의 공식회담을 갖기 전에 악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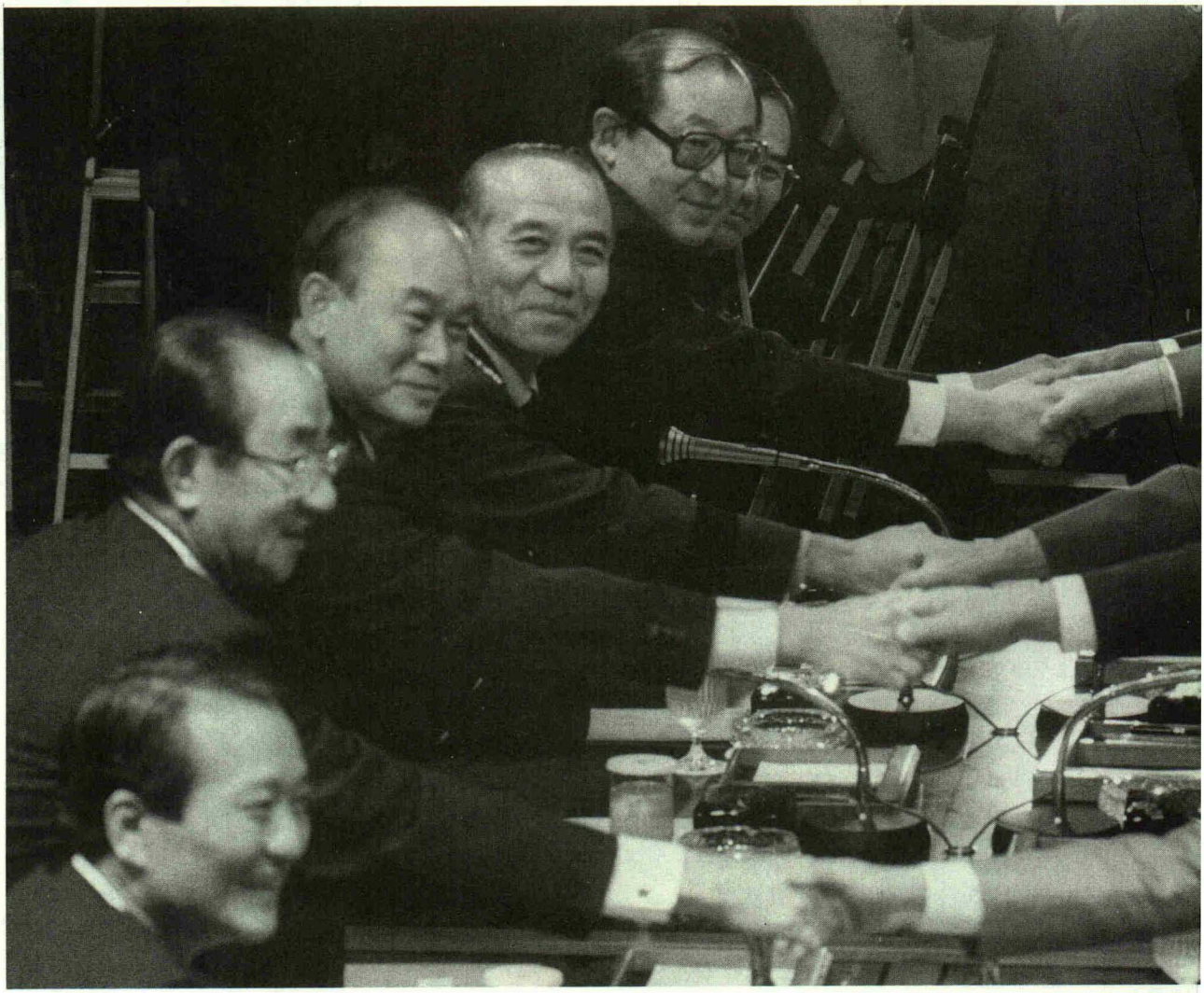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경제교류의 경제적 실리가 지금 당장 크지 않다고 해서 결코 이를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북한이 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본과 기술이다. 따라서 우리가 상품교류와 경제협력의 순서를 고집하거나 초기교류를 물자교역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은 최고의 투자적지이다. 남북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 북한은 기술·자본은 물론 마케팅, 경영기술도 전수받을 수 있고, 우리의 해외 판매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생산·수송면에서 유리함은 물론 북한이 이미 맺고 있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북한과 직접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태여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여 중국·소련을 우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보완관계가 단시일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접교역부터 착실히 확대해 나가면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다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가능성을 타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독일식의 흡수 통합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된다. 분단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만일 북한이 동독과 같이 급격히 붕괴될 경우 이에 따른 엄청난 충격을 우리 경제사회가 서독과 같이 무난히 수용·흡수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여 우리와의 경제공동체가 무리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력가능분야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다듬고 있지만,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상황에 맞게 실제 여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추진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다만 각 부처에서 지나치게 참신하고 획기적인 것만 찾다보니 현실성이 부족하고 또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이 언론에 마치 추진방침이 결정된 모양 무분별하게 보도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외에도 실제 고위급회담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북한경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피상적인 몇몇 통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거의 백지에 가깝다. 북한과 단기에 어떤 가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변화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계속 축적해 나가야할 것이며, 북한경제의 분야별 실상에 대해서도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KDI등 정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디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연구가 원활히 추진되어 이를 계기로 각 부처의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란다.

아직 남북문제는 경제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실제 교류가 성사되면 소관분야에 관해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만큼 이에 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환경보전이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환경보전은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은 상호보완관계를 가져야 한다.

심재곤
환경처 정책조정과장

문제의 제기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보면 농공업사회까지는 생산활동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760년 산업혁명이후, 공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류에게 커다란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으나, 그 반면에는 각종 공해를 유발시킴으로써 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 많은 성장을 해오는 동안 국민들은 최근 경제성장 위주보다도 성장의 과실에 대한 공평분배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의 쾌적성과 함께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등 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욕구가 상승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집단행동과 반공해운동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국민과 기업의 관심은 건전한 생산활동보다는 비생산적인 재테크나 부동산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짐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소홀히 되고 투자수준도 저조한 실정에 이르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성장률 둔화, 수출물량감소,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환경보전을 강조하게 되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 더욱 투자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경정책을 강화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경제·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양립이 가능한지와 또 양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상반관계(trade off)라는 견해

이론적인 배경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상반관계(trade off)에 있다고 보고, 인간이 보다 좋은 환경의 질을 향유하려면 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감수해야 되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누리려면 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의 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서, 높은 경제성장과 양질의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러한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도1〉과 같다.

〈도 1〉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상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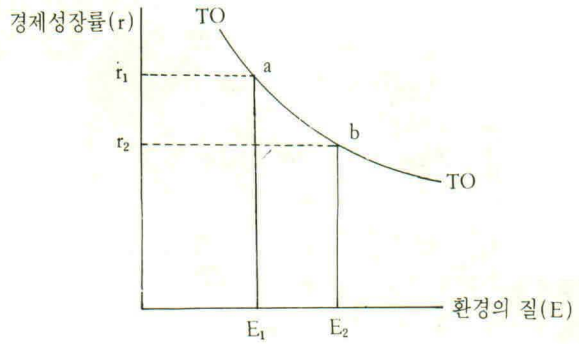

r : 경제성장률
E : 환경의 질
TO : 상반관계

상반관계이론의 뒷받침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은 서로 상반관계(trade off)에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로마클럽(Rome Club)의 보고서를 우선 들 수 있다.

물질문명의 폐해인 환경오염·인구증가·천연자원의 고갈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70년 3월에 25개국 70여명의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로마클럽(Rome Club)의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만일 현재처럼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국의 도시경제학자인 울만은 국민총생산(GNP)의 증가가 곧 국민총공해(GNP : Gross National Pollution) 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경제성장정지론(ZEG : Zero Economic Growth)을 주장하고 있다.

상반관계이론의 적용한계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현실적으로 산업사회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문제는 적정수준의 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 새로 늘어나는 고용인력을 흡수하지 못하여 실업자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사회가 불안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재생산이나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경제구조를 정체시켜 성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환경투자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소득분배의 효과를 가져온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상호보완관계(complementarity) 라는 견해

앞의 견해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상반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반하여 이 견해는 오히려 상호보완관계(Complementarity)에 있다는 논리로서 영국 런던의 환경경제학연구소의 David Pearce, Anil Markandya, Edward B.Barbien 등의 경제학자들은 환경의 질 개선은 곧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공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환경보전을 할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도 2〉 경제성장과 환경과의 상호보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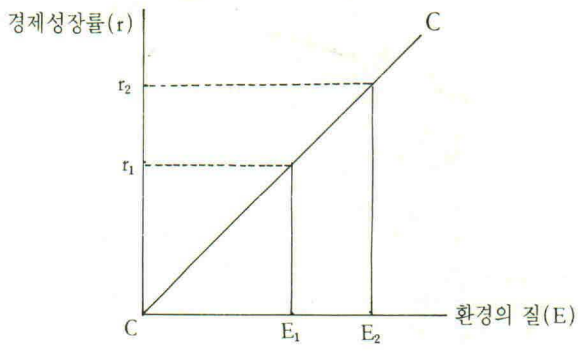

C : 보완관계

국민들은 이제 경제성장 위주보다는 성장의 과실에 대한 공평분배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생활의 쾌적성과 함께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는 등 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욕구가 상승하고 있다.

즉 환경의 질의 개선은 인간의 건강과 노동력을 증진시키고 휴양 및 환경 오염방지기술 등 관련산업분야와 여가생활에 필요한 분야 등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도2〉와 같이 상호보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W. D. Nordhaus와 J. Tobin 등이 국민순후생 개념을 토대로 실제로 미국에서 1929년에서부터 1980년까지 양적국민총생산을 나타내는 GNP와 공해 등 사회적 비효용을 제외한 순 경제적 후생가치를 나타내는 NEW(Net Economic Welfare)를 측정한 결과는 〈도3〉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 3〉 GNP와 NEW간의 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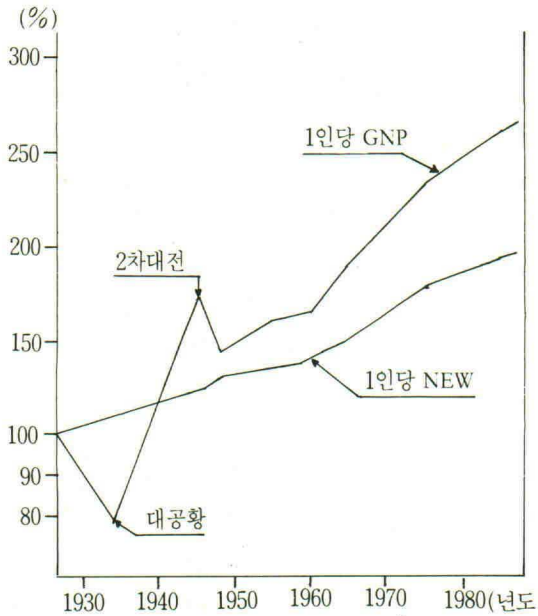

※ 1965년까지의 GNP 성장률은 1.7%, NEW의 성장률은 1.11%로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양자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GNP와 NEW의 측정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생산활동 초기부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 산업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GNP 성장은 물론 NEW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복지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반관계 (trade off)가 아니라 양자를 조화시켜 나가면 GNP뿐만 아니라 NEW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환경보전이 경제 ·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환경보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2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양립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상호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환경보전은 성장잠재력을 배양

환경보전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장잠재력이란 경제 · 사회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밑바탕인 자연자원 · 에너지 · 노동력 · 자본과 사회적 관습 · 국민의식 · 노동의욕 · 노사관계 등 경제 · 사회제도가 모두 포함된다.

즉 환경보전을 통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자연자원 및 토양과 해양자원을 잘 가꾸어 이를 산업요소로 활용하면 그만큼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경제여건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보다 더욱 과학기술이 발달할 우리의 후손에게 보다나은 여건에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된다.

환경보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공해방지시설의 확충 즉 폐 ·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공원조성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생산환경을 개선하게 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갖는 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범위도 종래에는 도로 · 항만 · 철도 · 공항 · 통신시설 등에만 국한되었으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표1〉과 같이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는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은 후손에게 보다 나은 여건에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된다.

〈표 1〉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범위 및 인식에 대한 변화

	종 래	현 재
시대적 여건	경제개발 우선	경제사회 균형발전
중점투자	도로·항만·철도·항공·통신시설 등	산업기반시설과 함께 공해방지시설, 폐·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공원 등 자연 및 생활환경조성사업 등
효 과	산업화·도시화 및 경제성장 촉진	환경개선으로 '생활의 질 향상' 경제적 후생가치증대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

따라서 종래와 같이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오염피해를 사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베푸는 보조(Subsidy) 또는 지원의 성격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득수준과 환경의 질은 상호비례

경제개발이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자연자원 등이 많이 소모되고 우리 주변환경에 부담이 있었다는 결과이므로 경제규모가 커가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도 커져야 한다.

즉 경제성장수준에 비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적정규모의 환경투자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득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인간욕구는 보다 높은 환경의 질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그 적정투자수준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대기오염을 0.01ppm감소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방위비·교육비 등과 함께 환경에 대한 투자도 경제규모(GNP)의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의 환경투자수준은 〈표2〉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OECD 제국의 환경투자 수준(중앙정부 기준)

국 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스위스	한국 ('89,'90)
GNP대비(%)	0.34	1.69	0.74	0.57	1.03	0.13

※ 자료 : OECD, *Environmental Policy and Technical Change*, 1985, PARIS.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산업폐기물 처리기술, 폐 · 하수 정화기술, 연료의 저공해화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산업을 진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투자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유발

반공해 및 빈민운동가들은 환경피해는 가진 자로부터 생기는 피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진 자는 재벌 · 기업경영자 · 공장 등 생산시설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는 서민 · 대중근로자 · 도시빈민 등이다.

특히 민주화 시대에 표출되는 각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심화되어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불만이 공해반대운동으로 확산되어 표출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적정수준의 공공 환경투자가 이루어지고 확대될 경우 이로 인한 효과가 어느 특정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민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몇가지 예시하면 한강종합개발과 같은 도심주변 하천 정화사업, 연탄사용 서민가정에 저렴한 LNG와 같은 무공해연료 공급, 도로변 방음벽 설치, 양질의 수도물 공급, 공단지역의 인접농지 및 어장 보호대책, 도시의 녹지공간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서민계층이 1차적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을 잘 보전하여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복지의 증진이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저소득층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형평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보전은 기술개발 촉진효과를 발생

강력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은 공해방지시설 또는 무공해기술(Clean Technology)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관련산업을 진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한 예로 일본의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강화가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되어 세계적인 자동차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된 사례는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회사들도 미국시장 진출시 엄격하고 까다로운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독의 경우처럼 '燐' 성분이 없는 세제와 CFCs 물질의 양을 줄인 새로운 냉장고 등 무공해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일명 녹색시장(Green market)이 형성됨으로써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한해 약 820억불의 수익과 함께 새로운 고용인력을 많이 흡수한 사례도 있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산업폐기물 처리기술, 폐 · 하수 정화기술, 연료의 저공해화 기술 등을 개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요즈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CFCs(Chloro Fluoro Carbons)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이에 따른 대체품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맺음말

현재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각종 생산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앞에서 말한 두가지 논리 중 어느 것이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경제 · 사회발전 과정과 연계하여 그 판단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환경보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경제적 후생가치를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역할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은 상호보완관계를 가져야 되며,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개혁

요약 · 정리 : 문우식

최근 소련 및 동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개혁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경제체제의 변혁은 기본적으로 국제경제환경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개혁의 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크게 높아져 가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 호암회관에서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이 각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현재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편집자주〉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개혁」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자

Józef Pajestka(폴란드 경제과학연구소 소장)
Wu Hongguang(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U Ye Myint(미얀마 기획재무부 부국장)
Miroslav Souček(체코슬로바키아 국가경제중앙연구소 소장)
Predrag Simić(유고슬라비아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소장)
Katsuji Nakagane(일본 동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 명 호(국민경제제도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겸 서강대 기술관리연구소 소장
김중수 국민경제제도연구원 부원장
안석교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오용석 경성대학 무역학과 교수 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세종대 무역학과 교수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주의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사회주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성과 비창의성이다. 사회주의는 산업사회 초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활력과 합리성이 결여된 체제상 모순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대두와 더불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상호교환하고 이를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였으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적극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 유고의 개혁

Predrag Simić
(유고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유고는 다른 어느 동유럽 국가보다도 먼저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1950~60년대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 인종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1960년대 말의 시장지향적인 개혁과 정치적 자유화과정이 중단되었고 사회주의적 자립경영(socialist self-management)을 도입하려던 1970년대의 시도도 무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체제의 미지근한 개혁노력은 중앙계획에 의한 통제가 배척되는 한편, 시장기구도 여러가지 이유로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8년에 급진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는 다시 40여개의 체제관련 법안이 수정·보완됨으로써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상품, 자본 및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체제가 수립되었으며 기업소유의 사유화가 허용되었다. 한편 대외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외환시장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자국화폐 디나르貨는 독일 마르크貨와 7 : 1의 비율로 태환되었다.

유고의 1990년도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진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디나르貨와 마르크貨의 연계에 의한 태환성 보장, 독점부문의 가격동결, 임금상승 억제, 재정통화부문의 긴축 등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 2000%가 넘는 초고속 인플레이션을 10% 이내로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플레이

션 억제정책으로 인해 1990년의 사회총생산은 8~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앞으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치루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된다.

◩ 폴란드의 개혁

Józef Pajestka
(폴란드 경제과학연구소 소장)

폴란드의 개혁은 1955년부터 시작되었다. 1955년 폴란드는 사회주의 주요 특징인 중앙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를 접합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기존체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적 저항, 즉 관료주의와 보수세력의 방해로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경제개혁의 실패는 경제적 변화의 선결요건으로서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증대시켰으며, 변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결국 거대한 사회적 힘으로 등장하여 정치 ·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어서 경제면에서도 개혁(partial reform)이 아닌 시장경제체제로의 대전환(transformation)이 필요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개혁은 최근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폴란드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 개혁 이전에는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나 개혁에 따른 안정화 정책은 물가안정, 재정적자의 감축, 환율의 안정 등 각 방면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령이 1990년 여름에 통과되었다.

◩ 체코의 개혁

Miroslav Souček
(체코 국가경제중앙연구소 소장)

체코는 2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열번째 안에 드는 공업국 중의 하나였다. 종전 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택한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성장규모는 戰前의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약 40~6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체코는 기술수준, 국민의 생활수준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체코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금융과 기업금융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기업이 최저비용으로 생산하고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한다. 셋째, 기업의 투자지출과 임금지출에 강한 예산제약의 압력을 가한다. 체코에서의 경제개혁의 성공은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얼마나 빨리 시장경제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 중국의 개혁

Wu Hongguang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은 대략 3기로 나눠진다.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까지의 제1기에서는 농가의 계약책임제(성과에 따른 소득배분) 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비약적 증대 등 주로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도시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시범도시에서만 개혁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1984년 10월부터 1987년 10월까지의 제2기에서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이 중심과제가 되어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효율적 경영을 위한 각종개혁과 그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가격개혁, 세제개혁, 금융개혁 및 대외무역활성화 등이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1987년 10월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제3기는 중국경제개혁의 전환점을 이룬다. 즉 그간의 경제개혁 과정에서의 정치·교육·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개혁의 이론적 지주로서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과 '국가는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은 기업을 유도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Katsuji Nakagane
(일본 동경대 교수)

미시적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개혁은 생산수단 국가소유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계약책임제, 경영자책임제 등을 도입하여 생산단위의 의사결정을 국가로부터 독립시켰다.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수평적 결합이나 협조, 나아가서는 기업합병도 규모의 경제나 경영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허용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의 개혁정책은 직접통제하에서 생산공급되는 상품의 수를 축소하고 과거의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조세제도를 개혁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상업은행·중국은행·인민건설은행의 설립을 포함하는 금융구조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또 가격개혁을 도모하여 현재 총생산물의 75%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소비재에 대한 가격규제도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개혁의 어려움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점에 있다.

종합토론 내용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일당독재체제,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체제로 특징지어진다. 최근 동유럽 여러나라에서의 개혁과정을 보면 정치면에서 일당독재의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함과 동시에 다수당과 제도적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으며,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가 도입되었고 소유권의 사유화가 허용되었다. 동유럽 여러나라에서의 구체적 개혁과정은 국가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다당제의 도입, 정부통제의 감소와 시장역할의 증대, 개방확대, 그리고 사유화의 추진 등의 내용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회주의 개념의 소멸은 이들 동구 여러나라들이 '유럽으로의 복귀' 또는 Pajestka 박사의 표현을 빌면 이른바 '문명화(civilization)' 라는 과정에 동참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구국가들은 그들이 동구사회주의 국가로 호칭되기를 원치 않으며 '동구유럽국가'로 호칭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 동유럽국가에 비교해 볼 때 중국경제개혁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중국의 개혁은 계획경제하에 시장기능 도입을 추진하는 이중구조가 존속되는 한, 그리고 경제적 실용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가 양분되어 있는 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환경과 특성으로 인해 동구 여러나라의 경험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동구권의 개혁경험은 향후 중국의 개혁방향의 성패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나라경제

문우식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책임연구원